

특집논문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

-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PAC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I.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뉴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언론 현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만3세 이상 인구의 78.0%(약 37,180천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2011년 7월 현재), 이용자의 98.7%가 주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불릴 만큼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변화가 야기되고, 오프라인의 축적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으로 옮겨지면서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양방향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개인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은 뉴스매체로서도 성장하였는데 한국 언론진흥재단(2011)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인터넷

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이용자가 56.2%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이용이 두드러져¹⁾, 18~29세의 90.8%, 30대의 82.7%가 인터넷뉴스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뉴스매체로서의 신뢰도 위상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을 때 매체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13.8%)에 대한 신뢰도가 종이신문(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13.1%와 10.8%였던 것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언론의 자유와 책임,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 보호 등을 둘러싼 논의 또한 활발해졌다. 인터넷으로 인해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접근성이 증대되고, 정보습득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가지는 게이트키퍼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과 테

1) 18~29세에서 90.8%, 30대 82.7%, 40대 60.4%, 50대 35.3%, 60대 이상 9.2%가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드라인 없는 실시간 뉴스 제공으로 인해 뉴스의 정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격권 침해문제로 인터넷 언론의 규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런 논의 끝에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존 뉴미디어가 가졌던 언론으로서의 책임에서 인터넷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재배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뉴스 확산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관한 고찰

인터넷 언론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연구하였다. 일단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관규·김진원, 2010; 정윤식, 2004 등). 이 연구들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 기사 선택, 디자인 등 뉴스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비교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용자 연구는 인터넷 언론의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창호·이호영, 2009)와 기존 뉴스매체와의 이용행태 및 동기, 만족도 등을 비교한 연구(조주선, 2005) 등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인터넷 언론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기존 미디어와 다른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언론의 가능성(문상현, 2004; 박춘서, 2005), 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언론 활용(김동명, 2009; 박선희·주정민, 200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 뉴스매체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공신력에 대한 연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신력은 뉴스연구에서 꾸준히 주목해온 고전적인 주제로서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을 검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안주아·김봉섭(2003)은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신문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추출되었고,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이라는 항목이 전문성 요인에 포함

〈표 1〉 인터넷신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

	2010년 (a)	2011년 (b)	증감 (b-a)
정확성	3.72	3.37	-0.35
공정성	3.62	3.24	-0.38
신뢰도	3.60	3.30	-0.30
선정성	3.42	3.24	-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1년 언론수용자 인식조사' 결과를 표로 재구성한 것임

되어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매체의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의 공신력은 수용자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정적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정확성은 2010년에는 3.72점을 받았으나 2011년에는 3.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0.35점이 낮아졌다. 동일하게 공정성에서 0.38점, 신뢰도에서 0.30점이 하락하였다. 언론으로서 수용자들의 인식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선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년 대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선정적이라고 인식되면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소재나 제공할 수 있을 뿐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의제 설정하는 뉴스매체로서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요 뉴스매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내용적인 측면의 개선을 통해 정확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여 반드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송경재(2010)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피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인터넷 미디어가 직면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갈등을 해소할 정책 대안을 법제도적인 보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법률 간의 충돌해소, 자율규제 장치 마련, 다층적인 자기검증 시스템 도입, 기술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정환(2009)은 인격권 침해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당시 논의된 대응책들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도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인터넷 언론을 규제해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포털이 언론이나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특징과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포털의 의제설정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결정하고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정책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의 의제설정 기능을 가진다면 단순한 재매개가 아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훈(2007)은 포털뉴스가 종이신문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 매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종이신문의 의제가 포털뉴스에 전이되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게이트키퍼를 통해 기존 뉴스를 해체·재구성하는 포털뉴스의 재매개 기능이 의제설정에서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희(2008)는 인쇄매체와는 구분되는 포털 뉴스 나름대로의 의제설정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포털뉴스의 의제에는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는 에디터채택뉴스와 이용자채택뉴스가 공존하며, 에디터채택뉴스는 인쇄신문이 선정한 의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뉴스가 정치중심의 의제설정을 하는 반면, 에디터채택뉴스는 이용자 생활에 좀 더 밀착한 '사회/교육' 뉴스와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포츠' 뉴스 관련 이슈들을 더 많이 선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포털뉴스의 뉴스배치와 편집이 뉴스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최민재·김위근(2006)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박스'가 네티즌의 1차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포털 사이트의 뉴스소비가 뉴스 에디터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므로 포털이 단순히 원보도를 매개하는 수준이상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포털의 이런 영향력을 감안하여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문제와 책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정동훈(2008)은 언론조정·중재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포함되기 이전에 포털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범주화하여 검토하고,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포털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파악한 후 법안 개정을 통해 포털의 피해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타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태(2009)는 포털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법규법적 논쟁과 규제형태를 살펴본 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으로 기존의 자율규제 혹은 타율규제 모델이 아닌 '공동규제(co-regulation)'를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의 공적규제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포털업자들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 주되, 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16). 이재진·상윤모(2008)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언론조정·중재제도도 인터넷 언론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2005년 언론중재

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시급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의 확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직접 뉴스 확산에 동참하기 때문에 뉴스 확산의 속도와 범위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또한, 한번 확산된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가 개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으로 옮겨졌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는 포털이 언론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시점이었지만, 막강해진 포털의 영향력은 이미 간과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있었다. 인터넷뉴스를 이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응답자의 86.5%가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목과 클릭해서'라는 응답²⁾(한국언론진흥재단, 2011)할 만큼 뉴스 확산에서 포털의 영향력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트렌드 모니터(trendmonitor.co.kr)의 조사 결과 역시 성인남녀 1,200명 중의 58.2%가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기사의 파급력(49.9%), 영향력(27.1%)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조사결과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우세한 시각이라는 것을

2) 그 외에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46.3%)',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34.8%)', '포털사이트 뉴스란(홍)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34.6%)'로 나타났다.

보여주므로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언론조정 사례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언론조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크게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³⁾ ‘인터넷신문’ 정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항)’고 정의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에 의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의 인격권 침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신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성격이 강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결

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신문의 인격권 침해의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인격권 침해의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신청된 언론조정사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청인 유형별, 청구유형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청구유형이 중간에 변경한 경우 최종 청구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등의 발간물을 통해 전체적인 언론조정·중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매체별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PASW 18.0을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통계기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수조사이므로 통계치는 산출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언론조정 전체 현황

3) IPTV도 2009년부터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다.

〈표 2〉 매체 유형별 조정 현황

구분 연도	사건수	일간신문	주간 신문	시사 주간지	방송	케이블 TV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기타
1981	44	34	2	2	2			4			
1982	50	19	3	9	13		4	2			
1983	71	47	6	6	4		3	5			
1984	54	27	5	5	10		6	1			
1985	59	41	5	4	1		2	6			
1986	49	21	4	9	5		10				
1987	47	20	4	7	5		7	3			1
1988	55	38	5	1	4		6	1			
1989	121	81	11	1	18		6	4			
1990	159	107	23	1	13		13	2			
1991	220	152	23	11	15		17	1			1
1992	381	287	37	8	31		16	2			
1993	423	276	57	6	58		23	1			2
1994	541	342	74	7	89		23	6			
1995	528	341	76	6	74		28	2			1
1996	556	364	90	10	72		13	6			1
1997	490	280	85	13	86	2	22	2			
1998	602	300	122	7	142	4	21	5			1
1999	641	335	93	13	166	5	16	10			3
2000	607	329	113	7	124	1	16	17			
2001	659	416	85	18	105	9	16	8			2
2002	511	303	89	10	89	1	14	4			1
2003	724	485	60	10	121	12	22	13			1
2004	759	449	89	14	161	15	18	10			3
2005*	883 (476)	495 (237)	110 (67)	4 (4)	151 (82)	23 (16)	33 (14)	18 (8)	48 (48)		1 (0)
2006	1,087	598	125	29	192	24	25	17	77		
2007	1,043	504	113	17	226	24	10	30	113		6
2008	954	424	117	13	162	27	12	33	157		9
2009	1,573	485	128	19	441	18	27	38	233	181	3
2010	2,205	356	176	8	175	14	24	42	567	841	2
2011	2,124	389	181	16	216	34	9	62	705	510	2
계 (%)	18,220 (100.0)	8,345 (45.8)	2,111 (11.6)	291 (1.6)	2,971 (16.3)	213 (1.2)	462 (2.5)	355 (1.9)	1,900 (10.4)	1,532 (8.4)	40 (0.2)

*2005년 () 안의 수치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의 집계 수치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 언론조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1981년 우리나라에 언론조정⁴⁾이 시작된 이후로 2011년 현재까지 총 18,220건이 처리되었다. 도입초기 44건에 지나지 않았던 사건수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1990년 159건, 2000년 607건, 2011년 2,124건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표 2〉 참조). 꾸준히 사건수가 증가해 온 것은 각 매체별로 사건수가 증가해 왔고,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의 대상매체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대상 매체에 포함된 인터넷신문과 2009년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대상매체에 포함되면서 조정신청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체별로 누적치를 보면,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뉴스매체로서 위상을 지켜온 일간신문이 전체 사건수의 45.8%로 가장 많았고, 방송(16.3%), 주간신문(11.6%), 인터넷신문(10.6%), 인터넷뉴스서비스(8.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일간신문의 사건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인터넷 언론이 주요 조정대상 매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전체 사건수의 38.1%(841건)를 차지하면서 일간신문(16.1%, 356건)의 2배를 넘었고, 인터넷신문이 25.7%(567건)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의 강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인터넷신문이 전체의 33.2%(705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24.0%(510건)를 나타냈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언론조정 · 중재 대상이 된 2005년에 인터넷신문

에 대한 조정 건수가 총 48건이었다. 그 이후 매년 20~30건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009년 사건수가 272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 전에는 언론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은 2010년 510건, 2011년 70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 현황을 신청인 유형, 청구 유형, 침해 유형, 처리 결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인 유형을 보면, 개인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3〉 참조). 그 다음은 회사가 19.2%, 일반단체가 14.1%로 나타나 이 세 유형이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회사 혹은 일반단체 등이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언론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지자체 및 공공단체(4.4%), 국가기관(2.8%), 교육기관(1.7%), 종교단체(0.8%)로 구성되었지만 높은 비율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활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청구 유형

청구별 유형을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의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2005년 29건으

4) 도입 당시에는 '언론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기능면에서 보면 현재의 '언론조정'에 해당함. 현재의 중재 기능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므로 2005년 이전의 사건은 모두 언론조정에서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중재'를 모두 '조정'으로 기입하였음.

로 시작한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4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18건으로 급증하였다. 정정보도청구가 가장 많은 것은 전체 언론에 대한 통계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매체에 대한 사건수 15,418건 중에 54.9%에 해당하는 8,457건이 정정보도청구건이었다.⁵⁾

손해배상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었고, 결국 입법화된 것이다(윤경, 2005, p.30). 2005년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래로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급증하였다. 전체의 35.2%로 정정보도청구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빠른 증가폭으로 봤을 때 정정보도청구를 추월할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2005년부터 빈도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전체의 8.2%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또한 추후보도청구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0년에는 70건이나 신청되었다.

3) 침해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침해 유형별 신청현황을 보면,

〈표 3〉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신청인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05		48	29	9	4	1	4	1	
2006		77	37	12	10	6		9	3
2007		113	64	17	25	1		1	5
2008		157	94	14	37	1	2	3	6
2009		272	120	66	63	4		10	9
2010		567	336	74	111	7	1	8	30
2011		705	427	82	122	12	8	22	32
계 (%)		1,939 (100.0)	1,107 (57.1)	274 (14.1)	372 (19.2)	32 (1.7)	15 (0.8)	54 (2.8)	85 (4.4)

〈표 4〉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청구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5		48	29	2		17
2006		77	43	13		21
2007		113	62	8	3	40
2008		157	81	14	5	57
2009		272	144	33	7	88
2010		567	318	40	21	188
2011		705	315	49	70	271
계(%)		1,939(100.0)	992(51.2)	159(8.2)	106(5.5)	682(35.2)

5) 청구별 조정 처리 현황은 1995년까지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다가 1996년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분리되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93.6%(1,814건)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5〉 참조). 2005년 전체 48건 중 95.8%에 해당하는 46건이 명예훼손이었다. 2007년부터는 점차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다른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서 침해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초상권, 성명권에 대한 신청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증가했는데, 국민들이 침해된 인격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전체의 2.2%로 총 42건을 나타냈으며 성명권은 1.2%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여전히 침해 유형이 명예훼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다른 인격권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의 발전으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취재나 보도 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재대상에게 동의를 얻는데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6〉 참조). 그

〈표 5〉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침해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5	48	46*	2						
2006	77	72	3	2					
2007	113	104	2	4	1		1		1
2008	157	151		5	1				
2009	272	257	1	7					7
2010	567	513	3	19	2		3		27
2011	705	671		5	19		9	1	
계 (%)	1,939 (100.0)	1,814 (93.6)	11 (0.6)	42 (2.2)	23 (1.2)		13 (0.7)	1 (0.1)	35 (1.8)

*46건 중 1건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병합된 사건임, 편의상 명예훼손으로 분류함

〈표 6〉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조정 처리 결과 현황

연도	구분 사건수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5	48	15		2	13		6	12[10]
2006	77	34		2	13	5		23[18]
2007	113	44			22	5	5	37[23]
2008	157	62	8	2	17	5	4	59[49]
2009	272	128	7	7	14	7	2	107[70]
2010	567	190	12	14	29	43		279[219]
2011	705	230	22	19	81	10	4	339[254]
계 (%)	1,939 (100.0)	703 (36.3)	49 (2.5)	46 (2.4)	189 (9.7)	75 (3.9)	21 (1.1)	856[643] [44.1]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러나 취하된 사건 중 75.1%인 643건은 피해구제를 받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사와 신청인이 심리 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약속을 하고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언론들이 언론조정 신청 후에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약속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취하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취하하는 경우는 24.9%이다.

한편, 조정심리에 걸쳐 당사자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38.8%였다. 즉, 조정성립이 36.3%(703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한 것은 2.5%였다. 한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2.4%였다. 이 외 조정불성립결정은 9.7%, 기각 3.9%, 각하 1.1%로 나타났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신청은 총 1,493건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언론조정 대상매체가 된 이후로 2009년 142건, 2010년 841건, 2011년 510건이 신청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조정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그럼, 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인 유형을 보면, 개인

이 전체의 61.6%(919건)로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가 21.2%(3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신문과 비교해서 개인과 회사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고, 일반단체는 9.0%로 인터넷신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 외 지자체 및 공공단체(4.4%)와 국가기관(2.8%)은 인터넷신문과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2) 청구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청구유형을 보면, 정정보도가 50.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8〉 참조). 한편, 반론보도는 6.7%, 추후보도는 4.3%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한계가 없는 매체인 만큼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 상 독자들에게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면이라는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구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특칙'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도 결국은 독자로 하여금 뉴스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는 효과를 주어 신청인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언론의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신청인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09		142	58	36	38	7		3	
2010		841	534	64	181	1		24	37
2011		510	327	35	98		6	15	29
계		1,493	919	135	317	8	6	42	66
(%)		(100.0)	(61.6)	(9.0)	(21.2)	(0.5)	(0.4)	(2.8)	(4.4)

〈표 8〉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청구 유형

연도 \ 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9	142	68	20	1	53
2010	841	474	46	11	310
2011	510	209	34	52	215
계 (%)	1,493 (100.0)	751 (50.3)	100 (6.7)	64 (4.3)	578 (38.7)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활발한 편이다. 전체의 38.7%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009년 53건이었던 것이 2010년 31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거나 전체적인 사건수의 하락과 함께 2011년에는 21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보면, 2010년 36.8%였던 것이 2011년에는 42.1%로 높아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 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포털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의 정도가 심해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침해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침해 유형을 보면, 명예훼손이 91.1%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한편, 인터넷신문에서 초상권 침해가 2.2%였던 것에 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는 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진이나 보도영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혹은 허락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동의범위를 넘어선 이용을 한 경우이다. 영상저

널리즘 시대라 불릴 만큼 뉴스에서 보도영상이나 사진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에 전체 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청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뉴스 소비가 대부분 포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 인터넷 특성 상 한번 노출된 정보가 완벽하게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 개인블로그나 게시판 등으로 복사된 내용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산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의 처리결과에서 취하가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대부분이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표 9〉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침해 유형

연도 \ 구분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9	142	125		11					6
2010	841	742	14	65			7		13
2011	510	493		8		1	8		
계 (%)	1,493 (100.0)	1,360 (91.1)	14 (0.9)	84 (5.6)		1 (0.1)	15 (1.0)		19 (1.3)

〈표 10〉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조정 처리 결과

연도	구분 사건수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9	142	37	12	1	2	5	2	83 [70]
2010	841	77	69	6	13	48		628 [555]
2011	510	150	10		38		1	311 [288]
계 (%)	1,493 (100.0)	264 (17.7)	91 (6.1)	7 (0.5)	53 (3.5)	53 (3.5)	3 (0.2)	1,022 [913] (68.5)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와 신청인간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기사를 제공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자신들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약속하고 심리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하의 89.3%에 해당하는 913건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구제를 받고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6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등 국내 5대 포털사와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원보도 제공 언론사와의 조정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털들이 그동안 조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심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는 달리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포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고자 함이었다(뉴시스, 2011년 6월 10일자).

조정성립은 전체의 17.7%(264건)였는데 취하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의 6.6%(동의 6.1%, 이의 0.5%)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의 동의와 이의가 각각 2.5%, 2.4%였던 것에 비해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원보도제공언론사와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조정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5년 인터넷 언론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이 된 이후 관련 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법규가 미비하여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도입되자마자 신청이 폭주하여 포털이 언론인가의 논란을 떠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책이 시급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 상 기존 매체의 피해구제제도만 게재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구제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인터넷 매체에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언론사닷컴까지 확장시키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역시 대상 매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그 영향력 또한 커져왔기 때문이다. 이용자수가 늘어날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정보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의 피해가 더

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 된다고 해도 종이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독자(시청자)는 한정된 지면이나 시간 내에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보도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만, 인터넷은 무한대의 지면에 이용자가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 풀미디어(pull media)이므로 독자들이 피해구제보도문을 찾아 읽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초상권 등은 한번 노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된다는 것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은 전통적인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뉴스를 검토하는 기존 언론에 비해 인격권 침해 요소들이 데스크에서 잘 걸러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은 기존 언론보다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데스크뿐만 아니라 일선 기자들도 인격권에 대해 좀 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 침해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기사작성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따라서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적어도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인격권 침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가져야 할 공신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언론의 공신력은 정확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형평성 등 다양한 하부 속성들로 구성된 개념이다. 인터넷 언론은 데드라인 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들은 뉴스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나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8).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한국언론학회』, 52(3), 28~52.
- 김관규 · 김진원 (2009).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39~72.
- 김동명 (2009). 정치발전과 인터넷 언론의 역할. 『한국의정연구회』, 4(2), 91~116.
- 김성태 (2009).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한국언론학회, 인터넷에서의 뉴스생산과 유통의 발전방안 세미나 2009. 3, 3~23.
- 문상현 (2004).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장. 『한국언론법학회』, 3(1), 37~67.
- 박선희 · 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한국언론학회』, 48(5), 214~242.
- 박춘서 (2005).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5(3), 227~272.
- 송경재 (2010).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피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271~304.
- 안주아 · 김봉섭 (2003).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공신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239~273.
- 언론중재위원회 (2010).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 유수윤 · 정재환 (2010).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2), 237~268.

- 윤 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통권 95호, 30~41.
- 이동훈 (2007). 뉴스수용자에 대한 포털뉴스의 의제 설정효과 연구: 북핵보도 관련 종이신문의 제전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1(3), 328~442.
- 이재진 · 상윤모 (2008).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8년 봄철정기학술대회 소통과 융합, 그리고 축제 <특별세션> 2008. 4. 37~83.
- 이창호 · 이호영 (2009). 포털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46, 177~211.
- 정동훈 (2008). 포털뉴스 피해사례 및 현황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8년봄철정기학술대회 소통과 융합, 그리고 축제 <특별세션> 2008. 2~36.
- 정 완 (2009).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109, 7~72.
- 정윤식 (2004). 인터넷 언론과 전통 언론의 비교분석. 『세미나및공청회』, 252~276.
- 최민재 · 김위근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4), 437~463.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1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행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과거 오프라인의 대척지를 의미했던 온라인은 오늘날 또 하나의 중첩된 현실공간으로서 정치, 사회, 산업, 언론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월드와이드웹 확산 초기에 온라인공간을 풍미했던 사이버 자유지상주의(cyber libertarianism)의 이상은 오프라인의 제도와 관행들이 이 공간에 외삽하려는 시도들에 강고하게 저항하였다. 이제는 고전적 언설이 되어버린 사이버스페이스독립선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John Perry Barlow)과 같은 이상적 담론은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의 관념(idea)을 표상한다. 그 요체는 온라인공간을 국가와 시장같은 전통적 권력으로부터 탈개입적인 자연상태(natural state)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해 각축이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이 자연상태로 영속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으며 구조화된 집단다원주의(structured group pluralism)가 새로운 질서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사이버 자유지상주의 사조와 그로부터 출원하거나 영향을 받은 실험, 운동, 정책은 오늘날 정보기본권(cyber rights)을 신장하고 온라인공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인식론적 토대로 역할하고 있다. 가령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등은 국가, 시장, 타자로부터의 인권침해와 정보독점을 제어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으로 주창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내적 규범과 권리를 문제성 정보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자율규제(self regulation)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인터넷과 자율규제의 만남이 어떠한 동향과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규제는 제도적 기반과 실체적 프레임워크를 갖춘 규제레짐(regulation regime)을 통하여 시행된다. 인터넷 규제레짐은 문제성 정보에 대응하는 제도의 배열 구조(arrangements)로서, 규범, 법, 기술 등의 장치들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장치들을 동원하여 이해, 선택, 경쟁을 표출하는데 있어 정보주체들간 규제 권한의 분점 상태는 규제레짐의 성격을 규정한다.¹⁾

1) Lessig, Lawrence,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년; Slevin, James, <The Internet and society>, Polity Press, 2000년.

국가, 시장, 언론, 이용자는 보다 많은 규제권한을 추구하는 정보주체들로서 상호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국가는 사회질서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인식하며 보편적 대중과 표준화된 규범을 창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장과 언론은 고객(독자)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정 이용 계층에 대한 접속의 통제를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인터넷상의 절대 다수의 노드(node)를 점유하며 종래의 수동적 사용자 지위에서 벗어나 능동적 행위자로 탈바꿈하며 기성의 권위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규제레짐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이 정보주체들간의 권한을 조정·재배분하여 제도와 관행으로 정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인터넷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낳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 인터넷 규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등 시민권의 제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시민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동안 인터넷의 발전은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즉 강한 규제 환경은 인터넷 이용자의 규모와 충성도를 감퇴시켜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압력은 위임된 정부규제와 시장검열이라는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비판 및 국가 위상의 저하를 가져온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압력은 이를 시사한다.²⁾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는 국가와 대립관계를 이루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민권,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장과 깊이 연관됨으로써 탈국가적 영역에서 제도화가

진행되어왔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본권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내용규제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크게 제한되는 한편, 시민들로부터 출원하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언론의 자율규제 그리고 최소 규제주의가 주된 역할을 담당해왔다(장우영,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내용규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어떠한 형성과 변화를 겪어왔는지, 나아가 언론의 자율규제가 어떠한 수준에서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II. 자율규제와 인터넷

1. 왜 자율규제인가?

규제는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한 제약에서 사회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반 영역의 무질서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적 반응을 뜻한다. 규제는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의 효용성, 사익과 공익의 보호, 혼란 예방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 효과를 감안할 때 규제는 전통적으로 '정부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점차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규제는 정치경제적 시각과 영역으로 확대되어왔다.³⁾

정부규제와 비교할 때 자율규제는 대립항으로서 다원화된 규제 주체와 방식을 포괄한다. 즉 종래의 사회적 규제는 정부와 같이 제도적 권위를 보장받은 공적 주체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행사되어왔다. 효율성의

2)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2010년, 제9권 2호, 209-241.

3) Morrison, Alan B. & Noll, Roger G.,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thics>, Princeton-Hall, Inc., 1980년; 장우영, "인터넷 규제의 정치: 내용규제 레짐의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4권 1호, 34-71.

측면에서 규제의 문제에 접근할 때 이러한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사회의제가 복잡화 다변화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규제의 효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와 의제의 성격은 규제의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비민주적 정부가 규제를 행사하거나, 민주적 정부라 할지라도 구성원과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한계의 맥락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현실화된다. 자율규제의 본성은 정부의 독점적인 규제 권한의 해체 및 탈제도적 권위의 양립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정부 독점의 규제 권한을 다양한 영역으로 이전하는 사회적 재분배가 자율규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피규제자가 규제 주체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사회적 책무감을 배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자율규제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규제 효과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즉 제도적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방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개념적 혼선은 더욱 본원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자율과 규제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의 조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자율규제를 사실상 규제의 방임으로 인식한다.

이렇듯 실효성과 개념적 오해는 자율규제가 작동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따라서 규제 효과를 담보하고 개념적 오해를 불식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기능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때 순기능을 확인받을 수 있다. 자율규제론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제기되어왔다. 첫째, 본질주의적(essentialist) 접근으로서 정부 등 제도적 권위를 배제하고 피규제자 스스로 규제 주체의 위상과 역

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권위 없는 규제 상황에서 피규제자의 사회적 책무감이 온전하기 어렵고 여전히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비교론적(comparative) 접근으로 제도적 권위를 수용하면서 정부와 피규제자 간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양자-정부와 피규제자-가 위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제도적 권위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절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⁴⁾

다음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심화해야 한다. 비교론적 시각에서 자율규제는 공적 권위의 원천적인 배제를 뜻하지 않는다. 즉 공적 권위의 합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규제 효과를 진작시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합리적' 개입의 실현이다. 여기에서 현대사회의 통치 양식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사회환경의 복잡화, 행위주체의 다변화, 다양한 이익의 충돌, 국민국가 경계의 약화와 멤버십의 유동, 심층적인 민주성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는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치에서 벗어난 분권화와 수평적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정의된다. 즉 자율규제는 공적 권위의 후견 또는 파트너십에 의거해서 피규제자가 주도적인 규제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이자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형 자율규제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공적 권위의 후견을 통해 실질적 규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부연하면 자율규제는 '자율'의 비실효성과 '규제'의 억압성을 상쇄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피규제자의 책임감 있는 자기 규제가 행사됨으로써 민주적 규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피규제집단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딜레

4) Piorlet, Paul A,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A Canadian Perspective), Internet Society Proceedings, 2000년.

마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장기적으로 피규제자의 자기 규제 역량이 강화되어 규제 행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규제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상호 신뢰가 훨씬 더 건설해질 수 있다. 넷째, 타율규제에 비해 사회적 갈등과 규제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타율규제는 이익 실현의 조정보다는 억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갈등이 빈발하기 십상이고 그에 따라 갈등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2. 인터넷 자율규제

국내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은 급속히 확산되어 온 한편, 정부규제 일변도의 대응으로 오히려 갈등이 확산되는 예들이 부단히 노출되어왔다. 따라서 사회의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자율규제 요구가 증대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아울러 인터넷 고유의 본성과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탈집중형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노드들 간의 정보 흐름으로 구축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은 부단한 기술적 혁신에 의해 발전되고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제도 발전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유경쟁(free competition)과 거버넌스에 의해 월드와이드웹이 확장되어온 경험은 개별 국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⁵⁾ 세계적으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나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 인터넷의 각 분야들을 관장하는 기구들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공간에서의 이익 범위와 경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기제로서 자율규제가 요구

되었다. 전술했듯이 온라인공간은 자연상태에서 다원적 이익이 경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과거 인터넷 백본(backbone)이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월드와이드웹은 만인의 네트워크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닷컴(.com) 도메인의 폭증이 말해주듯이 웹의 급격한 상업화는 정보 공유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정보를 둘러싼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켰다. 나아가 웹과 인터넷 콘텐츠의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정치 이슈의 확대에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익 표출의 다변화와 치열한 경합은 국민국가와 국제관계의 대응에 과부하로 작용함으로써 자율규제를 조정기제로 수용케 하는 동인이 되었다.

나아가 국민국가 정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자율규제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인터넷 백본이 월드와이드웹으로 질적 발전을 이루는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웹의 시장 전망에 대하여 낙관론이 붐을 이루었다. 즉 장기적으로 탈산업사회의 국가경제 발전 동력으로서 웹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는 탈개입주의와 자유경쟁 그리고 거버넌스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켰다. 국가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온라인공간의 고객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보다는 이용자의 자율적 규범을 선호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세계 정보시장의 패권국인 미국 IT 업계가 더욱 큰 이해를 표출했는데, 그러한 탓에 미국은 이용자보다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가 강하게 제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규제를 좌절시킨 역사적 경험은 자율규제의 세계적 확산을 추동하는 전기가 되었다. 1996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IT 업계 간의 위헌 소송 공방이 그 예이다. 시민단체·IT 업계는 이 법안이 인터넷 검열을 광범하게 허용함으로써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5) 장우영,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2005년, 제8권 4호,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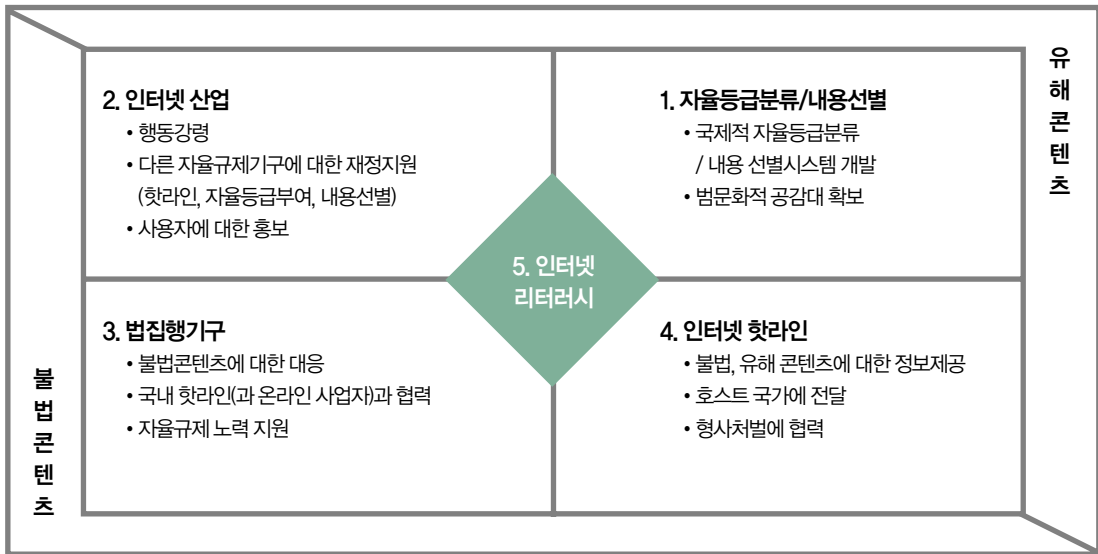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중국에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내용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었다. 즉 인터넷을 종래의 매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가장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매체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검열입법의 좌절에 대한 호의적 의견을 표명하고 회원국들에게 통신품위법과 같은 특정의 규제입법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다.⁶⁾

이상과 같은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조 속성, 온라인 공간의 성격 변화,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과도한 규제입법의 좌절은 인터넷 자율규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배경이었다. 특히 인터넷 규제가 주로 이용자 콘텐츠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 영역에서 자율규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 산하 정보사회사무총국(DG-X III)에서 지속적인 액션플랜(action plan)을 가동하여 [그림 1]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거버넌스형 자율규제로서 “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 일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규제에 참여하고 국가와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협력·지원함으로써 합리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의된다.⁷⁾

이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괄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권한을 정부와 법률 등의 제도적 권위에서 거버넌스로 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 인터넷 자율등급제, 인터넷 업계, 시민사회 핫라인을 규제 주체로 포괄하고 정부와 법률이 이들을 지원하는 논리구조로 거버넌스형 자율규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여 주 대응 주체를

[그림 1]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출처: Waltermann, Jens & Machill, Marce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2000년.

6)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on the Green Paper>, SEC(97), 13., 1997년; Compbell, Penny & Machet, Emmanuelle, “European Policy on Regulation of Content on the Internet”, <The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 Liberating Cyberspace: Civil Liberties,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Routledge, 1999년.
 7) European Commission, <Call for proposals for indirect actions under the Multiannual Community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 and new online technologies(2003 to 2004)>, 2003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성 정보를 불법(illegal)과 유해(legal but harmful)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사법적 대응을 후자는 민간 주도의 대응을 추구함으로써 검열 없는 규제 효과를 추구하였다. 셋째,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게 규제의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영리 추구에만 경도되기 쉬운 온라인 시장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고자 하였다.⁸⁾

이러한 자율규제 시스템의 제도화는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와 규제주의 간의 사회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율과 규제의 만남은 온라인공간에 대한 탈개입적 방임과 목적의식적 규제의 양 흐름의 접점을 의미하였다. 역사적으로 유즈넷(Usenet)과 같은 인터넷 백본은 문제성 콘텐츠에 대한 내적 규율과 네트워크의 상업적 이용 금지라는 이용자 규범을 주축으로 국가·시장의 개입을 억제하였다. 반면 월드와이드웹이 대중들의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문제성 콘텐츠와 일탈 행위가 급속히 증대하면서 제도적 권위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통신품위법을 둘러싼 미국의 위헌 소송 공방은 두 흐름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에 자율규제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전기로 역할하였다.

Ⅲ. 한국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영역은 방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 유통,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정보 소유, 프로토콜(protocol)과 도메인 네임 관리 등 다양한 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규제는 인터넷 규제 문제를 환기시킨 가장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만큼 인터넷상의 표현

문제는 빈발할 뿐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논쟁도 매우 치열하다. 특히 내용규제는 이용자의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이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부연하면 내용규제는 빈번하게 표현의 자유 대 검열의 대립 구도로 치닫는데, 이는 규제의 원리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숙성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 두 측면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인터넷 내용규제는 대개 윤리적 차원으로부터 동기화되지만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인간존엄성, 공공의 이익, 국가안보 등을 사유로 모든 표현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할 때 표현의 제약이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다. 우선 표현의 제약 범위는 사회의 규범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앞의 사유들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내용규제의 방식인데, 이용자와 언론의 표현에 대한 행정권의 직접적인 개입은 검열로 간주된다.

둘째,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방식과 강도가 달라지므로 인터넷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방통신품위법 판사에서 인터넷을 가장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매체로 규정한 것은 매체특성론(media-specific approach)으로부터 연유하였다. 가령 방송의 경우 전파의 공공성, 희소성, 침투성 때문에 사회적 책무와 규제 강도가 가장 크다. 반면 인쇄매체의 경우 독자의 접근 의지와 리터러시(literacy)를 전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반경이 훨씬 넓다.⁹⁾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은 인쇄매체에 준하는 특성과 규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의 요지이다. 아울러 유럽연합

8) 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정보통신정책자료집: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진정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 2002년.

9)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년; 황승흠·황성기,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년.

의 자율규제 프로젝트와 거버넌스형 자율규제 시스템의 정립도 인터넷의 매체 특성을 반영한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와 흐름은 어떠한 형성과 부침을 겪었을까? 우선 내용규제 제도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내용규제 제도가 논쟁적 실체로 환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이었다. 이 입법의 시점은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며 한국의 정보화가 고도화기로 들어서서 무렵이었다. 한국의 정보화는 과거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 성격을 띠었다. 즉 IMF 관리체제에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전략에 의해 성장일변도의 정보산업 육성이 추진되었던 반면 성장적 정보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건전한 정보사회 질서 구축을 목표로 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었는데 이 또한 국가주도적 성격을 띠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부기구의 정보 삭제 및 웹사이트 폐쇄 권한, ISP의 정보 삭제 권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골자로 한 정부주도의 내용규제 제도화를 의도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특히 47조 허위통신 금지 및 53조 불온통신 금지-도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정부규제를 합리화하는 진원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규제입법과 함께 내용규제를 관장하는 정부기구의 설립은 인터넷 규제의 국가주도적 성격을 더욱 명료하게 부각하였다. 1995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설치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출범하여 인터넷 내용규제의 포괄적 권한을 행

사하기 시작했다. 윤리위는 주로 불온통신 심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및 시정요구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위촉 및 시정요구 거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중추적인 정부규제기구로 역할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윤리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조직과 심의 및 제반 기능이 흡수되었다. 더욱이 심의위는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훨씬 더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 비판 콘텐츠에 대하여 강도 높게 대응함으로써 검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반면 정부규제의 흐름에 비해 자율규제의 역량은 저발전되었고 주목할 만한 동향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용자와 함께 자율규제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의 경우 무임승차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보통 시장 자율규제는 관련 업계들의 사업자 행동강령의 성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구속력을 담보한 책무·이행·처벌의 규정이 부재하거나 사문화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규제 역량을 육성하기보다는 정부규제의 위임자로 역할을 강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온라인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사업자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포털의 경우 내용규제 권한을 폭넓게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성 콘텐츠에 대한 포털의 임시조치(notice and take-out)가 그것이다. 2010년 포털의 임시조치건수는 12만 건을 상회하였는데, 그 중에서 심의위의 요청에 의한 조치가 8만여 건에 달하였다.¹⁰⁾ 임시조치는 문제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양산을

〈표 1〉 인터넷 등급제 유형

	국가주도의 등급제	자율등급제	제3자 등급제
등급판정주체	국가	정보제공자	제3자
등급표시주체	국가에 의한 유해목록의 제공 또는 국가의 등급판정에 따른 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	정보제공자	제3자에 의한 등급데이터베이스 제공

* 출처: 황승홍·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년.

10) 한국일보, 2011. 3. 13.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심의위의 요구에 의해 정부규제를 대항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임시조치는 정부비판적 콘텐츠에 대한 심의위의 압력이 불거지면서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시장검열의 논란을 확대하였다.

인터넷 자율등급제(이하 ‘인터넷 등급제’)는 유럽 연합의 자율규제 프로젝트와 미국 IT 업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출시를 통하여 이용자 자율규제의 기제로 확산되었다. 인터넷 등급제는 콘텐츠와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등급 부여와 이용자의 등급 판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성 콘텐츠에 대응하는 기술규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법제화되어 정부규제 방식으로 변용됨으로써 검열기술로 비판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도 못하였다. 가령 탄력적이지 못한 등급 부여와 함께 등급제 소프트웨어에 주로 과거 윤리위의 차단 리스트가 반영됨으로써 검열 소프트웨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웠다.¹¹⁾

이러한 동향은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가 지배적으로 강한 입법과 정부 권한에 의거해서 관장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이용의 냉각효과를 야기한 법제가 개편되고 나아가 비정부 부문에 자율규제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흐름도 조성되어왔다. 우선 법제의 합리적 개편은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 판결이 전기가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동법 53조에 불온통신 조항이 검열을 초래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방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가 인터넷이 광범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매체라는 점을 판결 사유로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입법 중심 규제에 대한 경종이 울려졌고 설립 근거가 훼손된 윤리위의 입지 또한 좁아지게 되었다.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싼 공방은 2000년대를 경과하는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 가장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보유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책 집행으로부터 더욱 가중되었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요구에 의한 포털의 임시조치건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 비판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검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과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규제 사례로 회자되는 미네르바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허위통신 금지(47조)의 위헌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의 정치적 표현 규제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하였다.

한편 이같은 사례들에서 불거진 내용규제 공방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포털에 대한 과도한 임시조치 요구는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렸으며, 2011년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폐지 방침을 공론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47조 허위통신금지 조항의 경우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도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지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서 정부규제 일변도의 관행들이 점차 축소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 다만 기존 정책과 법제를 정비하는 데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와 정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간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공고화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문제는 더욱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특히 선거 시기에 이 문제는 봉합되기 어려우리만큼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국가기구 내부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이견을 노출하는 악순환이 노출되

11) 장우영, “인터넷 기술규제와 코드의 정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005년, 제12권 4호, 23-57.

〈표 2〉 국가기구 내부의 선거규제 갈등 쟁점

선거규제 제도	지지	반대
인터넷 언론 규제 (법률 미비,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화관광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2-2004년)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원회
UCC 규제 가이드라인 (2007년)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확대 (2008-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입법조사처(무용론)
통신비밀보호법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트위터 규제 가이드라인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당 디지털위원회

* 출처: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2010년, 제9권 2호, 209-241.

어왔다. 아울러 앞서가는 소셜네트워크와 뒷걸음치는 제도 간의 간극은 선거관리당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령 17대 대선과 5회 지방선거에서의 UCC(User Created Content) 및 트위터 규제가 가이드라인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봉쇄하는 문턱으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작금의 뉴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인식된다. 그 요지는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역량의 강화 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자율정책기구')가 그것인데, 이 기구는 업계의 무임승차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시장 자율규제의 기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자율정책기구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의 시행',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인터넷 인구의 절대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핵심 업체들—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이 회원사로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책무감과 사업 집행력이 매우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장기적 발전 전망의 측면에서 자율정책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자명해 보인다. 우선 회원사가 소수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자율규제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참여 업체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사업자 행동강령을 정립해야 한다. 즉 선언적 강령이 아니라 책임과 준수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신뢰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율규제는 비정부 규제기구의 자율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형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때 실질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IV. 한국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 동향

1. 인터넷 뉴스 유통과 포털의 자율규제

언론은 시민사회의 특수 영역 혹은 국가와 시민사회

〈표 3〉 인터넷 뉴스미디어별 이용 현황

순위	인터넷 뉴스미디어	순방문자 (명)	도달률 (%)	평균 체류시간 (분)	시간 점유율 (%)	평균 재방문일수 (일)	페이지뷰 (페이지)	평균 페이지뷰 (페이지)	1회 방문당 페이지뷰 (페이지)
	전체	29,975,810	92.86	258.55	-	12.17	10,638,632,110	354.91	-
1	chosun.com	18,564,512	57.51	21.21	5.08	4.50	505,013,550	27.20	4.01
2	daum.net [News & Media]	18,124,804	56.15	107.40	25.12	7.68	3,104,611,143	171.29	9.43
3	mk.co.kr	18,020,064	55.83	10.21	2.37	3.88	170,478,349	9.46	1.79
4	naver.com [News & Media]	17,735,795	54.94	55.94	12.80	5.45	1,493,827,911	84.23	7.81
5	joinsmsn.com [News & Media]	16,860,285	52.23	14.33	3.12	4.20	218,672,980	12.97	2.19
6	hankyung.com	15,395,356	47.69	7.03	1.40	3.02	101,712,173	6.61	1.72
7	mt.co.kr	14,542,744	45.05	9.64	1.81	3.19	136,088,510	9.36	2.19
8	hankooki.com	14,510,951	44.95	11.90	2.23	3.66	190,522,772	13.13	2.58
9	donga.com	14,486,022	44.88	11.90	2.22	3.48	246,039,843	16.98	3.61
10	nate.com [News & Media]	14,416,580	44.66	77.11	14.34	5.64	2,006,529,456	139.18	12.90
11	asiae.co.kr	14,346,694	44.45	10.89	2.02	3.23	247,069,153	17.22	4.05
12	khan.co.kr	12,522,644	38.79	7.50	1.21	2.79	90,983,225	7.27	2.03
13	seoul.co.kr	11,889,615	36.83	6.76	1.04	2.54	47,589,680	4.00	1.31
14	fnnews.com	11,256,740	34.87	5.27	0.77	2.45	42,273,666	3.76	1.27
15	segye.com	10,879,793	33.71	5.99	0.84	2.53	52,473,990	4.82	1.58
16	sportsseoul.com	10,595,370	32.82	11.58	1.58	2.87	284,681,630	26.87	7.24
17	hani.co.kr	10,155,905	31.46	8.70	1.14	2.59	54,980,143	5.41	1.66
18	mydaily.co.kr	9,625,682	29.82	4.29	0.53	2.27	34,009,386	3.53	1.30
19	newsis.com	9,306,810	28.83	4.58	0.55	2.09	27,517,113	2.96	1.20
20	ohmynews.com	8,967,866	27.78	8.77	1.01	2.54	44,058,726	4.91	1.52
21	sbs.co.kr [News & Media]	8,952,007	27.73	5.23	0.60	2.26	35,412,983	3.96	1.45
22	heraldm.com	8,940,795	27.70	4.64	0.54	2.13	27,608,494	3.09	1.23
23	nocutnews.co.kr	8,903,672	27.58	5.09	0.58	2.18	28,738,992	3.23	1.22
24	newsen.com	8,480,301	26.27	3.48	0.38	2.13	28,009,310	3.30	1.28
25	munhwa.com	8,192,656	25.38	4.66	0.49	2.15	27,234,858	3.32	1.30
26	dt.co.kr	7,946,986	24.62	5.87	0.60	2.42	32,390,103	4.08	1.37
27	edaily.co.kr	7,849,029	24.32	4.64	0.47	2.05	31,103,795	3.96	1.59
28	kukinews.com	7,649,574	23.70	4.28	0.42	1.89	21,482,709	2.81	1.25
29	tvreport.co.kr	7,632,043	23.64	2.52	0.25	1.79	20,767,482	2.72	1.32
30	pressian.com	7,579,675	23.48	6.12	0.60	2.19	25,838,637	3.41	1.28
31	koreaherald.com	7,559,414	23.42	2.94	0.29	1.83	17,017,714	2.25	1.07
32	znet.co.kr	7,354,346	22.78	5.25	0.50	2.28	28,125,892	3.82	1.35
33	etnews.com	7,195,085	22.29	5.79	0.54	2.25	33,547,275	4.66	1.61
34	dailian.co.kr	7,193,905	22.29	3.70	0.34	1.78	19,669,878	2.73	1.33
35	koreatimes.co.kr	6,625,244	20.52	3.50	0.30	1.89	15,822,795	2.39	1.10
36	newdaily.co.kr	6,280,818	19.46	4.61	0.37	1.94	17,456,716	2.78	1.22

순위	인터넷 뉴스미디어	순방문자 (명)	도달률 (%)	평균 체류시간 (분)	시간 점유율 (%)	평균 재방문일수 (일)	페이지뷰 (페이지)	평균 페이지뷰 (페이지)	1회 방문당 페이지뷰 (페이지)
37	mediatoday.co.kr	6,232,385	19.31	6.02	0.48	2.11	18,911,157	3.03	1.19
38	imbc.com [News & Media]	5,188,856	16.07	3.90	0.26	1.74	17,657,766	3.40	1.66
39	inews24.com	5,047,355	15.64	4.20	0.27	1.77	17,485,435	3.46	1.64
40	newswave.kr	4,809,025	14.90	1.78	0.11	1.46	9,092,580	1.89	1.13
41	hkn24.com	4,735,478	14.67	1.72	0.11	1.45	8,478,061	1.79	1.09
42	newsway.kr	4,701,475	14.56	1.77	0.11	1.39	7,970,953	1.70	1.08
43	kbs.co.kr [News & Media]	4,677,270	14.49	4.75	0.29	1.67	22,887,647	4.89	2.43
44	breaknews.com	4,576,810	14.18	1.75	0.10	1.45	8,061,077	1.76	1.07
45	kyeongin.com	4,397,065	13.62	1.77	0.10	1.36	7,678,933	1.75	1.14
46	sportalkorea.com	4,391,630	13.61	4.87	0.28	2.24	14,994,982	3.41	1.25
47	yahoo.co.kr [News & Media]	4,382,802	13.58	63.12	3.57	5.72	432,134,592	98.6	8.25
48	bloter.net	3,608,208	11.18	3.51	0.16	1.64	7,603,063	2.11	1.10
49	naeil.com	3,409,643	10.56	3.20	0.14	1.61	7,019,587	2.06	1.10
50	ajnews.co.kr	3,399,407	10.53	1.55	0.07	1.24	5,471,452	1.61	1.16

* 출처: 조희순 · 장우영 · 정진문, <포털뉴스 유통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표 4> 50개 상위 언론사 사이트의 피딩 트래픽 비중

Daum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6,103,865	41,391,951	51,924,806	19.1%	18.0%
방송국	8,082,968	18,799,006	22,636,968	8.7%	7.9%
인터넷신문	13,930,868	42,149,582	51,234,163	19.4%	17.8%
종합일간지	35,754,758	114,473,220	162,431,750	52.8%	56.4%
총 계		216,813,759	288,227,687		
Naver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0,338,873	29,202,823	24,907,557	24.2%	21.7%
방송국	3,124,268	5,504,212	4,347,724	4.6%	3.8%
인터넷신문	13,780,104	38,332,388	35,561,426	31.7%	31.0%
종합일간지	17,110,087	47,873,429	49,811,204	39.6%	43.5%
총 계		120,912,852	114,627,911		
Nate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3,379,087	36,151,974	38,453,596	13.1%	13.5%
방송국	3,005,972	5,368,291	6,624,340	1.9%	2.3%
인터넷신문	22,543,199	141,729,882	129,603,359	51.4%	45.7%
종합일간지	29,979,612	92,710,059	109,111,865	33.6%	38.4%
총 계		275,960,206	283,793,160		

* 출처: 조희순 · 장우영 · 정진문, <포털뉴스 유통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를 중개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만큼 언론의 사회적 위상은 공고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제4부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이 인터넷을 매개로 위상과 영향력을 재정립하고 저널리즘의 지평을 확대해나간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감이 증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터넷 트래픽 조사기관인 코리아클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언론기사 공급과 소비 현황은 <표 3>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다. 뉴스미디어 방문자수는 29,975,810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2.86%를 차지한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인터넷 뉴스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닷컴을 비롯한 신문사닷컴의 지배력이 두드러져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력이 온라인공간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인터넷 언론의 소비는 해당 닷컴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주요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 인터넷에 진입하는 관문을 뜻하였던 포털은 현재 제반 서비스들을 망라한 지배적 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포털 뉴스섹션 방문자수는 일일 2,8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파급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사닷컴과의 뉴스수급 관계에서 포털의 역할은 재정의되어 재매개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표 4>는 3대 포털(다음, 네이버, 네이트)의 인터넷 뉴스미디어 유형별로 피딩 트래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요컨대, 포털을 매개로 종합일간지에 이어 경제지/전문지 및 인터넷신문 그리고 방송 순으로 저널리즘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언론의 책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포털 또한 그러한 책임을 협력적으로 동반해야 함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뉴스유통 현황은 개별 언론사닷컴과 마찬가지로 포털 역시 중요한 자율규제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실적으로도 재매개 저널리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은 <표 5>와 같이 언론 관계 법률을 통하여 언론행위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수반한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배경으로 포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의제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기사 제공을 통하여 특정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제공하면 수용자의 인지와 토론이 이어지고, 이것은 미디어 의제를 공중의 의제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구동한다. 포털의 주요 이슈는 오프라인의 뉴스 소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가 인터넷에 제공된 여러 뉴스들 중에서 자신이 읽을 기사를 선택하며, 그러한 행위는 상당 부분

<표 5> 언론행위자로서의 포털의 법률적 지위

법률	용어	정의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22.) 「신문등의 자유와 가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인터넷뉴스서비스	제2조(정의 5).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정의 6).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기사배열책임자	제2조(정의 9).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언론중재및피해 구제등에관한법률 (2009.1.13. 개정 / 7.13. 시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정의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황용석, "인터넷 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년을 정리하여 재작성.

‘개인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뉴스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선택성(selectivity)이라는 능동적인 행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털의 대규모 뉴스 재매개를 넘어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만의 뉴스 수용의 특징적인 행태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¹²⁾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포털의 뉴스 편집과 포털 뉴스박스의 선정성 위주의 연성기사 범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뉴스 유통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포털의 편집권에 대한 조정과 이에 대한 자정 및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즉 포털은 편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는 시민 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정과 감시를 통해 뉴스 제목 변경을 금지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포털이 의제 설정 권한을 시민사회로부터 승인받는다든가 점에서의 의

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독자위원회, 방송의 시청자 위원회나 옴부즈맨, 기타 다양한 모니터링에 상응하는 네티즌,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 장치가 요청되었다.¹³⁾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5개의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은 뉴스 편집에서 편집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포털의 뉴스 운영과 편집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포털 업계 최초의 자율규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대해 특정 논조나 입장이 아닌 최대한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함께 전달한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한 편집은 지양한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와 네티켓 정착에 노력한다. 넷째, 독자들이 궁금한 뉴스에 대해 항상 가장 신속하게 전달한다. 다섯째, 일방적인 뉴스가 아닌 독자와 항상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

〈표 6〉 포털의 뉴스 편집 원칙

포털	뉴스 편집 원칙
네이버	다양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균형 잡힌 편집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킴 사회적 공익 가치를 존중 이용자와의 쌍방향 소통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과 각 언론사 기사 중 고침보도 모음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처리 개인의 인격권 보호
다음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이롭고 바른 정보 제공 열린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 활성화 소수자 배려 개인의 인격과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음 쌍방향 편집 편집위원회 운영
네이트	[독립성] 기사의 취사선택에 편집규약과 편집가이드 이외의 어떤 외부적 간섭이나 사적 이해관계도 개입시켜서는 안 됨 [진실성] 기사의 진실성 추구를 우선적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실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합성을 중시함 [중립성] 특정 계층과 집단에 편향된 정파적 태도를 지양하고, 특히 제3자의 관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킴 [다양성] 포털뉴스의 공적 기능을 인식하고, 포털 특유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12) 성동규·김인경·김성희·임성원,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인터넷 뉴스의 이용동기와 지각된 뉴스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6년 제50권 5호, 132-159; 안종묵,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네이버 뉴스〉와 〈야후 미디어〉의 속보성, 상호작용성, 관련기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11년 제11권 1호, 187-218.

13) 양삼승,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언론중재위원회, 〈포털저널리즘과 그 실제와 전망 자료집〉, 2005년; 송경재,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 이론〉, 2006년, 29호, 178-208; 이동훈, “뉴스수용자에 대한 포털뉴스의 의제설정효과 연구: 북핵보도 관련 중이신문의 의제전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7년 제51권 3호, 328-357.

향 뉴스를 추구한다. 여섯째, 사회적 관심사에 공론의 광장을 제공한다. 일곱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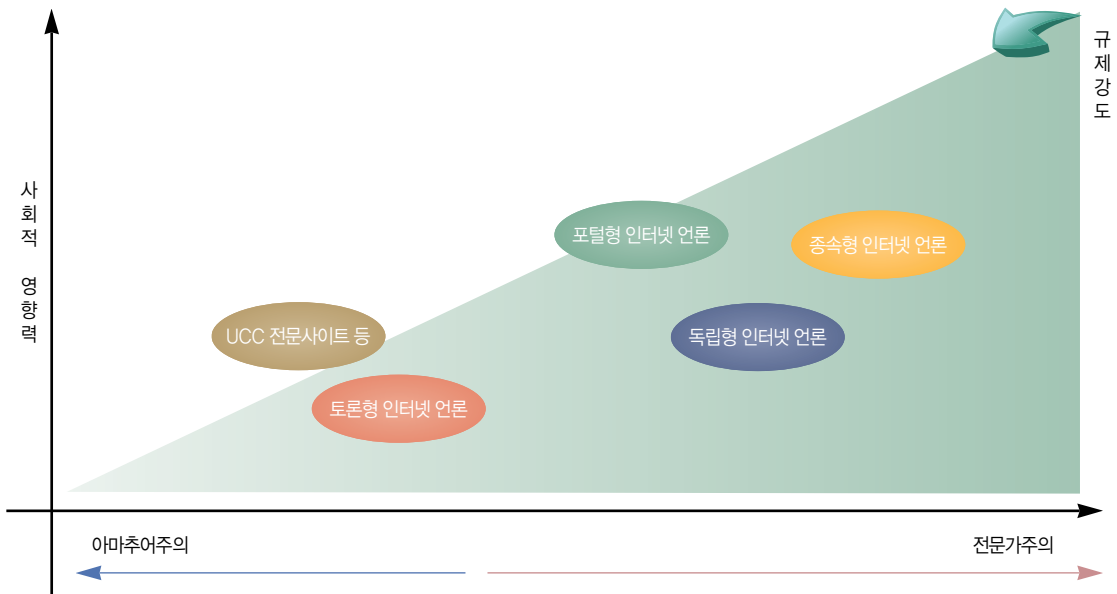
포털은 자체적으로 내부 편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스의 다원성, 프라이버시 보호, 뉴스편집 최소화, 반론권 최대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각 포털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많은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받고 있는 네이버는 자체 편집규약에 의거해서 뉴스를 편집하고 이에 대한 옴부즈맨을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적 장치로는 24시간 뉴스 안내센터 운영, 이용자위원회 운영, 고침기사 제공, 옴부즈맨 고객센터, 댓글 모니터링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용자위원회를 비롯해서 기사 송고 서비스 신청 및 승인 기준, 저작권 문제 처리 방법, 정기간행물 입점, 문제성 기사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재발 방

지, 사전 동의 규정 및 보안, 도메인 운영에 관한 실천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이트는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책임위원회는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규약의 제정, 이용자 권익보호, 모니터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뉴스편집규약과 뉴스편집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¹⁴⁾

2. 인터넷 언론협회의 자율규제

이 절에서는 인터넷 언론의 주요 분야별로 자율규제 제도화 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

[그림 2] 인터넷 언론 유형별 자율규제 모델 예시



* 출처: 장우영·안명규, <세계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비교 고찰을 통한 한국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 EU, 미국의 현황과 한국의 과제, 신문발전위원회, 2007년.

14) 김원용·이동훈, "포털뉴스 관련 제도적 규제 논의의 이론적 고찰", <제7회 디지털미디어와 사회연구 자료집>, 2006년; 최민재,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년; 김위근·박춘식, <한국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년.

〈표 7〉 인터넷 언론 관련 자율협회 현황

형태	분류	예	관련 협회
주류매체 인터넷신문 (오프라인 종속형)	언론사닷컴(분사형태)	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 등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방송사닷컴(분사형태)	KBSI, iMBC, SBSI	-
	신문사/방송사명과 다른 인터넷뉴스사이트 운영	쿠키뉴스, 노컷뉴스	-
독립형 인터넷신문 (온라인 독립형)	시사형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문뉴스형	iNews24,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
	지역형	부천타임즈 등	한국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덱스형(포털) 인터넷 언론	뉴스편집 포털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엠파스 등	인터넷기업협회
비영리재단 인터넷신문	비영리법인(종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
언론 외 자율규제기구	포털 연합 자율규제기구	다음, 아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KTH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출처: 황용석, "인터넷신문의 제도화, 그 후 쟁점과 과제", 《새 언론법과 인터넷신문》, 2005년을 보완하여 재작성.

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자율규제를 통해 형성 단계에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를 통해 공동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윤리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 축적과 억압의 경계를 확정해나가면 행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감시를 허용하고 신뢰를 제공받을 수 있다.¹⁵⁾

2005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신문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한과 책임이 부과되었다. 이런 변화에 조응하여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구책과 함께 관련 협회와 자율규제기구의 공동 규약의 제정과 실천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포털 중심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던 관행은 특히 근래에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2011년 3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윤위')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공표하였고, 같은 해 6월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

회(이하 '윤리심의위')가 발족되어 인터넷신문에 대한 윤리 심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선포하였고, 2012년 2월 1일 자율정책기구는 인신협과 공동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발표하였다.

상기에서 언급한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신협과 신윤위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총 9조 4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기성 신문의 윤리강령과 같은 형태로 실질적인 인터넷신문 규범을 제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언론관을 비롯해서 기자들의 내적 규범, 취재·보도·편집 가이드라인, 피해 구제,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리강령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제재 그리고 시민감시에 의한 피드백 등의 실질 현황과 개선 실적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15) 김영옥, "인터넷 언론의 윤리와 윤리강령", 인터넷신문협회,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윤리 자료집》, 2006년.

〈표 8〉 인터넷신문 윤리 강령

조문	조항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의 책임 언론의 독립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편견과 차별의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제2조 신속성, 객관성, 공정성	성실한 게이트키퍼링 사실과 의견의 구분 균형감각
제3조 이해의 상충	사적 이익추구 금지 이해관계 유의 주식 등 거래의 제한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제4조 어린이 보호	어린이 취재 보도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유괴보도 제한 협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제5조 취재준칙	취재원의 신뢰성 금품·향응 수수 금지 당사자 동의 재난 등 취재 피해자 보호 기타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제6조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 정확한 인용 조사의 신뢰성 표절의 금지 반론권의 보장 이미지 조작의 금지 신원의 보호 자살보도의 신중
제7조 편집준칙	과잉표제의 금지 기사와 광고의 구분 어뷰징(abusing)의 금지 덧글의 관리
제8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직접 대면 즉각적인 수정 반론·정정보도문 게재
제9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언론윤리교육 윤리기구의 설치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12년 2월 1일 자율정책기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으로 언론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 규약'을 제정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이 논의는 자율정책기구와 인터넷기업협회가 자율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5개사(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와 자율정책기구에서 추천한 정책위원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 자율규약을 공표하게 되었다. 자율규약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 다양성, 공정성, 이해상충 배제, 위협의 최소화, 피해구제,

〈표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

조문	조항
제1조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사의 취재와 편집의 자유 옹호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협하는 간섭의 배제
제2조 다양성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 반영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존중
제3조 공정성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다룸 대립적 가치나 사안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 제공
제4조 이해상충 배제	금전적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음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언론사의 취재보도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
제5조 위협의 최소화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함 선정적 기사와 과잉표제의 기사를 제한함
제6조 피해구제	기사배열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시 자료로 활용함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에 대해 그 사실을 표시함
제7조 선택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기사 제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 제한 타사의 기사를 복사한 기사 제한 언론보도와 이용자 의견의 명확한 구분
제8조 저작가치의 보전	기사 원문을 수정하지 않음 제목이나 내용이 변경된 기사를 지체 없이 반영함
제9조 이용자 참여성	이용자의 참여성 존중
제10조 전문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노력

선택권, 저작가치의 보전, 이용자 참여성, 전문성 등에 대한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앞으로 자율규약을 어떻게 투명성 있게 실천해갈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자율규제의 자산으로 활용해갈 것인가가 기대되고 있다.

신윤위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인터넷 신문에도 준용하여 자율규제 규약으로 삼고 있다. 신윤위는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언론사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 관련 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사이트를 심의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강령과 요강은 인터넷 신문 자율규제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규범으로 인식된다. 요강은 구체적으로 언론관을 비롯해서 취지 및 보도 가이드라인, 평론과 편집, 이용자 보호, 공익 수호를 아우르는 규범 체계이다. 다만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윤위와 유관 인터넷 언론 관련 협회의 공감대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급격한 위상 증대에 발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기사의 신뢰성과 광고의 품질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어왔다. 2011년 12월 인신협과 온신협은 이를 위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심의회를 발족한데 이어, 선정적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계와 유관 단체들이 참여한 제정위원회의 수차례의 축조심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16) 온라인미디어뉴스, 2012, 2, 3.

〈표 10〉 신문윤리실천요강

조문	조항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책임 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2조 취재준칙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재난 등 취재 병원 등 취재 전화 취재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선택보도의 금지 답변의 기회 보도자료의 검증 피의사실의 보도
제4조 사법보도준칙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 보호
제6조 보도보류시한	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자살 보도의 신중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9조 평론의 원칙	논설의 정론성 정치적 평론의 자유 반론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표제의 원칙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기사의 정정 관계사진 게재 사진조작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 존중
제12조 사생활 보호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공인의 사생활 보도
제13조 어린이 보호	어린이 취재 보도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유괴보도제한 협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조문	조항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제16조 공익의 정의	국가안전 등 공중안녕 범죄의 폭로 공중의 오도 방지

있어 인터넷신문 발전에 대한 기여,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광고주들의 효과 제고라는 세 측면의 균형을 맞추고,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타파와 청소년 보호를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자 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에 자율적인 노력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양 협회는

향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기구(가칭)’를 발족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해가려 하고 있다.¹⁷⁾

가이드라인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선정적 광고의 제한), 제6조(혐오광고의 제한), 제7조(청소년 보호), 제8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칙(시행일)을 주요 골자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제도는 정초했지만 광고

〈표 11〉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조문	조항
제5조 선정적 광고의 제한	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에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8.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한 내용 9. 신체를 과도하게 성상품화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1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③ 특히, 성관련상품(공산품,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성상담, 성기능강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혐오광고의 제한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 또는 과도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소년 보호	①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소재가 사용된 광고는 성인인증 또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광고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 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7) 데일리안, 2011. 12. 13.

가 언론의 주 수익원이며 또한 업계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및 영세 신문이 난립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실질적인 규제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이 글은 크게 세 측면, 인터넷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한국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언론 자율규제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문의 고찰을 토대로 이 글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정치경제 거버넌스, 탈집중형의 인터넷 구조, 정보기본권 등 이용자 권한의 강화, 국제 표준으로서의 자율규제 시스템 확산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가 거버넌스 프레임에서 구현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규제의 대립항이 아니라 정부 등 제도적 권위를 협력적 기제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과 사회적 이익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는 체계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전략이다.

둘째, 한국의 정보화는 발전국가 맥락에서 물적 토대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 결과 정보화의 파급에 대한 성찰이 등한시되고 정부 주도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을 배태하였다. 이 규제시스템은 강한 법제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으며 내용규제에서 검열 논란을 빈번하게 야기하는 등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 반면 자율규제 역량은 저발전되었는데, 특히 선진국에 비해 이용자 권한의 위축과 시장의 무임승차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가운데 법리적 판단에 의해 법제가 정비되고 인터넷실명제와 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내용규제 방식이 선회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자율기구와 같은 사업자 자율규제 흐름이 조성되면서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구도도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동향

이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인 제도 정비와 자율규제 역량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내용규제 영역에서 인터넷 언론은 가장 진전된 자율규제 규범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크게 신장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전통적인 직업윤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반면 언론계에 새롭게 편입된 포털과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자율규제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협회와 자정기구들이 골격을 갖추면서 기성 언론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규범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기사배열과 신문광고에 대한 자율규약도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서 특히 주목할 분야는 포털이다. 포털은 시장사업자와 언론행위자의 지위를 동시에 점하고 있는데, 양 분야의 자율규제 흐름을 선도함으로써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지만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 성과가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추진받기에는 아직 더 먼 걸음걸이가 남아 있다.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유승관

동명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부 방송영상학과 교수

I. 서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소통촉진적 매체이며 가장 개방적인 시장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표현도 다른 미디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표현이 보호받을 수는 없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특정한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모욕 등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한편, 최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위터가 특정 국가가 요청할 때 특정 글에 대해 차단하기로 결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논란도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넷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은 이제 이론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선스타인(Sunstein, 200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규제’를 택할 것이냐”이다(김유승, 2006 재인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고유한 방식으로 인터넷 규제를 추진하면서 효과적인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모색하는 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적인 규제모델의 모색에 있어서 ‘자율규제’는 효율성, 융통성, 준수의 자발성, 사회적 비용 절감, 변화하는 기술에의 적응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재진, 2009).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 한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현황을 반영하여 둘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을 통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넷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정책의 속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타율규제와 그 한계

인터넷에서의 주요 침해유형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위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럿거스 대학의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의 자살은 본인의 성적체성을 밝히는 친구의 트위터와 유튜브 비디오 때문이었고, 2010년 9월 23일 텍사스주 사이프러스에서는 중학생 애서 브라운이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라고 온·오프라인 불링을 당하다가 집에서 아버지의 총으로 자살한 경우도 있다. 2010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인터넷 조사에 의하면 SNS 사용자 39%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경우 과거 싸이월드의 경험과 같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한상기, 2012).

이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 다양한 입법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린다 산체스의 사이버불링 금지법, 유럽 연합의 2009년 2월 유럽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합의한 ‘Safer Social Networking Principles’, 2011년 4월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으로,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FTC와 상무성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The Commercial Privacy Bill Of Rights, FTC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면서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규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Do Not Track Me Online Act of 2011 (S. 913),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1) 사용자가 가입 전 프라이버시 설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사용자(또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사용자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내에 개인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소셜 네트워킹 프라이버시법(Social Networking Privacy Act)”이라고도 하는 캘리포니

아 상원 법안 242, 인터넷에서 다른 특정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California Senate Bill 1411 on Online Impersonation이 존재하고, 영국의 경우 온라인 코멘트에 대한 새로운 통지와 제거 절차(notice and take down)를 제시하고 잠재적 명예훼손 포스트 옆에 반대 의견을 보이도록 하고, 제거는 반드시 법원의 ‘제거’ 명령을 받은 뒤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제시된 바 있다(한상기, 2012).

다음에서는 타율규제 사례 중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와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속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

1.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글의 경우 검색된 개인 관련정보를 보여주는데 불과한데 구글을 상대로 삭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해당 개인관련정보가 사라질 뿐 인터넷상 개인관련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진 개인관련정보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한 사람의 정보가 아니고, 최소한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일 경우 일방 정보 주체의 요구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인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 있지만, 관계된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등 삭제요구권, 즉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기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문재완, 2011). 검색결과는 인터넷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검색도구를 사용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책규제로 이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은 첫 번째 유형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이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사회적 인격 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전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처리자의 사업노하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잊혀질 권리, 즉 삭제요구권이 인정될 경우 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관련정보지만 역사적 사실의 말소에 해당되어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문재완, 2011).

2.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공간에서 구가될 수 있었던 제1세대 인터넷의 자유는 상대적 익명성, 탈중앙적 구조, 다중접속, 지리적 제한의 탈피, 콘텐츠 식별체계의 부재, 암호도 구 등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탈규제 또는 규제약화에 기인한 인터넷의 자유는 제2세대 인터넷 시대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변화의 근거는 사이버 공간구조의 재구성에 의한 것이다. 각국 정부들이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사이버공간을 규제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Flamming, 1997; 조소영, 2011, p.40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이 규제가능한 공간화 되는 가운데 대두된 문제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이다.

본래 인터넷은 비익명성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거쳐야만 이용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익명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익명성의 보호를 논의할 수 있다. 익명성의 보호 여부에 대해 찬반의 입장은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인터넷상의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점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특정기간 동안 특정이슈에 대한 정보 등의 게시에 대한 실명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 확대는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제44조 제5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동법은 개정되었는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인 제44조의5는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기관 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결국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 사업자가 확대되어 당시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던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 까지도 진행 중이다. 2011년 3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 및 웹사이트' 선정결과를 공시했는데,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가 선정되었다. 이는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115개 웹사이트에 신규 적용대상인 31개 웹사이트가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포털 13개,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51개, 쇼핑/경매 24개, 엔터테인먼트 22개, 인터넷서비스 21개, 생활/레저 6개, 금융 4개, 비즈니스 3개, 교육/정부기관 2개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그러나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규정 적용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고 확대된 적용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 시행은 법리적 측면에서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김기창, 2009; 조소영, 2011 재인용),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 대상 공고에서 특이사항으로 SNS를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파악하여 제외함에 따른 동 조항의 현실적 사문화라는 예견의 목소리도 있다(조소영, 20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최근의 사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의무 강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0헌마47)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9년 12월 30일과 2010년 1월 17일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게시판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해당 규정상의 본인확인제로 인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고, 역시 2009년 12월 30일과 2010년 1월 17일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와이티엔(ytn.co.kr) 사이트 등의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로그인할 때 위 규정들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했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이에 위의 세 사이트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1월 2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0. 7. 8). 이 소송의 주된 쟁점 역시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의 홈즈 판사는 *Abrams v. U.S.* 사건에서 일찍이 "진실에 대한 최고의 덕목은 사상의 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진 사상 그 자체의 힘이다"라고 판시한 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다양성이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정책은 태생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cIntyre* 케이스에서도 표현행위자가 자신의 실제 신분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고 저자로서의 자율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McIntyre v. Ohio Election Commission*, 514 U.S. 334, 341(1995)), 실명강제는 저자에게 논쟁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표현행위자의 신분 공개를 원하는 상대방은 문제된 표현이 불법행위거나, 실명을 비롯한 표현행위자의 신분공개가 발생된 피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즉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에 의해 스스로 합헌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불온통신 위헌 판결,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이버명예훼손제, 사이버모욕제 도입 추진 등으로 입법 추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가장 편의적 입법 중 하나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 법은 다수의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1차적 당사자의 저항을 줄이고 사업자를 통해 표현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표현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여부의 논란에서 벗어나 사적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헌법적 논란에서 우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권현영, 2011).

일반적으로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ISP가 정보제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 제3자인 이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행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다(권현영, 20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소위 ‘포털사이트’ 사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ISP의 책임범위를 확정했는데,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ISP의 작위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1)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ISP가 이러한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3)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ISP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즉,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ISP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게시물의 ‘명백한 불법성’과 ‘명백한 인식 가능성’ 및 ISP의 ‘합리적 통제가능성’을 요구함으로써 ISP의 책임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ISP의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비슷하게 통일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동조 제2항인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일정

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ISP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의무규정과 행정형벌 규정이 있으며, 음란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 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일정한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권현영, 2011 재인용).

한편 행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제44조의2, 3)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각종 위법사항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물품 서류제출요구권(제64조 제1항) 및 자료·실태조사권한부여(동조 제3항), 시정조치 명령권 부여(동조 제4항), 시정조치 공개권한 부여(동조 제5항), 동 행정권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과태료 부과(제76조) 등 다양한 행정적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본인확인제(제44조의5), 스팸제한(제50조)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책임을 ISP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제64조의3) 또는 과태료(제76조)를 부과할 수 있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P2P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제104조),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ISP에 부과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 있어 ISP에 대한 법적책임 구조는 대체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 그 입법의 양태도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강화되어 왔다(권현영, 2011). 나아가서 인터넷 포털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지우는 여러 구

정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논쟁과 위헌성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을 인정하지만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은 결국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음란, 폭력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규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규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 기존 미디어가 독점하던 편집 자율성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통제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용자의 접근성도 높고, 정보유통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이 진정한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부작용과 이에 따른 소송도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요약하면 인터넷에서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 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어 어렵다는 거증 책임의 엄격성 문제,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이 용이하다는 공인과 사인의 구분 문제 등을 고려해 인터넷에서의 면책기준은 기존의 면책 기준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정보 유통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이재진,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침해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국가의 공적규제 또는 타율규제는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자율규제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III. 규제의 개념 및 성격*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요구를 처리하는 형태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제 또는 정치권력 둘째, 시장 또는 금전 또는 교환력 셋째, 사회적 통제 또는 사회화, 가치, 규범에서 파생된 힘 넷째, 전문기술 또는 정보소유에 기초한 힘이다. 모스코(1988)는 위의 네 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시장이 요구 해결의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수단이라면, 사회적 통제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수단이며, 대표성은 광범위한 요구를 수렴하지만, 전문지식은 엄격한 진실테스트를 거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모두가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통치형태인 규제, 경쟁, 전문위원회, 자치주의라고 설명한다(정인숙, 2007).

한편 로카연구소는 민주정부는 3P를 통해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problem),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참여(participation)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인숙, 2007).

이러한 맥락에서 14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1990년대 들어와 행정학을 필두로 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통치 또는 통제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도구로 평가된다. 즉, 정책목표 달성 및 정책결정권을 과거처럼 정부의 독점적 전유물로 간주할 경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려는 과정의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주요 논점은 정치적 제도가 더 이상 거버넌스의 독점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 이하 부분인 규제의 개념 및 성격, 자율규제의 성격 및 방법은 필자의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호, 2009, 51-84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임.

국가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혼합적, 잠정적, 예측불가능한 유동적 특징을 지니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박옥규, 2006; 문상현, 2003, 2005; 정인숙, 2007 재인용). 모스크의 논의와 거버넌스의 개념을 인터넷 이용자의 쌍방향성 및 참여성, 그리고 공간의 개방성과 국제성(무국경성) 등 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해보면, 사업자와 이용자 측면의 시장에 의한 경쟁, 국가에 의한 행정, 입법적 규제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제유형인 자치와 전문위원회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정책의 속성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정책결정의 내용은 가치 배분의 변화가 된다는 점, 정책의 현실적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 행정발전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거쳐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동태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바로 가치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그리고 타율 규제를 강화하는 속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특징이자 속성 중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공익성이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단일한 것으로 보는 실체적 견해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것으로서 공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소산이라 보는 복수성을 가진다고 보는 과정설적 견해가 있다. 한편 전술한 두 시각을 절충한 입장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체도 아니면서 또한 사익간의 타협의 소산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익과 전혀 절연된 별개의 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공익이란 공익과 사익이 겹치는 공통영역이 정책으로 설정될 공익이며, 이 영역이 클수록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면서 다수인의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박동서, 1986).

일반적으로 현대행정국가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통제방법에는 외적통제와 내적통제로 나누어 전자에 보다 많은 비중으로 두었으나 그것은 비교적 행정이 단순하였던 입법국가시대의 이론이고, 고도의 전문성, 복잡성을 지니게 된 현대에는 외적 통제의 효과가 저하되어 불가피 내적 통제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다. 외적통제는 사법통제, 입법통제, 옴부즈만제도 및 민중통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사법통제는 사후조치라는 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이 권위적, 금전적 압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다음으로 민중통제로 민중이란 일반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 이익집단, 여론 및 미디어, 지식인, 국민참여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참여란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성 향상,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참여대상 업무의 선별적 선택과 행정의 분권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극대화가 언제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이나 조직의 내부통제는 원래 행정부서나 조직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직업적인 윤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인터넷에 적용시켜 보면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는 개인들 자신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통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내부통제만 강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그 주요 이유는 책임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참여, 공개에 있으며 이것이 선행되면서 자율성이 신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동서, 1986).

중요한 점은 공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규정하는 문제는 좀 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이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념은 바람직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공동체적 가치나 규범을 우선시 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와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경쟁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다. 양자는 순

수이념형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제도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또는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 출판 등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방송에서는 공동체주의가 강했다.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모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다원성이나 정치적 독립, 질적 수월성 등을 기본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따를 때, 후자는 공공규제를 따를 때 이러한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을 적절히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책 및 규제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윤석민, 2005).

인터넷 미디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공공규제와 자율규제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공통영역인 정책의 영역을 확대개발하기 보다는 공익의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위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의 보호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보호 간의 공통 또는 중첩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목적적인지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IV. 자율규제의 성격 및 방법

1. 자율규제의 성격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자율규제는 비규제(un-regulation) 혹은 탈규제(deregulation)와 다르다. 왜냐하면 자율규제의 구현은 정부의 규제에 완전히 독립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러한 경향은 규제대상이 표현물인 경우 더욱

그렇다(Price & Verhulst, 2000, 황승흠 외, 2004 재인용).

자율규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위임적 자율규제의 경우, 민간영역이 정부가 정의하는 틀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형태다. 반면 승인적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강제적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하는 규제를 강제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를 끌어내는 근본적인 동기는 전술한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능력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규제는 결국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다(황승흠 외, 2004). 즉,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규제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책임 있는 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콘텐츠 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다(황승흠 외, 2004).

일반적으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 실패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시장실패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에도 근거를 제공하지만 먼저 경제적 자율규제와 사회적 자율규제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즉, 경제적 자율규제가 일반적으로 시장 혹은 다른 경제생활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자율규제는 산업화

의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사람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는 경제적 동기 뿐 아니라 미디어 규제가 지니는 사회적 동기를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 문제는 자유와 규제라는 양축의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매우 연관되어 규제(regulation)-탈규제(deregulation)-재규제(re-regulation)의 사이클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web 2.0 기술 하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유통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도 분명 궤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강휘원(2002), 김성태(2009), 황승흠 외(2004) 등은 유사하게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특히 최소한의 정부규제가 이루어지되, 포털업자들이 자율 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만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한 공동규제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적 운영의 책임과 산업계의 자율적 협조, 그리고 이용자의 성숙된 문화의 조화를 통해 인터넷과 포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규제(regulation)라는 강압적, 배타적인 접근에서 관리(management)라는 상호 협조적 패러다임으로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규제 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규제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적 규제모형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정부와 민간영역의 제도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자율적인 공동규제모형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율규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김성태, 2009).

2. 자율규제의 방법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술한 규제의 정책적 목표와 함께 정보이용자, 정보제공자, 국가 및 통제기관의 수준에서 다양한 장치들의 도입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터넷 사업자 행동강령, 자율등급 및 내용선별 시스템, 미디어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강령에 관한 것이다. 행동강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정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자행동강령의 준수를 입법화하는 위임적 자율규제와 사업자행동강령 준수를 입법화하는 대신 사업자행동강령의 준수를 근거로 정부의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강제적 자율규제방법이 가능하다. 사업자 행동강령은 사업자 자율규제의 기초로 사업자들이 법적인 혹은 법적책임 이외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자율규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적인 사업자 행동강령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사업원칙과 법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이용자의 콘텐츠 관련 불만에 대한 처리원칙,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업자들의 명확한 책임의 제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출범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중심의 위계적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책 및 규제 기구와 원활하고도 명확한 업무 공조와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즉 업무공

조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 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심의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내용의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율적인 이중적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기구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운영기준이나 실행규칙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하며,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명문화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 중 정책위원회가 게시물 등에 대한 일반 기준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이 있다. 이를 위해 기구는 소속 회원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고유의 구속력을 가지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나 조치는 국가의 규제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비롯하여 소외된 약자에게도 역할함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직원들의 임명이나 제명 등도 명확한 규정 하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규제의 목적과 이 기구의 설립 및 운영목표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도 현재의 일부 포털사업자 이외에 일반 시민을 포함시키고, 누리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 정치인에 대한 게시물 수천 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삭제되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공인의 임시조치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인에 의한 임시조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2012년 2월 21일 ‘선거관련 인터넷정보서비스 정책결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거후보자들로부터 검색결과 변경 요청, 연관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요청 등을 받아들

이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인터넷 포털연합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 정책은 사법적 제한으로 인한 간극을 채우고, 사법적 통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해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중 가장 성숙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근원적인 자율규제 실현의 방법으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약 88%가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53.2%), 악성댓글(52.7%)이 가장 걱정되고, 욕설 및 비속어 남용(40.7%) 문제를 부작용으로 응답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그리고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생일수록 악플 작성의 경험이 많았고, 악플을 다는 주된 이유는 ‘건전한 반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글에 기분 나빠져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53%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주체로는 대부분(75%)이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유진호, 2012). 따라서 어린 시절의 무분별한 인터넷 중독이나 습관이 이어진다면 인터넷상에서의 욕설과 비방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소외감과 상실감을 채우는 악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초등학교생부터 미디어교육에 인터넷 이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 심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타율적 심의제도는 인사 및 예산집행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서 독립성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심의 제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모니터링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서 수위를 넘을 경우 심의제도를 통해 보완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

신 윤리 심의규정 제11조 제1항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용자나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및 심의 신청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보다는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다양한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 모니터링과 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필터링 등 기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불법저작물 자진삭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포털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기술적인 필터링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강화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다양한 자율규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감독과 사후관리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은 기본조건이다. 이에 더해 집행주체도 언론 및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함께 자율규제 실행단계의 초기인 이용약관(규약)과 행동강령 제정, 집행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임시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법적 수단이자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자율규제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과 제4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삭제 요청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조 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고, "사적검열"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ISP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했다는 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자율규제와 타율규제의 혼합된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신속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법 제15조 제8항). 또한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이러한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는 분쟁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광의의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보조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치이다.

V. 맺는말

지난 2월 인터넷과 SNS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국물녀사건'은 재삼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지하식당에서 된장국물을 들고 돌아서던 주부가 어린이와 충돌해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누리꾼들이 일방적으로 주부의 잘못을 질타했다. 그러나 주부의 해명이 나온 뒤 아이가 화상을 입은 일차적 책임은 공공예절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에게 있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다. 이와 비슷하게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의 경우 역시 처음에 한쪽 주장만 듣고 인터넷에서 허위주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채선당의 경우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일차적으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린 당사자와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분별없고 일방적인 댓글을 올린 많은 누리꾼들의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과 관련된 우리의 산업적, 규제적, 문화적 상황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이나 사법을 통한 정부의 타율규제는 인터넷의 매체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한계가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은 늘었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다양한 민간적 움직임과 포털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인터넷공간이 대중매체로서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순항하기 위한 적응기이자 과도기로 보인다. 단,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위반 시 신상필벌(信賞必罰) 차원의 제재나 규제수단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 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또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이나 아니냐의 문제보다 포털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후에도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자율규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의 방법 이전에 규제방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규제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에 대한 자율규제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이재진, 2009).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는 충분히 매력적 수단이다. 단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기구가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기구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가미되어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경쟁으로 인해 거짓된 정보가 도태되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의 속성상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상치받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자 행동강령의 준수를 입법화하는 위임적 자율규제를 통해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고,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인터넷 언론이나 ISP의 경우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점차 승인적 자율규제와 자발적 자율규제 장치의 개발과 정착을 통해 규제방식을 진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율규제는 국가의 공적규제 또는 타율규제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언론과 ISP에 의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고 정착된다면 설사 과잉금지의 위험성을 내포하더라도 입법·사법적인 타율규제의 강화보다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가능성과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휘원 (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6(3), 185-205.
- 권현영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10권 2호, 83-110.
- 김성태 (2009). 포털의 적절한 범규범적 책임성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공동관리”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2009년 언론학회 주최 특별 세미나. 2009. 3. 20.
-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2호, 1-37.
- 박동서 (1986)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유진호 (2012). ‘인터넷 문화 실태 및 시사점’. 인터넷 윤리학회 토론회. 2012. 2. 8.
- 윤석민 (2005).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진 (2009).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정인숙 (2007). 『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소영 (2011).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10권 2호, 39-8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 한상기 (2012). ‘SNS에서 개인권리 침해 현황 및 과제’. 인터넷 윤리학회 발제문. 2012. 2. 8.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0.7.8.
- 황승흠 · 황성기 · 김지연 · 최승훈 (2004). 『인터넷 자율규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Price, M. & Verhulst, S.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 Sunstein, Cass. (2001). Republic.co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20000&dc=K05020000&boardId=1041&cp=9&boardSeq=30929>

연구논문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국내 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PAC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김학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I.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2011년 11월 무소속 국회의원 강용석이 KBS 개그 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었고(그 후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다),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꿈수다'가 젊은 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 이슈를 비틀어 꼬집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정치 풍자/패러디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를 빗댄 '탄핵 in 추리닝', 멀게는 조선시대 봉산탈춤이나 꼭두각시놀음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틀기와 꼬집기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통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할 리 없을 것이고, 이 지점에서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고찰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2. 풍자/패러디의 법적 함의

풍자나 패러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풍자를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희화적 모습을 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것'¹⁾으로, 패러디를 '넓은 의미로 표현 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²⁾이라고 정의한다면, 풍자와 패러디가 가지는 법적 함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풍자에 패러디

1)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p.487

2) 오승중,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p.329

를 포함하기로 한다). 한편, 풍자는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실제상 생각된 바를 상회하는 외관상의 내용을 부여하는 과장법을 쓴다³⁾는 측면에서 수사적 과장(rhetoric hyperbolic)⁴⁾에 해당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풍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먼저 풍자가 사실진술인지 의견진술인지 여부, 사실진술이라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의견진술이라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지를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가 요건사실/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형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법리적 구성에 있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분석의 틀이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타당하더라도 정치적 풍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II. 사실진술과 의견진술⁵⁾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명시적으로 사실진술과 의견진술을 구별하는 논의를 한 대법원 판결은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이 최초인데, 이 판결은 먼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을 구별하면서, 후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시에 의하면, 결국 문제되는 것은 “의견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일 것인데, 위 판결은 그 판단기준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1)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1-1)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2)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3)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

3)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p.487

4) 신평,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p.337

5) 명예훼손에 관한 전통적 영미법 이론(명예훼손적 표현을 일응 허위라고 추정하고 나아가 발표의 행위자가 명예훼손적 의미를 전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 발표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 발표의 결과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의도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같은 점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문제로 되지 않는 이른바 엄격책임은 진다)이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 S. 254, 84 S. Ct. 710, 11 L. Ed. 2d 686 (1964)을 기점으로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 S. 323 ; 94 S. Ct. 2997 ; 41 L. Ed. 2d 789 (1974)에 이르러 의견특권론(opinion rule)이 수립되었고, Milc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 S. 1 (1990)에서 의견특권론이 수정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신평,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pp.171~249 참조

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그 후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도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설치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취했고, 그 뒤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명예훼손의 발단은 피고 한겨레신문사가 1997년 4월 1일자 일간지에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제주 4·3 사건 당시 정부에 의해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기사였다. 여기서 피고는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는데, 최근 총무처 산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나온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도 전인 1948년 11월 17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결국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 없이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였

다. 이를 두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는 일제시대의 칙령의 효력에 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해석문제이고 이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이러한 의견의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계엄이 불법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 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따로 밝히고 있는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즉 ‘계엄법이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1월 17일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그 속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에 관한 기사 부분은 그 전체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기사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사 전체가 아니라 그 구절구절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 및 혼합의견과 순수의견의 차이에 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⁷⁾

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전합)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

6) 김재협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 pp.140~141

7) 김재협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 pp.141~143

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오피·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보도는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보도를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

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이 일의적이지 아니함을 인정한 다음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결합된 경우에 사실적 주장의 허위 여부로 판단할 경우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부당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풍자의 경우 보도와 달리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장을 인정하고 있다.

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한편,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 왜곡에 대해서 비록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6. 잠정적인 결론

판결들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 표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의견 표명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지만,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이 일의적이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결합된 경우에 사실적 주장의 허위 여부로 판단할 경우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부당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할 수 있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또는 다소간의) 과장으로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의 왜곡으로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한계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며 이는 다시 사실진술과 의견진술의 경계 영역의 문제로 회귀함은 물론 사실진술과 의견진술이 결합된 경우에 사실진술을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의미가 부당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풍자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시사만평에 대하여 대법원은 “IMF 당시 고위 경제 관료였던 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 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기고하여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피해자들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구를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그들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바 있는데⁹⁾, 풍자란 기본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이고 패러디에 있어 대상이 된 인물 또는 사건은 풍자 작가의 사상을 희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풍자에 담긴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⁹⁾

Ⅲ.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아래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공정한 비판이야말로 사회발전의 불가결한 요소인데 적시되는 사실이 진실이고 또한 그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됨을 감안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인데, 이 규정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

다카29 판결에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라고 판시하여 민사에서도 위 형법조항이 유추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⁰⁾

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 표현된 사실의 세부에 있어서도 진실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판결은 시의원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보도 자료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①시의원 이 여교사를

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빚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만평의 경우에도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상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 등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만평이 게재된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등이 실제로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보도도 없어서 이 사건 각 만평을 기고한 피고 감삼택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무렵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된 여론 및 정치권의 동향과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만평과 같은 정치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 밖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만평에 등장한 인물들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만평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특감이 거론되는 한편,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황 출국장을 빌려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원고 등이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9) 프랑스 파키원은 코미디언 귀 베도(Guy Bedos)가 정치인 르펜(J. M. Le Pen)에 대한 풍자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 형식이 풍자나 유머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반론을 전제한 뒤 ‘선진 민주사회에 있어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하여는 폭넓은 비판과 풍자, 해학과 유머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 코미디언이 정치적인 인물에 대하여 악의적인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풍자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귀 베도의 정치적 풍자와 익살이 다소 신중성을 결한 잘못은 있으나, 대중을 즐겁게 하여 주는 그의 직업적 성격과 그 코미디 프로의 성격에 비추어 유머리스트로서의 재능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범위 내의 예술적 표현행위로 보여 지고, 표현의 자유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된 바 있는데(김재협, 코미디 정치 풍자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문과 방송 2002. 2월호 pp.74~75) 이는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그 사실이 풍자라는 형식안에서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소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풍자를 풍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한위수,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제44기 특별연수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pp.39~40

아가씨라고 부르며 차를 달라고 한 것, ②교감 책상에 앉아 있는 시의원에겐 항의한 교사에게 일부 시의원이 고함을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 ③교육청이 시의원의 추궁을 받고 교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등인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교감 책상에 앉아 있던 시의원을 잘못 거명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세부 묘사에 불과할 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도 자료의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인쇄물 중 ‘조합의 전(前)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의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¹¹⁾

다. 공공의 이익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국가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경제적인 사실, 공인의 공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2.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먼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 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 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진실하다고 믿을 자료에 대하여,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610 판결은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

11) 한위수,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제44기 특별연수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pp.40~41

다24207 판결은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데 이어,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수차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¹²⁾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는 보도매체가 무엇인가(일간신문인가 월간잡지인가), 보도된 기사가 어떠한 것인가(신속성을 요하는 보도 기사인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기획기사인가),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등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¹³⁾

3. 잠정적 결론

풍자를 의견 표현¹⁴⁾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한들, 개그콘서트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오락 프로그램이고,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취재권은 보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그콘서트 연출자나 출연자에게 보도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실 확인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나꼼수의 경우 팟캐스트라는 형태의 미디어로서 기존의 언론사와 같은 취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사실 확인 의무는 대폭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풍자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풍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신속성을 요하는 일간신문이나 포털 등과 같이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개그콘서트나 팟캐스트를(언론으로 관념지우더라도)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독자와 같은 수준의 사실 확인 의무만을 부담지울 수 있을 뿐이다.

IV. 정치적 의사표명으로서의 풍자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병합)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풍자는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병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

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13) 한위수,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제44기 특별연수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pp.49~50

14) 앞서 본 바와 같이 풍자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표현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하므로(특히 정치적 풍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풍자에 담긴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작가의 의견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

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 풍자를 내용으로 하는 개그콘서트나 나꼼수는 일반적인 풍자에

15)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견표명의 경우에 대해, 미국의 공적 인물론의 핵심은 New York Times 판결의 실시내용에서도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고도의 공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특히 차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념은 당연히 우리의 명예훼손법리의 전개에도 발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판례준칙의 선도가 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 판례들을 살펴봐도 공인 또는 공적 단체라는 이유로 "공공성"의 인정을 쉽게 한 것 외에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배려를 한 바를 찾기 어렵고 특히 위법성조각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한 예는 우리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들이 "상당성" 여부를 기사의 성격과 내용, 보도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한 공적 표현의 경우 발언자의 조사의무의 정도를 낮추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정말 보호받아야 마땅한 강한 공적 표현, 예를 들어 중요한 정치적 논쟁에 대한 발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 등을 차등 보호함에 있어서 위 판례준칙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김경환,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법연구 2009, 사법연수원, pp.138~140)

서 요구되는 독자로서의 사실 확인 의무보다 한층 완화된 사실 확인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하지는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치 풍자에 있어서 일반적인 풍자보다 완화된 사실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¹⁵⁾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정치 풍자에 있어서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풍자와 동일한 법리로 법적 책임을 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정치 풍자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 또는 정치적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라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라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라는 이유로 또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면책특권(헌법 제44, 45조 및 제8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반면 그들의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선거에 의한 심판

도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일회적인 점,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상시적인 여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그러한 여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이외에 감성적이고 즉자적인 부분 또한 포함되는 점,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험하는 법익의 박탈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점, 그러한 모멸적인 비난을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무기대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⁶⁾¹⁷⁾

2.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적 배경

여기서 우리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New York Times rule이 성립될 당시인 1964년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적 풍자와 관련한 법적 규율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

16)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재학생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며 일반 국민들에게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었던 갑이 과거 학내문제로 대학에서 출교 및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와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승소확정판결과 인용결정을 받은 후 복학하여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이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갑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프로필을 공개한 것과 그 전후에 한 발언 내용 및 당시의 여러 외부적 정황 사실에 비추어 을의 발언과 행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갑이 대학에서 출교 및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과정 및 결과는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당시에는 물론 현재에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기사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에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은 갑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반소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이나 '정치적 수준이 한심하다'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 및 '입만 열면 망언'이라는 표현은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갑의 을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이지, 그 내용이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되었다거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의 뇌구조를 형상화한 피켓의 경우 일반 국민의 보통의 주의로 위와 같은 피켓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에 사용된 어휘, 표현방식,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을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을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인식에는 해당하나 위 발언 등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에 비추어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을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갑이 을을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하였다.

17)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18822은 이른바 '최장집 교수 사상 검증 논쟁'과 관련하여 월간 '말,지가'가 기사를 통하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보인 태도가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 또는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라는 등으로 비판한 사안인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1심 판결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전제사실에 터잡은 순수한 의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 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식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한 데 반하여, 위 항소심 판결들은 위 표현들이 의견표명으로서 사상검증 파문의 와중에서 나온 수시적 과정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고 동시에 따로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김경환,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2009, p.155)

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유의미할 것이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잡지 〈뉴욕커〉를 중심으로 1960년대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뉴저널리즘은 여러모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다. 이 저널리즘은 무엇보다도 객관적 보도라는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본 입장에 썩기를 박는다. 한마디로 뉴저널리즘은 사실성을 희석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허구성에 무게를 싣는 저널리즘을 말한다.¹⁸⁾

그렇다면 논픽션 소설이나 뉴저널리즘 또는 신 뉴저널리즘이 하필이면 왜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갑자기 생겨났을까? 여기에는 여러 까닭이 있을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담론’에 대한 불신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식적 담론이란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대학이나 언론기관 같은 사회의 모든 제도와 관련된 표현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 담론은 그런대로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당한 뒤부터 크게 사정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실책과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그리고 월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미국 국민들은 환상과 낙관주의의 꿈에서 점차 깨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두로 표현하건 문자로 기록하건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전파나 영상으로 전달하건 매스 미디어를 통한 모든 공식적 담론을 불신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역사의 내용을 대중 매체가 조작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한다면 사실적인 것과 비사실적인 것, 사실

과 허구, 저널리즘과 픽션 사이의 구별이란 이제 더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마련이다.¹⁹⁾

3. 잠정적 결론

바로 이러한 미국의 시대적·역사적 배경 아래서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관한 명예훼손적 허위표현의 경우는 ‘현실적 악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나오게 된 것은 아닐까?²⁰⁾ 그리고 (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설리번 판결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필시 최근 수년간 공적 대화를 저속하게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컬럼비아대학교와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수정헌법 1조를 연구하는 빈센트 블라시(Vincent Blasi)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활짝 열려 있고 사실을 건성으로 다루는 오늘날의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은 설리번의 결과다” 미국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공적 인물에 관해 사실상 그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²¹⁾²²⁾

더구나 위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의견을 좇을 때 사실/의견의 경계를 일의적으로 획정하기 곤란함을 전제로 보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치 풍자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은 의견 표명을 위한 소재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 전체를 의견 표명이라고 볼 여지는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8)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p.92~93

19)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97

20)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2006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대학교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법원은 무엇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가? 판사들은 신문을 읽으며, 저명한 헌법학 교수인 폴 프로인드(Paul Freund)가 말했듯이,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그 시대의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앤서니 루이스 지음/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10, p.19)

21) 앤서니 루이스 지음/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10, p.97

22) 강한 공적 표현(여기에는 정치 풍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의 완화에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언론중재 2009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pp.46~61 참조

V. 맺으며

풍자, 특히 정치 풍자는 인간이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일반인들의 정치에 대한 염원과 비판을 담아내고 있고, 그것이 비록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소수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집중(이는 권력의 본성이기도 하다)되는 제도가 존속하는 한(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주어진 현실이다) 정치 풍자 역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저급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제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추상화된 정치제도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정치인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정치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치 풍자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자가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서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죄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진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풍자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라는 법 자체의 목적(23)에 비추어 보

더라도 모순일뿐더러, 선거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이 시사만평, 기사, 보도, 사설 등의 형태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풍자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규범적으로는 애초에 의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풍자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사실 확인 의무를 완화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제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선거 국면에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보통 의견의 성격을 갖게 되고 헌법상 의견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후보자 상호간이나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는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하여 상대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고 특정후보자를 지지하여 주도록 설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후보자를 비판,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 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사일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정치가는 상이한 정견의 지속적인 대결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신랄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신을 세우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되고 자기 인격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노출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 범죄에 있어서의 표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에 비추어 피침해이익과의 법익형량에 의해 후자의 법익이 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선거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 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차형근

차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I. 들어가며

대법원 판례는 초상권을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한다.¹⁾ 이러한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하급심판례에 의하여 인정받아 오다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이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면서 인격권의 하나로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특정 인격을 인식하는데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시각적 방법은 다른 인식방법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있

는데다가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확대 및 피사체를 촬영하는 기술의 발달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초상이 작성, 공표될지 모른다는 문제를 일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지하철 내에서의 노인과 의 다툼, 애완견을 둘러싼 싸움이나 식당에서 임산부를 둘러싼 폭행 문제 등에서 특정 인격의 초상은 아무런 여과 없이 인터넷 등에 노출되었고 두고두고 재생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되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초상의 촬영·공표가 불법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초상권이라는 인격권과 알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였을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각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초상을 촬영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경우를 가르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초상의 촬영이나 배포가 허용되는지를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 관계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법이나 학설은 초상에 대한 촬영이나 배포가 허용되는 경우를 거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당사자의 동의이다.²⁾

2005년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9년 개정 시에도 제5조 제2항이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동의’는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되어 왔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형법상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는 오로지 법익주체의 자발적 처분권에만 맡겨져 있는 법익과 당해 법익주체의 자율적 처분권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익으로 나누는 것이 다수설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이 없기에 양해라고도 부르며 후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법익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그러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만 있을 뿐 여전히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고 그러한 법익침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승낙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되어야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로 나누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³⁾

위와 같은 형법상의 설명을 원용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의미하며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인격권의 속성에서 연유되는 권원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란 민법상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등의 경우이다. 즉 ①의 사무능력자의 동의, ②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2) 예컨대 독일 미술저작권법은 제22조에서 초상의 배포, 전시는 초상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초상본인이 촬영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제22조의 예외로서(현 대사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초상, 總 경이나 기타 장소에서 초상본인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 ③ 초상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집회, 행렬 기타 유사한 사건의 장면, 總 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초상으로서 그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 이익에 이바지 하는 초상을 거론하고 있고 제24조는 사법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도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3) 김성돈, 형법총론 2판, skkup 293~308면 참조

위반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 ③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 ④피해자의 동의가 선의가 아니고 이를 가해자가 인식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동의, ⑤동의 조건의 중요 부분에 악의나 착오가 있는 동의, ⑥사기나 강박에 의한 동의 등이다.

동의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는가 여부는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동의자의 동기만을 고려하여 사회상규 위배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초상권침해의 문제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동의의 문제를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판례에 나타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동의⁴⁾

1. 동의의 주체

(1) 동의를 할 수 있는 동의의 주체를 밝히기 위하여는 먼저 동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살펴 보아야 한다.⁵⁾ 초상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으로서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고도의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동의는 자기 초상의 촬영 또는 공개행위에 대한 단순한 허락이어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설(사실행위설)이 있다. 이 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초상사용에 동의하여야 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비하여 초상을 민법총칙상의 법률행위적 의사표시로 보아 행위능력이 필요하다는 설(법률행위설)

이 있다. 이는 초상의 사용이 일상적인 법적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동의는 허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대가를 예정하고 계약이 행하여지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의 이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법익침해의 의미와 정도를 인식하고 찬성과 거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자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기본권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기본권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이 정한 미성년자의 나이보다 적은 나이를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는 기준나이로 삼고 있다. 이른바 아이돌스타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상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동의는 피촬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인격권의 속성 중 하나가 자기결정권이다. 초상권도 인격권의 하나이므로 초상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위로 공개할 것이냐는 해당 인격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화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초상을 피촬영자의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직장상사의 동의만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초상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127] 참조).

(3)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초상의 작성·공표에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음이 원칙이다.⁶⁾ 그러나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인데도 동의 없이도 촬영·공표

4) 본문에서 언급된 판례 []는 논문 뒤의 〈판례〉 리스트를 참조할 것

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408면, 536면 각 참조

6) 판례 [6], [11], [13], [14], [22], [24], [28], [29], [33], [36], [40], [43], [50], [52], [53], [55], [56], [64], [66], [83], [89], [92], [94], [96], [99], [107], [108], [118], [119], [120], [122], [131], [133], [134], [135], [136], [137], [141] 참조

7) 판례 [37], [58], [65], [68], [84], [101], [111], [115], [127], [129], [130], [132], [138] 참조

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다.⁷⁾

- ① 판례 [58], [84], [115] :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 ② 판례 [37], [68] :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로 이익형량의 결과 동의 없이 초상권 사용이 허가된 경우이다.
- ③ 판례 [66], [94] : [68]의 1심과 3심의 판결인데 [68]의 경우와 달리 이익형량의 결과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을 위법한 경우로 보았다.⁸⁾
- ④ 판례 [65], [101], [111], [127], [129] : 모두 보도를 위하여 초상을 사용한 경우인데 보도내용과의 관련성이 있고 초상권자의 초상에 중점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다. 이는 독일 미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서 초상 본인이 부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경우이다.
- ⑤ 판례 [130], [132], [138]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한 경우이다.

(4) 피촬영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인격적 측면으로서의 초상권 사용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초상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부각시킨 경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피촬영자인 연예인 등이 공인이라 하여도 본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⁹⁾ 초상권의 인격권적 측면을 이용할 경우는 공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사실과 함께 게재하는 것을 금하는 등 그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판례 [1]은 초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초상권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울산그룹의 대표인 신청인의 초상만이 사용되었으면 유명한 재벌기업의 총수

로서 공인이었기 때문에 판례 [17]과 같이 가치분이 각되었을 것이나 공인이라 볼 수 없는 신청인의 처 및 다른 임원들의 초상이 함께 사용되었기에 가치분이 인용된 사례이다. 판례 [14]에서도 재벌의 처에 대하여는 공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판례 [5]는 유명연예인이 당시 권력자이었던 전○○씨와 연애설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이전에 유·무료로 배포하였던 사진영상집의 피해자 초상을 사용한 경우이다. 다른 경우에 사용되었다면 유명연예인이 공인인데다 영상집이 홍보용으로 배포된 점을 고려하여 동의를 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인의 초상이라 하여도 그 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9]는 사건 당시 노○○, 최○○ 등 특정 연예인을 빗대어 유머가 생성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의 사례이다. 사건 당사자인 노○○은 예명이 아닌 본명일뿐더러 결혼을 하지 않은 처지였는데 유머집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신체와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있었기에 판매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판례 [16]에서도 가족사진 중에서 가족들의 사진부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공인의 가족이라 하여 공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판례 [17]은 김○○의 평전에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인데 유명기업의 총수로서 공인이므로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35]는 유명야구선수 박○○ 평전의 경우로 판례 [17]과 동일하다.

판례 [18]과 [20]은 통일운동가 임○○의 결혼식 장면을 호화웨딩드레스와 관련된 보도에 삽입하여 방영한 경우인데 결혼식에 사진기자들이 참석하여 촬영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식 장면을 공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호화웨

8) 한위수, 신체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미국의 법리와 판례, 판례실무연구9 (사법발전재단), 229~248면. 엄동섭, 증거모집을 위한 사진촬영과 초상권 -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9 (사법발전재단), 249~277면.

9) 판례 [3], [4], [7], [12], [16], [21], [23], [25], [26], [27], [30], [39], [46], [48], [59], [61], [69], [70], [72], [75], [76], [77], [81], [100], [102], [103], [104], [109], [112], [113], [114] 참조

딩드레스라는 보도에 삽입하여 방영했다면 피촬영자인 임○○이 호화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였다는 추측을 하게 되어 피촬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 결국 고등법원판결이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판례 [21]은 모델만화가 문제된 사안인데 만화의 내용이 모델의 명예를 훼손한 바가 없다고 보아 초상권 침해를 부인한 사안이다. 판례 [22]는 윤○○씨의 막내동생을 딸로서 추측케 하는 기사에 윤○○씨의 초상을 사용한 경우이다. 예전에 배우였다고 하여도 오랜기간동안 주부로서 사람들의 관심사 밖에 있었으므로 공인을 부인한 경우이다. 판례 [31]은 정치가인 김대중의 사진을 김일성 및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김대중이 공산당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로서 공인의 초상권사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51]은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피촬영자의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경우이다. 범죄보도에 있어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 한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촬영자가 초상 그대로의 방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사례이다.

판례 [54], [57]은 유명기자인 조○○의 초상을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와 함께 게재한 경우로서 공인의 초상권 사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판례 [56]은 판례 [1], [141]과 유사한 경우로 유명 연예인의 약혼자라고 하여 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학 졸업 앨범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위법이라고 본 경우이다.

판례 [63]은 유명정치인 권○○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사진기사는 2002년 3월 5일 아침경부터 원고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원고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대기하였으나, 원고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층의 정면이 커튼으로 내부를 가리고 있어 촬영이 용이하지 아

니하자, 같은 날 18:30경 위 아파트 뒷면에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동 5층 계단에 올라가 마침 원고가 아파트의 거실 식탁에서 그의 측근인 소외 조○○, 강○○, 김○○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장면을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들은 최고위원 경선 당시 원고의 정치자금지원 논란에 대하여 취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02. 3. 6.자 조선일보 제1면 톱기사로서 “권○○씨 정치자금 살포 돈반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큰 제목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이라는 소제목 하에 위 김○○의 선거자금 고백의 파문이 여야의 정치자금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바로 그 하단에 피고 사진기사가 위와 같이 촬영한 가로 15.5cm×세로 10cm 크기의 사진에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가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현재 집권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상임고문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또한 그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택 거실을 사적 장소로 보지 않았고 공인의 사생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따라 노출이 허용된다고 본 부분이다. 외국

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하여도 사적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는 금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¹⁰⁾

판례 [82]는 유명 벤처기업인도 공인이며 본인의 생활이어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인의 수인한도 내로 보아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방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판례 [86]은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연예인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사진을 패러디한 경우로서 인터넷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한 바 없다 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판례 [87]은 배○○ 등 유명연예인의 밀랍인형을 동의 없이 제작하여 유료로 전시하려고 한 경우로서 밀랍인형의 완성도가 떨어져 유명인들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전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경우이다.

판례 [90]과 [106]은 공인의 범위에 대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공인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판시한 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판례의 영향을 받아 공직자(public officer)와 공적인물(public figure)을 공인으로 보고 있으나 전면적 공적 인물(unlimited public figure) 뿐만이 아니라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도 공인으로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판례 [90]은 제한적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목사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동의 없는 초상권 사용을 허용하였다. 판례 [123]도 판례 [90]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판례 [93]은 국회의원을 공인을 본 경우이다. 판례 [110]도 원고가 유명기업인인 경우로 판례 [17] 등과 동 취지이다. 초상권 침해부분은 기각되었다. 판례 [116]과 [125]는 유명인으로 공인에 해당되는 남편의 초상을 명예훼손적 기사에 게재한 것이 처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경우이다. 판례 [124]는 ○○ 중앙회의 대표자는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의 공표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이다. 판례 [139]의 사실관계는 초상권 관련 판례 중 해당 침해의

내용과 같은 바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과 결부되어 초상권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초상권 사용의 한계를 보여 준 경우이다.

2. 동의의 방법

(1) 동의를 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한다. 초상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는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거시하고 있다.

(2)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동의로 보아야 한다. 판례 [129]는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례는 설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요금을 징수하는 장면을 3초간 방영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할 당시 원고가 자신의 근무장면이 촬영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촬영거부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0) 송석윤, 공적인물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79면 부터 88면 참조

판례 [8]은 초등학생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고 진정이 된 교사를 인터뷰한 경우로서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동의로 본 경우이다. 또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판례는 임○○씨의 결혼식 장면과 관련된 [18]이 있으나 이는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었다(판례 [20] 참조).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행범의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를 인터뷰한 경우(판례 [44]의 경우)에서 1심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보았으나 고등법원에서는 결론이 바뀌었다. (판례 [53])

신인텔런트였던 피촬영자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이를 사용한 ‘○○한복’의 광고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당시 피촬영자가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신인이었는데도 피고가 한복을 제공하고 광고주가 된 경위와 피고측이 촬영당일 원고의 매니저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하게 된 사정, 이 사건 잡지에 실린 광고와 한복사진과의 연관성 정도와 원고가 이 사건 광고가 나온 이후에 취하였던 태도 및 잡지사의 규모나 잡지의 인지도, 여기에 사회통념상 연예계의 신인이라면 오히려 인기연예인과는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많은 기회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는 점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였다. (판례 [45] 참조)

판례 [95]는 피촬영자가 남산순환도로에서 차 머플러에 불꽃을 튀기면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방영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인데 묵시적 동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의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보인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는 판례 [130]에서 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130]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

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각 점, 즉 ①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의 집회·시위의 주도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피촬영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③ 당해 사진 또는 그에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위와 같은 점이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 등과 종합하면 각 위와 같은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이 피촬영자에 의하여 주장·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보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반드시 그 지점의 소유나 관리형태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넓게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집회·시위가 사적 영역이면서도 통상은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성격상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일반인들이 통상은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132] [138]도 같은 취지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초상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추정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배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종전에 유명 탤런트였으나 현재는 가정주부인 신청인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추정적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초상을 사용한 책자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동 신청을 기각한 판례 [85]가 추정적 동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동意的 범위

(1) 초상권과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보이는 판례 [34]는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는 위법이다”라고 하여 한 번 동의를 받았다 하여도 그 동의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등으로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뒤 판례 [80]은 위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하여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

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意的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동意的에 초상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그 사용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는 위법이다. 카탈로그용 사진을 월간잡지에 사용한 경우(판례 [3], [4]), 여성 백과사전에 수록되기로 한 사진을 신년홍보물에 사용한 경우(판례 [10]), DVD에 사용하기로 한 초상을 영상화보집에 사용한 경우(판례 [12], [99]),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그 프로그램이 비디오테이프 제작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경우(판례 [41], [47]), 요가비디오 상의 초상을 홍보용 비디오에 사용한 경우(판례 [72]), 뮤직비디오용 촬영 초상을 DVD에 사용한 경우(판례 [102], [103]), 호스피스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방송이라고 하였으나 소극적 안락사에 인터뷰를 사용한 경우(판례 [105]), 월간 영화 잡지용 제공 초상을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판례 [112]) 등이 있다.

동意的에 계약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그 제약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¹¹⁾ 동意的에 신분노출방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위법이다.¹²⁾ 동의를 하였을 당시 피촬영자의 예상과는 달리 사용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의 경우로 본다.¹³⁾

— 유명 연예인이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을 발간하여 유·무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한 바 있는데 동 영상집 속의 초상을 명예훼손 내용과 같이 사용한 경우

11) 판례 [7], [30], [46], [75], [77], [88], [109], [113], [117] 참조

12) 판례 [19], [34], [38], [71], [91], [97], [121], [140], [142] 참조

13) 판례 [5], [20], [31], [42], [49], [78], [80], [82], [118], [126], [128] 참조

-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데 목시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촬영자가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라고 본 경우
- 공인인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인 듯한 인상을 부여한 경우
- 연비항상에 실효가 있는 제조업자를 연비항상에 실효가 없는 업자들과 함께 출연시키면서 연비항상장치가 과장광고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중위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소대장인 원고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애쓴 듯한 인상을 풍기는 장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경우
- ○○선교회에서 취재한 동영상 중 원고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입을 크게 벌려 ○○○목사로부터 불을 받아들인다는 장면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의 취재현장란에 취재기사와 함께 25초 분량으로 게재한 경우
-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짧게 편집하여 보험모집인들의 교육 등에 사용한 경우
- 신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진 원고가 소속 회사와의 갈등 등을 제보, 인터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세대 경영인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경우로서 사생활이어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 반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 결혼정보업체 대표와의 교제 중 상습폭행문제 등 동의 없이 방영되었거나 동의 후 방영되었어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재차 방영되었음을

이유로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경우

- 당초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원고가 한번에 35명까지 사권 경력이 있는 ‘바람둥이’ 라는 표현의 자막과 함께 피촬영자의 영상을 사용한 경우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장면을 담은 피촬영자들의 영상을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3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한 경우
- (3) 판례 [94]에서와 같이 동의에 대한(범위도 포함) 입증책임은 초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있다.
- (4) 동의는 각각의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를 하는 시점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는데도 어느 용도로 사용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95] 참조)

추정적 동의의 반대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원고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 [51]의 경우이다.

Ⅲ. 글을 맺으며

특정인의 초상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그 특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영상 등 초상의 확보 및 배포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현실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하면 피촬영자가 공인인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초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피촬영자가 사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초상을 작성·사용할 수 있으나 피촬영자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여한 경우나 보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도내용과 관련성이 있고 초상권자의 초상이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의

없이도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경우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동의는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되거나 동의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아니고 동의를 할 때에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상이 사용돼서도 아니된다. 동의는 동의권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괄적인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	820721-서울 82가합9263 결정	서적	재벌 (공인)	울산그룹의 시작부터 몰락까지의 과정을 그리 면서 책의 뒤표지에 울산그룹 대표 및 임원과 대표의 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판매 및 발행 금지 가처분 인정	
2	880511-서울 87가합6175 판결	광고 전단	모델 (공인)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은 원고의 사진을 광고 삽화로 일러스트레이션하였으나 일러스트레이 션한 광고삽화가 원고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 도가 아닌 경우	무동의	기각	피해자 특정
3	880909-서울 87가합6032 판결	월간 잡지 광고	탈런트 (공인)	유명탈런트와 의류 카탈로그용 모델계약을 체 결한 후 촬영을 마친 카탈로그용 사진을 무단 으로 월간잡지에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800만원	
4	890123-서울 고등 88나 38770 판결	월간 잡지 광고	탈런트 (공인)	[3] 참조	동의 범위 초과	400만원	[3]의 2심
5	890725-서울 88가합31161 판결	여성 월간 잡지	연예인 (공인)	유명연예인이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을 발간하여 유·무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한 바 있는데 동 영상집 속의 초상을 명예훼손 내용과 같이 사용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1000만원 사과문 게재	2심은 1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쌍방향초기각 쌍방 상고허가 신청기각
6	900125-동부 89가합13064 판결	연하 카드	승마 협회 홍보 이사 (사인)	서울올림픽의 성화봉송행사에서 찍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연하카드 포 지에 사용한 경우	무동의	500만원	
7	910725-서울 90가합76280 판결	방송 광고	모델 (공인)	모델인 원고와의 커피광고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텔레비전에 광고를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1,684,782원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례
8	920220-남부 89가합13975 판결	방송	교사 (사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넷 내용이 방송될 것을 예상하고 교사가 대담에 응한 경우	동의	기각	초상권을 프라이버시티권의 하나로 본 판결
9	920516-서울 92가44613 확정	서적	연예인 (공인)	유명연예인의 이름과 캐리커처를 사용하여 유 머집을 출판한 경우	무동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정	
10	920922-서울 92가합12051 판결	포스터 · 현수막	모델 (사인)	여성백과사전에 게재된 사진을 은행 신년홍보 물(포스터, 현수막)에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500만원	
11	930708-서울 92가단57989 판결	주간지	대학생 들 (사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들이 이화여자대학 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사치와 과소비 또는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중간에 위 사 진을 삽입한 경우	무동의	각 3000만원	사진은 이경률외 1인 '상업사진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에 게재
12	930908-서울 93가44057 결정	영상 화보집	연예인 들 (공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계약 체결 후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이용하여 DVD를 제작하면서 별도의 영상화보집을 제작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6000만원 · 원고2,3 각 1000만원	퍼블리시티권
13	940330-서울 93나31886 판결	주간지	대학생 들 (사인)	[11] 참조	무동의	각 2000만원	[11]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4	941027-서울 94가합36754 판결	월간 잡지	사인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일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향락적 생활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 중간에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면서 젊은 남자가 업소 선전용 명함을 제시하는 것을 스쳐보며 웃는 피촬영자들의 사진을 삽입한 경우	무동의	원고1,2 각 1000만원 · 원고3 800만원	
15	950613-인천 94가합16812 판결	(지상파) 방송	사인	실리콘팩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피해자가 주위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 이어 「PD 수첩」에 인터뷰를 한 사안으로 방송사는 동 조건을 갖추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동의	기각	
16	950623-서울 96가합9230 판결	서적	해물리 학자 (공인)	'소설 이휘소' 및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모델인 이휘소의 상속인들이 소설의 저자, 발행인들을 상대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무동의	일부 인정 (가족사전에서 가족들의 초상권 인정)	퍼블리시티권
17	950927-서울 95가합3438 판결	서적	재벌 (공인)	김○○의 일대기를 책으로 내면서 표지에 사진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기각	사진은 이경률외인 전계 논문 참조
18	951124-남부 95가합13495 판결	방송	임○○ (공인)	공인인 피촬영자의 결혼식 장면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 장면에서의 피촬영자의 초상'은 묵시적으로 공표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으로 공표가 승낙된 위 결혼식 장면에서의 피촬영자의 초상을 고가의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사안에 반영하였다 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묵시적 동의	기각 (명예훼손은 인정)	초상권을 명예권의 중속적인 권리로 본 사례
19	960202-서울 고등 95나 25819 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의 신분노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습을 비록 그림자처리 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눈, 코, 입모양과 머리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음성은 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동의 범위 초과	5000만원	[15]의 2심
20	960618-서울 고등 96나1282 판결	방송	임○○ (공인)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데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촬영자가 공인이라 하여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라고 본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1000만원	[18]의 2심
21	960906-서울 95가합72771 판결	만화	카레 이서 (공인)	카레이서인 원고의 성명과 유사한 이름의 주인공을 등장시킨 '아스팔트의 사나이'라는 만화에서 원고를 기업비밀물의 조연으로 비하시켰다고 주장한 사안	무동의	기각	모델만화 퍼블리시티권 서울고등법원 1997.7.22선고 96나41016 판결은 항소기각
22	970226-서울 96가합31227 판결	여성잡지	예전 배우 (사인)와 부모	공인이 아닌 피촬영자들이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한 경우로서 배우 윤○○씨의 동생을 딸로 추측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0만원 · 원고2,3 각 250만원	서울고등법원 1997.9.30선고 97나4240 판결은 1심과 내용이 같으나 손해배상액만 원고1에게 4000만원 원고2,3에게 각 1000만원 인정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23	970801-서울 97가합16508 판결	광고	탤런트 (공인)	임꺽정 배역으로 출연하였던 원고 얼굴의 특 징적 부분들을 모던 스키치로 재현한 인물화 를 위장약의 전면광고에 삽입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퍼블리시티권
24	970807-남부 97가합8022 판결	(지상파) 방송	대학생 들 (사인)	신입생 환영회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 는 조건부 승낙에 위반하여 '공포의 통과의 례' 라는 제목으로 피촬영자들이 퇴폐적인 유 흥에 몰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촬영 하고 일부 피촬영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 서의 대화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무동의	원고1 600만원 · 원고2 200만원 · 원고3,4 각 400만원	초상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제1항으로 봄
25	970829-서부 94가합13831 판결	상품	외국 배우 (공인)	제임스 단의 유족이 허락 없이 제임스 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과 허락 없이 의복에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사안	무동의	가각	퍼블리시티권
26	971107-서울 97가합20064 판결	사진집	대중 가수 (공인)	월간잡지의 별책부록으로 원고들의 방송 출연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제작 하여 본책과 함께 판매한 경우	무동의	원고1 7000만원 · 원고2 내지6 각 3000만원	
27	971121-서울 97가합5560 판결	상품	외국 배우 (공인)	[25]의 원고가 유동업체를 상대로 표장사용금 지와 표장 및 인쇄설비의 폐기를 청구한 소송 에서 [25]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퍼블리시 티권에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권리에 기한 사후 존속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무동의	가각	퍼블리시티권
28	980113-서울 고등 97나 43156 판결	방송	사인	[24] 참조	동의 범위 초과, 무동의	항소가각	[24]의 2심
29	980227-동부 97가합15881 판결	월간잡지	사인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사진사용에 동의한 적 이 없음에도 '내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이 유' 라는 제목의 자유기고가 글 중에 피촬영자 들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500만원 · 원고2 2000만원	원고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1998.11.3선고로 기각됨
30	980327-서울 고등 97나 29686 판결	월간잡지	탤런트 (공인)	탤런트인 원고가 변비치료제의 영상광고물에 모델로서 출연하면서 보수만 정하였을 뿐 계 약기간이나 광고매체를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 서 계약기간은 1년이 상례임을 이유로 그 이 후의 광고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4250만원	1심은 서울지방법원 1997.6.4선고 96가합66353 판결
31	980701-서울 97가합88220 판결	월간잡지	김대중 (공인)	공인인 원고의 사진을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원고가 공산주의자인 듯한 인상을 부여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4000만원	※관련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10.10선고 97가합2923 판결
32	980709-서울 고등 97나 47790 판결	방송	사인	연비항상에 실효가 있는 제조업자를 연비항상 에 실효가 없는 업자들과 함께 출연시키면서 연 비항상장치가 과장광고인 것처럼 보도한 사안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심은 1997.8.28 선고 96가합 12130판결
33	980819-서울 97가합96337 판결	월간잡지	대학 교수 (사인)	인터뷰를 거절하였음에도 유명작가인 처와의 만남 등을 기사화하면서 대학교 졸업앨범에 나와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한 경우	무동의	25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34	980904- 대법원 96다 11327 판결	방송	사인	[15] 참조	동의 범위 초과	상고기각	[15]의 3심
35	980929-서울 고등 98라35 결정	서적, 브로 마이드	박○○ (공인)	박○○ 평전을 출판하면서 서적의 내표지 및 내용부분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기각	1심은 동부지원 1998. 1. 15 선고 97가합3478결정. 사진은 이경률외 1인 전계논문참조
36	981103-서울 고등 98나 18557 판결	월간잡지	사인	[29] 참조	무동의	원고들 항소기각	[29]의 2심
37	990316-남부 99가합451 결정	사진촬영	교인 (사인)	○○교회와 관련된 사건으로 장래의 법적 분 쟁에 대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동의 없 이 피촬영자들이 PD와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 한 경우지만 촬영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무동의	기각	서울고등법원 1999.5.20선고 99라108 결정은 1심을 그대로 인용
38	990402-남부 98가합16587 판결	방송	일용 노동자 (사인)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전직 인신매매 조직원인 것처럼 촬영,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3000만원 원고2 2000만원	
39	990430-서울 98가합79858 판결	포스터 등	사인	세계적인 헤어드레서인 비달사순의 이름과 초 상을 간판 등에 사용한 경우로서 퍼블리시티 권을 주장한 경우	무동의	표장 사용 금지 등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00.2.2선고 99나26339 판결
40	990514-서울 98가단779 판결	방송	카드 회사 영입 소장 (사인)	음주운전자의 촬영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누구 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을 한 경우	부동의	2000만원	
41	991001-서울 99가단51980 판결	비디오 테이프 판매	택시 운전 기사 (사인)	도주차량 검거 모범운전자를 인터뷰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일요스페셜 프로그램에 방영하 였는데 영상사업단이 이를 비디오테이프로 제 작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경우	동의	기각	
42	991008- 대법원	방송	제조 업자 (사인)	[32] 참조	예상과 달리 사용	상고기각	[32]의 3심
43	991022-서울 고등 99나 49001 판결	방송	카드 회사 영입 소장 (사인)	[40] 참조	부동의	1500만원	[40]의 2심
44	991119-서부 99가합4672 판결	신문, 방송	대학 교수 (사인)	음대교수가 음대지망생에게 과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무단촬영으로 취재 보도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묵시적 동의	초상권 부분은 기각	
45	000316-서울 99가합46206 판결	잡지	탤런트 (공인)	원고가 모델이 되어 촬영한 사진 가운데 일부 가 피고측의 광고용 사진으로 사용된 경우 원 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무단으 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묵시적 동의	기각	
46	000516-서울 고등 99나 30444 판결	포장용기	탤런트 (공인)	광고계약기간 종료 후에 계속하여 원고의 상 반신 사진이 인쇄된 포장용기를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심은 서울지법 1999.5.18선고 98가합69363 판결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상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47	000704-서울 99나83698 판결	비디오 테이프 판매	택시 운전 기사 (사인)	[41] 참조	동의 범위 초과	200만원	[41]의2심 초상권 의 근거를 [24]와 동일하게 봄
48	000714-서울 99가합84901 판결	상품 등	공인	제임스 닐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았다는 원 고가 제임스 닐의 성명 등을 이용한 상표를 등록한 피고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 한 사안	무동의	가각	
49	000823-서울 99가합30768 판결	방송, 신문	육군 중사 (사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중위 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소대장인 원고가 자신 의 알리바이를 위해 애쓴 듯한 인상을 풍기는 장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7000만원 등	
50	001011-서울 99가합109817 판결	방송, 신문 (문화 방송 등)	사인	유명연예인과 성교 중인 피촬영자의 등쪽 상 반신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전환하여 게재한 경우	무동의	피고1 2억 · 피고2,3 6000만원 · 피고4 1억2천만원	
51	001011-서울 2000가합 4673 판결	방송	법원 사무관 (공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원고의 초상을 방송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승인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피고1 500만원 · 피고2 200만원	
52	001025-동부 2000가단 21636 판결	방송	식당 종업원 (사인)	물러카메라로 원고의 얼굴과 모습을 촬영 보 도함으로써 원고의 직업이 식당종업원임을 알 게한 경우	부동의	100만원	
53	010111-서울 고등99나 66474 판결	방송	대학 교수 (사인)	유명대학 음대교수가 개인교습장을 차려놓고 레슨을 하는 장면을 경찰관과 동행하여 촬영, 보도하였으나 출입이나 인터뷰, 촬영에 동의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무동의	1000만원	[44]의 2심
54	010112-서부 98가합14245 판결	월간잡지	조00 (공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기 사와 함께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55	011010-서울 2001가합1961 판결	방송	사인	「공개수배 사건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피촬 영자를 여권사기, 밀매 등의 중대피의자로 보 도하면서 피촬영자의 초상을 방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000만원 · 원고2 (원고1의 처) 각 400만원 · 원고3,4 (원고1의 자) 각 2000만원	
56	011219-서울 2001가합 8399 판결	신문	연예인 (공인) · 사인	스포츠서울 1면 우측에 「신○○ '신부' 공개」 라는 제목 하에 피촬영자의 동의도 없이 대학 졸업앨범 사진을 싣고 36면에 「신○○ 올봄 결혼」이라는 제목과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 신 9살 연하 윤○○씨와」라는 소제목 아래에 기사를 게재한 경우	무동의	원고1 1000만원 · 원고2 2000만원	
57	020131-서울 고등 2001나 9689 판결	월간잡지	유명 기자 (공인)	[54] 참조	무동의	항소가각	프라이버시권을 명예권의 중된 권리로 봄 [54]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58	020328-서울 고등 2001나 48486 판결	방송	의사 (사인)	인터뷰 당시 촬영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원고 의 허반신만 나오는 화면이 사용된 경우	부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기각	1심은 서울지법 2001.7.25선고 2000가합51563 판결 초상권 주장은 2심에서 추가 병합됨
59	020416-서울 고등 2002나 42061 판결	상품 등	공인	실정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퍼블리시티 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48] 참조	무동의	기각	[48]의 2심
60	020822-서울 고등 2001나 66293 판결	방송	사인	[55] 참조	무동의	항소기각	[55]의 2심
61	020830-성남 2001가합 5032 판결	상품, 홍보물	프로 골퍼 (공인)	프로골퍼와 체결한 홍보모델 사용권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프로골퍼의 사진 등이 게재된 광고를 계 속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초상권을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초상 권(퍼블리시티권) 으로 구별
62	021011-남부 2001가합 14741 판결	방송	사인	A방송사 제작진이 짝동동호회 회원들에게 동 호회를 소개한다고 인터뷰를 하였는데 막상 방송에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인터뷰를 편집하여 방송하는 바람에 회원들의 초상권이 침해당한 경우로 보아 이를 B방송사가 문제 삼은 경우	동의	기각	
63	021206-서울 2002가합 13985 판결	신문	정치인 (공인)	공인인 정치인이 자택거실에서 측근들과 회의 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나 공인의 수인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64	030110- 대법원2002다 56628판결	사진촬영	변호사 (사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거부를 당하였다는 억 지주장을 대비하기 위한 증거수집차 사진촬영 을 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의	상고기각	2심은서울지법 2002.9.4선고 2001나66139 판결
65	030110-서울 2001가합 38642 판결	신문 방송	지휘자 (사인)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부분이 포함된 지휘장면을 배경화면 으로 사기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원고의 모습이 포함된 연주회 실황장면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고의 모습이 화면으로 방영되 는 부분은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 한 정도에 그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66	030213-서울 2002가단 234723 판결	사진 (증거자료 제출)	사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를 증거로 제 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로 원고들을 촬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1,2 각 200만원 · 원고3 100만원	몰래카메라
67	030704-서울 2002가합 78777 판결	방송, 신문, 잡지	연예인 (공인)	연예인인 원고가 강간처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공인의 수인한도 내로 보아 초상권침해를 부인한 경우	무동의	기각	인터뷰
68	040206-서울 2003나13979 판결	사진	사인	[66] 참조	무동의	원고 청구기각	[66]의 2심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상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69	040212-동부 2002가합 3370 판결	홈쇼핑 광고	연예인 (공인)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허브차 훈'이라는 상표를 붙인 좌훈기 광고를 홈쇼핑 방송에 무단 방영한 행위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근거나 배상액의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무동의	기각	
70	040408-서부 2003가합 2796 판결	케이블 방송	연예인 (공인)	동의 없이 촬영한 초상을 제품광고 영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는 경우	무동의	기각	
71	040520-남부 2003가합 8979 판결	방송	사인들	신분노출방지를 조건으로 가정폭력사례의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신분노출방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 1 1000만원 · 원고2 (자녀) 300만원 · 원고3,4 (자녀) 각 700만원 · 원고7 (인권 상담소 직원) 100만원	
72	040804-남부 2004가합 1285 판결	홈쇼핑 방송	미스 코리아 (공인)	피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요가복 및 요가매트의 판매를 위하여 신청인의 요가동작을 촬영한 요가비디오를 끼워팔면서 홍보용 비디오 및 이미지사진을 방영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방송 및 판매금지	
73	041001-서울 2002가단 254093 판결	인터넷 사이트	탤런트 (공인)	드라마 속 주인공인 원고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통신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할 상품으로 등록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무동의	5000만원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하여 배척
74	041012-서울 고등 2003나 55334 판결	방송, 신문, 잡지	연예인 (공인)	[67] 참조	무동의	피고5,6 1000만원 (연대) · 피고7 3000만원	[67]의 2심 초상권 침해부분은 공인임을 이유로 부정됨
75	041210-서울 2004가합 16025 판결	광고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인 (공인)	화장품재고를 저가로 양도하면서 방문판매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제작책자를 함께 넘겨준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500만원	화장품광고사진은 이경을 와인 전계논문참조
76	050113-수원 2004가단 20834 판결	포스터, 플래카드	연예인 (공인)	의상협찬을 요청한 영화제작사가 보내준 화보 촬영사진을 이용하여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제작한 후 교복판매점에 공급한 경우로서 원고는 화보촬영사진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동의	5000만원	퍼블리시티권 인정
77	050622-서울 고등 2005나 9168 판결	광고책자 등	연예인 (공인)	[75] 참조	동의 범위 초과	항소기각	[75]의 2심 퍼블리시티권 인정
78	050830-북부 2004가단 59130 판결	인터넷 동영상	목사 또는 전도사	○○선교회에서 취제한 동영상 중 원고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입을 크게 벌려 ○○○목사로부터 불을 받아들인다는 장면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의 취재현장란에 취재기사와 함께 25초 분량으로 게재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각 25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79	050907-서울 2004가합 84950 판결	신문 광고 등	연극 배우 (공인)	무단으로 신문광고 등에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3000만원	
80	050922-남부 2005가합 2739 판결	비디오 테이프, 도서	사인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짧게 편집하여 보험모집인들의 교육 등에 사용한 경우. ①동의 후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②동의의 본래 의미,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③동의시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하에서 공표하는 경우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한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각 500만원	
81	050927-서울 2004가단 235324 판결	인터넷 콘텐츠	연예인 (공인)	원고의 캐릭터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제 공하면서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유행시킨 유행어를 동시에 게재하여 놓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경우	무동의	500만원	퍼블리시티권
82	051007-서울 2004가합 46767 판결	방송	사업가 (공인)	신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진 원고가 소속 회사와의 갈등 등을 제보, 인터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세대 경영인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경우로서 사생활이에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 다소 달리 제작 방영되어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예상과 달리 사용	기각	
83	051228-서울 2005가합 19052 판결	공중파 방송	사인	[108] 참조	무동의	2000만원	
84	060120-서울 2005가합 26111 판결	방송	사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하여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하였으나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과 직원들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85	060306-서울 2006가합651 판결	잡지, 광고	종전텔 런트 (사인)	게재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신청인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매등급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추정적 동의	기각	
86	060512-서울 2004가단 292358 판결	인터넷	연예인 (공인)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원고와 관련하여 죄수복의 원고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원고의 패러디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로서 삭제요청이 없었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무동의	기각	
87	060614-서울 고등 2006라 229 결정	밀랍인형	연예인 (공인)	동의 없이 밀랍인형을 만들었으나 완성도가 떨어져 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에도 밀랍인형들을 유료전시하려고 한 경우	무동의	가처분 인용	1심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2.1 선고 2005가합4461 결정
88	060614-성남 2006가합 2595 판결	월드폰 카드 광고	연예인 (공인)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광고를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게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광고 제작물에 대한 편집권(카피문구나 하트모양의 삽입)이 초상권이나 실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은 사례	동의 범위 초과	기각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89	060707-동부 2005가합 14302 판결	방송	사인	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생아를 촬영 하였는데 세쌍둥이 미숙아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었던 경우	무동의	각 300만원	
90	060714-대구 2005가소 449079 판결	인터넷 잡지	목사 (공인)	지역사회의 공인인 원고의 초상을 동의 없이 기사에 게재한 경우이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91	060720-안산 2005가단 16980 판결	방송	사인	신문노출방지 약속 하에 무면허 의료업자에 의한 코 부위 파라핀주사 후유증으로 고생하 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눈을 포함한 그 윗부 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코를 비롯한 그 아래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원고가 특정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700만원	
92	060921-서부 2006가소 63201 판결	인터넷 사이트	사인	피고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중 에로틱 분류에 원고의 사진이 무단게재되었음에도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동의	2000만원	
93	061013-서울 2006가합 71378 판결	방송	국회 의원 (공인)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 상임위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 방송한 경우	무동의	기각	물라카메라
94	061013- 대법원 2004다 16280 판결	사진(증거 자료제출)	사인	[66] 참조	무동의	파기환송	[66]의 3심
95	061109-남부 2005가합 18444 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가 남산 순환도로에서 차 머플러에 불꽃을 튀기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터뷰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피촬 영자가 어느 방송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지 못하였기에 초상 사용을 목적으로 동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동의 범위 초과	500만원	
96	061129-서울 2005가단 286190 판결	방송	의사 (사인)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MRSA 슈퍼박테리아 병원감염위험'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피촬영자 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피촬영자의 상반신 이 촬영된 사진 포함)을 촬영, 방영한 경우	무동의	1000만원	
97	061129-서울 2006가합 3629 판결	방송	사인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 여 드라마에 삽입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예정 한 방법과 달리 연주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 는 상태로 방송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각 200만원	
98	061221-동부 2006가합 6780 판결	문화 상품권	소설가 (공인)	이○○의 초상 등이 포함된 문화상품권을 발 행한 경우로서 퍼블리시티권은 사후 50년간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무동의	기각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 인정
99	070110-남부 2006가단 56477 판결	방송	사인	국제결혼 정보업체가 주선한 국제가정송년회 모임에서 원고들이 무대로 나와 노래하며 춤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36 초간 방영한 경우	무동의	원고들 각 100만원 (초상권부분)	
100	070119-서울 2006가단 250396 판결	인터넷 사이트	연예인 (공인)	원고 코미디언들이 출연 중인 코너를 원고들의 허락 없이 모방하여 이벤트 화면을 제작한 경우	무동의	800만원	
101	070124-서울 2006가합 24129 판결	월간 잡지	예전 탤런트 (사인)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동의 하에 촬영 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무동의	기각	단, 프라이버시권 침해는인정 [85]의 관련판결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02	070125-서울 20057합 101005 판결	DVD	연예인 들 (공인)	원고들은 뮤직비디오 촬영계약만을 하였는데 피고가 뮤직비디오를 DVD로 제작하여 검과 함께 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기각 · 원고2 1000만원 · 원고3 3000만원 · 원고4,5 각 2000만원	
103	070125-서울 20057합 111590 판결	DVD	연예인 (공인)	[102]와 동일	동의 범위 초과	1000만원	
104	070131-서울	영상 화보집	연예인 (공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동의 없이 영상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 6000만원 · 원고2,3 각 1000만원	
105	070504-남부 20067합 9577 판결	방송	사인	호스피스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방송이라는 설명에 인터뷰에 응하였으나 소극적 안락사 문제에 원고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1000만원	인터뷰
106	070621-대구 2006나11409 판결	인터넷 잡지	목사 (공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사례	무동의	항소기각	[90]의 2심
107	070725-서울 고등 2006나 80294 판결	방송	사인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사례	무동의	피고3,4 700만원 · 피고2,6 400만원	[89]의 2심
108	070919-서울 고등 2006나 106066 판결	방송	사인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방영한 경우	무동의	2000만원	[83]의 2심
109	071024-서울 20067합 63759 판결	포장지등	연예인 (공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치킨제품 포장지 전면 우상단에 원고의 인물캐릭터를 계속 사용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2000만원	
110	071101-남부 20067합 14784 판결	방송	사업가 (공인)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역대로비를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원고의 사진 및 회사의 동영상을 사용한 경우	무동의	각 5000만원	초상권침해 부분은 부정됨
111	071106-남부 20077합 13887 판결	방송	노조 조합장 (사인)	원고의 초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며 출처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경우	무동의	기각	
112	071114-서울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	연예인 들 (공인)	월간 영화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공된 원고들의 사진이 일본 내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유료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게 한 경우	동의 범위 초과	원고1,2,3,5 각 1500만원 · 원고4 500만원 · 원고6 100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대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13	071128-서울 2007가합 2393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	운동 선수 (공인)	피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초상과 함께 광고문구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활동비 지급기간에 한하여서만 무상으로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1500만원	
114	071212-서울 2007가합 22441 판결	인터넷 사이트	연예인 들 (공인)	연예인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무동의	사용금지, 각 100만원	
115	071227-남부 2007가합9017 판결	방송	사인	몰래카메라로 비만치료와 관련된 피촬영자의 초상을 촬영하였으나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	무동의	기각	몰래카메라
116	080104-서울 2006가단 448780 판결	신문	유명인 (공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남편 초상을 게재한 것이 처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본 사례	무동의	원고1 100만원 · 원고2 200만원 · 원고3 300만원	
117	080326-서울 2007가합 48542 판결	광고	연예인 (공인)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었던 경우	동의 범위 초과	기각	
118	080326-서울 2007가단 40534 판결	방송	사인	결혼정보업체 대표와의 교체 중 상습폭행문제가 동의 없이 방영되었거나 동의 후 방영되었어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재차 방영되었음을 이유로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사례	무동의 · 예상과 달리 사용	600만원	피해자의 특정
119	080403-남부 2007가합 14910 판결	방송	사인	명의를 도용당하여 렌터카가 빌려졌는데 그 차량이 범행도구로 사용된 경우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뉴스에서 공개수배한 경우	무동의	원고1 2000만원 · 원고2,3,4(가족) 각 500만원	공개수배
120	080515-남부 2007가합 23884판결	방송	사인	피촬영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하는 방송을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만원 · 원고2,3 (부모) 각 200만원 · 원고4,5,6 (형제) 각 100만원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12.24 선고 2008나55247 판결은 1심을 그대로 원용 공개수배
121	080527-서울 고등 2007나 11059 판결	방송	사인	[97] 참조	동의 범위 초과	각 1300만원	[97]의 2심
122	080724-남부 2007가합 21642	방송		[134] 참조	무동의	1100만원	피해자 특정
123	081031-남부 2008가합 2419 판결	방송	목사 (공인)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등 동의 없이 방영하였으나 교회의 대표자는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124	081205-남부 2008가합 12799 판결	신문 (주간지)	○○ 중앙회 대표 (공인)	○○중앙회의 경영행태와 관련된 기사 중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중앙회의 대표자로서 공적인물이므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25	090114-서울 2008나4093 판결	신문	유명인 (공인)	[116] 참조	무동의	원고1 200만원 · 원고2,3 각 400만원	[116]의 2심
126	090421-서부 2007가단 83352 판결	케이블 방송	사인	당초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원고가 한번에 35 명까지 사건 경력이 있는 바람둥이라는 표현의 자막과 함께 피촬영자의 영상을 사용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300만원	
127	090512-서울 고등 2009나 2155 판결	방송	사인	전화여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피촬영자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상사의 동의만 으로 촬영, 방영하였으나 이익형량의 결과 촬 영, 방영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무동의	기각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08.12.3선고 2008가단140565 판결 3심은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41038 판결로 상고기각
128	090519-남부 2009가합311 판결	방송	사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면을 담은 피촬영자들의 영상을 폐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3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방송한 경우	예상과 달리 사용	원고1 100만원 · 원고2,3 각 200만원	
129	090922-부산 2009가단 23128 판결	방송	사인	설연휴 교통상황을 보도하던 중 피촬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요금징수장면을 촬영, 보도 하였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무동의	기각	목적적 동의여부
130	091004-서울 2009가합 41071 판결	인터넷 신문	사인	OO교회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에 관한 기사에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 였지만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무동의	기각	집회시 초상권 침 해가 되는 경우를 세가지로 분류함
131	091124-동부 2008가단 62527 판결	방송	변호사 (사인)	취재나 인터뷰 거부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실 명과 초상을 화면에 나타난 상태에서 수입료 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경우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동의	500만원	
132	100127-서울 2009가합 81994 판결	신문	사인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관련 기사 중 시청앞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한 군중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피촬영자가 의경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배포된 경우로서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본 경우	무동의	기각	집회의 경우
133	100326-부산 2009나48455 판결	방송	사인	[129] 참조	무동의	100만원	[129]의 2심
134	100701-서울 고등 2009나 102614 판결	방송	사인	“파마값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용가 격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 액의 미용료를 요구한 사례로 원고의 미용실 을 소개한 경우	무동의	100만원	
135	100908-성남 2010가단 13045	방송	사인	[137] 참조	무동의	원고1 200만원 · 원고2,3 각 50만원	

순번	사건번호	침해의 태양	침해의 대상	침해의내용	동의 여부	판결	비고
136	100909-서울 2010나23226 판결	방송	사인	의사가 보관중이었던 피촬영자의 코 사진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사로 하여금 촬영하여 방영되도록 한 경우	무동의	항소기각	1심 서울중앙지법 2010.5.14선고 2009가소322524 판결(600만원)
137	101104-성남 2010가합1018 판결	방송	어린이 들 (사인)	이단교회로 자목되는 교회의 어린이 합창단원 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방송사와 의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경우	무동의	각 700만원	
138	101125-서울 2009가단 300209 판결	신문	사인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 코 리아나호텔 주변을 지나면서 집회 찬·반을 다투는 여자들을 말리다가 사진에 찍힌 경우	무동의	기각	집회의 자유
139	101229-서울 2010가합 79614 판결	인터넷 신문	연예인 (공인)	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게재하면서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독립신문 VS 김○○>라는 배너를 두 고 그 아래 김○○의 사진을 배치한 화면을 둔 경우	부동의	피고1 1500만원 · 피고2 800만원	
140	110401- 의정부 2010 가단15011 판결	방송	사인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주는 브로커의 존재를 알리는데 신변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음성을 변조 하지 아니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초상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동의 범위 초과	300만원	
141	111012-서울 2011가합 44370 판결	인터넷 신문	사인	재벌가의 재혼사실과 관련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을 기사화하면서 동의 없이 원고들 및 가 족의 사진을 촬영, 공표한 경우	무동의	원고1 5000만원 · 원고2 1000만원	
142	111020- 의정부 2011 나15011 판결	방송	사인	[140] 참조	동의 범위 초과	700만원	[140]의 2심

판결동향

2011년도
국내 언론관계 판결 동향

PAC

2011년도 국내 언론관계 판결 동향

조원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I. 서론

2011년에 선고되었던 국내 언론관계 판결례 중에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관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과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가장 주목된다. 그 중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하였다. 위 두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으로는 ① 언론보도에서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 경우의 입증책임, ② 후속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의 소멸, ③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확정, ④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기준, 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등이 있다. 그 중 ①, ②, ④의 쟁점을 둘러싸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었는데, 특히 ①의 쟁점은 그 동안 언론사건에서 한번도 다루어진 바가 없는 새로운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도 있는

데,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보도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 ①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한 사실의 적시와 그 내용의 확정, ② 진실성 및 상당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그 근거, ③ 공적 인물의 초상권 침해, ④ 종교 비판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 ⑤ 공적 인물과 사생활 침해의 한계, ⑥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보도한 경우의 상당성 판단, ⑦ 제보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례들이 있다. 아래에서 차례로 소개하기로 한다.

II. MBC PD수첩 사건(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0도 17237 판결)

1. 언론보도에서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 경우 입증책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이 과학적 사실이고, 그 진위 여부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관한 MBC PD수첩 보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영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특정 유전자가 MM형인 것으로 밝혀진 점을 근거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경우 94%가 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과학이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실험과 같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검증 가능한 확실한 지식보다는 불확실한 가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라고까지 한다. 실제로 보도가치가 있고 보도가 되는 것은 불확실한 과학적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과학적 사실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을 경우 이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정정보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을 정립 및 운용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①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②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③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④ 해당 분야에

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⑤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되, 언론사가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위가 증명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단지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관찰, 측정, 가설 설정, 실험, 분석 등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사가 보도내용의 근거로 삼은 과학적 증거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다수의견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어진 판단 부분에서 다수의견과 명백히 견해를 달리한다. 즉,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이라는 면에서 허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

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다수의견은 문제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특정 유전자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본 반면, 소수의견은 보도의 근거가 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과학적 증거의 다섯 가지 신뢰성 판단기준은 1993년 미국연방대법원이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이른바 도버트(Daubert) 기준¹⁾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버트 기준의 경우 그 다섯 가지 요인들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판사는 이들 요인들을 종합하여 감정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언론보도에서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2. 후속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의 소멸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원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라거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²⁾ 여기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후속보도란 어떤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다수의견은 후속보도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 및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등의 면에서 원 보도와 균형을 이루어 일반의 시청자가 원 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원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래 판례의 취지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단순히 후속보도에서 정정을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소수의견은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사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고, 특히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정부정책의 감시·비판과 같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억제하

1)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590 (1993)

- ① 감정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는지 여부
- ② 감정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이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았고 출판되었는지 여부
- ③ 감정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의 오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 ④ 감정기술 운용을 통제하는 표준의 존재와 지속 여부
- ⑤ 감정에 적용된 이론이나 기술이 해당 과학기술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1986. 12. 13. 선고 86다카818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는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하였다면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정정보도라는 구제 수단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원 보도의 내용이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여 특히 공적 사안에 관한 고발성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후속보도는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후속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 보도에 대한 비판을 다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점, 원 보도가 취재화면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보도를 한 반면, 후속보도에서는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프로그램의 끝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에 주목하여 후속보도만으로는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비록 영국에서의 예라고는 하나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이상,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

아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확정

정정보도 청구요건에 관한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³⁾ 이와 같은 해석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면서 나아가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언론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일부 보도에서 원고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원고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조건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장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는 해당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정보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4.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기준

명예훼손은 흔히 사실적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의견표명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의견표명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표명은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에서 경멸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의견의 형태를 띠었지만 명예훼손적 사실의 주장을 암시하거나 함축적으로 내포하는 이른바 혼합의견(mixed opinion)에서 양자의 구분이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를 기준으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⁴⁾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본 반면, 소수의견은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라고 보았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의견은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는 원 보도와 반론보도청구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원 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 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과,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미흡하다거나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일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므로 원 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다.

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5.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 동안 확립된 판례이다.⁵⁾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 2010도17237 판결은 담당PD 등 피고인들이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줄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 광우병 위협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적인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III. 불법 감청·녹음 내용의 보도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

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신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불법 감청·녹음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후자의 경우 공개 또는 누설하는 정보가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임을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06도8839호 전원합의체 사건의 다수의견은 ①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개되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② 언론기관이 그 정보를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통신비밀의 침해가 보도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④ 보도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야 하고,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의 예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들고 있다. 넷째 요건에서의 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불법 감청·녹음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

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들고 있다. 다수의견은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그 결과물의 공개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감청·녹음 등의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①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언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② 언론기관이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 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보도의 방법에서도 공적 관심사항의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그 상당성을 잃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신문사 사주 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한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고,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그 자료를 입수하여 방송에서 공개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을 고발하기 위하여 도청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대

화로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보도할 이익이 통신의 비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기업의 정치자금 지원이나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등의 지원 문제는 비록 8년 전의 일이라도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보도 내용도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은 공적 인물들로 보도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도의 이익이 통신의 비밀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09도14442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는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IV. 여타 판결례

1.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한 사실의 적시와 그 내용의 확정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

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한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⁶⁾

물이용부담금은 1999. 2. 8.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피고가 위 법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갈취당하고 있으며 그 징수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마치 법적 근거도 없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보도한 사건에서 피고는 수질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것은 갈취와 다름없다는 취지로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가합21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 기사가 단순히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기보다는 그 징수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법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

고, 물이용부담금의 요율이 국회의 날치기 통과로 인하여 인상되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를 추측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진실에 반하는 기사로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가합106837 판결에서는 변호사인 원고가 전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기자인 피고가 소속된 방송사가 보도 중간에 고개를 숙인 자세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초상을 방송하였고, 그 아래에 ‘소송에 북한당국 관여한 것으로 추정’이라는 자막이 삽입됨으로써 결국 ‘북한 당국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을 원고가 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이 간접적으로 적시되었고,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므로 위 보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⁷⁾

한편, 구조는 다르지만 보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원래의 발언 내용이 간접적, 우회적 표현에 의한 피해자 자신의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된 사건도 있다. 야당 국회의원인 원고가 대구·경북 지역의 국정감사에서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신문사가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창원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7) 다만, 해당 보도는 북한주민소송에 북한 보위부가 관여되어 있어 남한 재산이 북한으로 반출될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특례법의 제정 등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보이고,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었다고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고가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매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정감사 진행을 맡았던 다른 의원이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고,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거의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점 등 문제 발언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정치적 성향 및 그간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간의 평가를 빌려 “나는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하므로 해당 기사에 ‘막말로 매도’와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실적 주장과 평가적 의견의 구별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50762 판결은 콜트 약기의 폐업에는 파업으로 대표되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폐업이 순전히 원고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

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본 원심⁹⁾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그 근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¹⁰⁾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해 표현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09나14267 판결¹¹⁾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표현행위 시점에서는 그 진실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토론과정이나 법원에 의한 심리의 결과 비로소 진위 여부가 판명되는 경우가 있고, 만일 사후에 허위라고 판명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를 제재한다면 번복할 수 없는 진실만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우려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4. 명예 훼손행위와 명예감정 침해행위의 구별

어떠한 표현행위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할 수

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9)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82949 판결

10)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11) 이명박 후보자가 주가조작이나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김경준 작성 메모와 누나 예리카검과의 전화통화 녹음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하여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기사 게재 이후에 김경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기사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40373호로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¹²⁾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가합48785 판결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 신문사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에 있어 원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대상을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아닌 ‘흡착물질’ 자체로 적시하고, 원고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여 온 선체흡착물질과 어뢰흡착물질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잘못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각종 언론매체나 기자회견, 서적출판 등을 통하여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표명하여 온 점,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논거 자체를 직접 토대로 원고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은 점, 일반 독자들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과 기사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전문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과학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5.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¹³⁾ 물론 알권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권리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보도되는 내용의 공공성 및 공익성, 보도의 필요성, 침해되는 권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보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모 국회의원과 인터넷 언론사가 교원노조 가입교사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1. 5. 24.자 2011마319 결정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사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사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충돌하게 되고,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두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을 통하여 그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

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13) 헌법재판소 1989. 9. 4.자 88헌마22 결정

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이에 기초한 교육의 선택권 내지는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6. 초상권 침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 한다.

언론보도는 대부분 보도 관련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도해야 시사성과 진실성이 확보된다. 미디어와 통신의 발전으로 보도 내용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우선 독자나 시청자의 시선을 끌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초상권 침해가 독립한 청구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¹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고,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⁵⁾

가. 공적 인물의 초상권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가합106837 판결은 공적 인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려할 때 사진이나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언론보도에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보도사실과 일체가 되어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해당 보도 이전에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거나 수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보도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소송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입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이고, 보도의 목적도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의 멘트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다만 원고의 초상이 들어 있으나,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처리하여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점, 해당 보도 이전에 변호사인 원고가 북한주민소송에서 북한주민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보도된 바 있고, 원고 자신이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전의 언론 보도와의 관계에서 시청자들에게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북한주민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초상 공표는 보도의 목적에 비추어 필

14) 함석천, '초상권', 재판실무연구(1) 언론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2008년), 346~347면

15)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요성과 상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울러 위 판결에서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어도 당초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되거나, 이미 공표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정적 보도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모두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종교 비판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

이단 시비와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왔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은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만, 이로 인하여 타인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보도의 가치와 이익, 공표의 범위와 표현방법, 인격권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명 ‘안OO 교회’라고도 불리는 ‘OOO의 교회’ 소속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원고가 안OO을 찬양하는 노래와 무용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위 교회 부설 선교원의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기독교 관련 케이블TV 방송사인 피고가 ‘OOO 교수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위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위 영상을 편집하여 보여준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28946 판결¹⁶⁾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영상이 교회 부설 선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 공표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선교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는 달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나아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문제된 영상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텔레비전 방송사로서 자신이 방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제작·편집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타인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종교적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함에 있어서는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신상이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7. 공적 인물과 사생활 침해의 한계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를 가짐은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다만,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게 된다.¹⁷⁾

공인(公人)이론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충돌시 전자를 더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강구된 이

16)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17)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론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고,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11년 언론관계 판례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터넷신문사와 그 기자들인 피고들이 국내 굴지의 유통재벌 2세 겸 경영자인 원고 A와 음악가인 원고 B의 결혼계획, 신혼집의 개요,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원고 B의 옷차림 및 이혼경력 등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은 원고 A의 경우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명 여배우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건으로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되었고, 원고 A 스스로도 개인 홈페이지에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신혼집의 현황, 원고 B의 기본적 정보 등은 원고들이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을 제외하고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그 보도행위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원고들의 사진을 비롯하여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원고 B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보도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미행하지 않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미국에서는 제목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면 기사 내용과 독립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제목과 관련하여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Fair Index Rule이 상당수의 법원에서 채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기사 제목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하고, 기사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 있지 않다면 그 자체 독립된 기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 흐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¹⁸⁾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09나98623, 98630 판결은 제목 가운데 ‘멜라민 분유’ 내지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¹⁹⁾

서울고등법원 2011. 3. 25. 선고 2010나81249 판결은 기사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에 있어 훨씬 크고,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前사장 진술… 대가성 여부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수사”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 그 제목들만 본다면 원고가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불을 받았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표현이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⁰⁾

9. 기타

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보도한 경우의 상당성 판단

언론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 책임 아래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해서는 더욱 진위 여부를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²¹⁾

피고 신문사가 다른 유력한 A신문에 게재된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사설란에 『쇠파이

프도 괜찮다는 民辯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 있다”고 한 변호사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 (중략) ...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08가합81270 판결²²⁾은 위 대법원 판결례를 원용하면서 ① A신문사의 기사를 작성한 B기자 외에도 재판을 참관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A신문사만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점, ② 피고 신문사는 위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A신문사는 촛불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피고 신문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문사로서는 A신문사의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인용보도에 있어서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²³⁾

나. 언론에서 수정 전의 공刊된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법 2011. 2. 9. 선고 2010가합55908호 판결에 의하면 공간(公刊)된 글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2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2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22)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23) 원고는 변호사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법정에서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지만, 일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직접 든 것도 아니고...”라고 발언하였는데, A신문사가 그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의 의미는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는 주체를 평화적인 집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쇠파이프를 들기도 한다는 것인데, 위 기사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치 원고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쇠파이프를 들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고, 이로써 원고가 변론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옹호 내지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위 기사는 원고가 실제 발언한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하여 보도한 허위사실의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필자 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한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후 글의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되기 전의 글은 그 내용의 수정으로 사실상 비판의 필요성이 없게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수정되기 전의 기고 내용을 토대로 원고를 비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허위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거나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제보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서울동부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단79447 판결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피고 A가 조합장인 원고를 상대로 TV 난시청 해소 공사비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한편, 언론사인 피고 B에게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여 그대로 보도가 된 사안에서 제보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제보자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결과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고소장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저널리즘으로서 종편뉴스가 나아갈 길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언론학 박사

한국 TV 뉴스 전쟁이 시작되다

193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텔레비전은 20세기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유혹할 정도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선 하루 평균 4시간이나 TV 수상기에 매달려 있을 정도다.

기술적으로 흑백 진공관 TV로 시작해 컬러TV, LCDTV를 지나 이제 스마트TV, 3DTV 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채널수는 방송 초기엔 주파수의 한계로 5~6개였으나 케이블과 위성시대에는 100여개, 디지털 시대엔 1,000개가 넘어설 정도다. 방송서비스 시청 범위도 가정 안방에서 벗어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TV 빅뱅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무한 채널, 미디어 컨버전스, 글로벌 경쟁,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방송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선 아직 이념적으로 방송을 접근한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 2009년 미디어관련법(신문법, 방송법, 멀티미디어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종편의 지분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하지만 지상파는 10%로 제한됐다. 신문사의 종편 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4개의 종합편성방송사업자를 허가했다.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 등이다. 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해 4개의 사업자 허가는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정된 광고와 콘텐츠 수급으로 생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종편 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과 위성의 10번째~20번째 사이의 채널권을 획득했다. 종편에게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허용되고,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인 미디어렐(특수 광고 대행사)을 거치지 않고 향후 2년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KBS1·2, MBC, SBS 등 4개의 지상파 방송, YTN과 뉴스Y 등 2개의 뉴스전문채널, 그리고 새로 허가를 받은 종편 4사 등 총 10개 방송시간 뉴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숙명여대 방송정보학과 도준호 교수는 “종편 도입으로 시청자의 뉴스 선택권이 확장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종편 도입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언론 시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서울대 윤석민 교수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 미디어가 신문,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신문은 신문만 하고 방송은 소수가 지배하는 현 체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트렌드다.

인터넷, 모바일, SNS의 발전으로 젊은 층들이 TV 뉴스 시청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종편 4사와 뉴스전문채널 1사의 출범으로 한정된 시청자를 두고 방송시간 한판 뉴스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나꼼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팅의 열풍은 종편 방송뉴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송뉴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종편이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에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 처해 있다. 종편뉴스의 환경이 결코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신방 겸영으로서의 종편뉴스와 저널리즘

1980년 신군부가 단행한 신문·방송 겸영의 금지는 오랫동안 묶여있었다. 방송 장악이라는 정치권의 욕망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신방 겸영이 허용된 지 오래다. 물론 여론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다. 그러나 한국 같이 방송 시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진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도입 목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 등을 내걸었다.

종편방송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윤식 교수는 “방송사업권을 탄 사업자에게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종편 진출로 신문 사업까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에 근거한 지적이다. 한정된 광고 시장, 콘텐츠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각에선 신문·방송의 겸영과 약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금으로 종편의 미래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신문사가 종편방송을 겸영함으로써 멀티경영의 시대를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편 도입으로 한국에서도 미디어 자이언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신문과 방송의 공동 기획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동영상 검색사업을 하는 엔씨즈의 김길연 대표는 “신문, 방송, 모바일, 인터넷 등 전방위 미디어 활용으로 홍보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디어를 전방위로 활용하는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인한 홍보, 마케팅의 시너지 효과에다 신문과 방송의 공동 기획, 공동 인력 활용 등으로 겸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랫동안 신문의 취재 인력과 노하우가 방송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사들은 창립 사고를 통해 공통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취재진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것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저널리즘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개국 4개월이 지난 종편 방송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도 좌파진보의 종편 외면은 물론 ‘종편 안보기’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SNS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종편 채널 삭제 방법 매뉴얼’이 제작돼 유포되기도 했다. 진보좌파 교수, 법조인, 문화·예술 인들은 지난해 12월 ‘3불(불참여·불시청·불매) 운

동'을 결의했다. 신문과 방송의 경영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념 프레임에 걸려 시청자의 확장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쪽은 조중동 종편이란 무기를 가졌고, 진보 쪽은 SNS와 시민참여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무기를 하나씩 가졌다”면서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보수가 졌다. 2012년 미디어 싸움에서 조중동 종편은 졌다”고 말했다. 아젠다 세팅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종편의 어려운 국면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종편뉴스의 현황

종편 방송들은 뉴스 시간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을까? 먼저 TV조선, JTBC, 채널A, MBN과 지상파 방

송인 KBS, MBC, SBS와의 뉴스 편성 시간대를 비교했다(아래 <표> 참조).

종편으로서 아침 뉴스의 변화를 MBN이 먼저 시도했다. 과거 뉴스전문채널의 경험을 살려 아침 5시에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은 6시에 아침 뉴스를 시작한다. JTBC 등 다른 종편들 역시 지상파 프레임에 따라 6시에 아침 방송을 내보낸다.

지상파 방송의 뉴스와 종편 뉴스의 가장 큰 차이는 오후 시간대 뉴스 편성이다. 조선TV는 오후 3시에 'TV조선 뉴스와이드'를 편성해 2시간 동안 진행한다. 동아일보의 채널A는 마찬가지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뉴스쇼 A타임'을 편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시간의 메인 뉴스 시간대다. 종편 방송마다 차이를 보였다. 초기엔 채널A가 8시 30분에 편성했다. 조선TV는 9시에 KBS와 MBC 9시 메

<표> 종편 4사의 평일 뉴스 편성시간

시간	방송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5:00~6:00					굿모닝 MBN
6:00~7:00		뉴스 (80분)	모닝뉴스 (90분)	굿모닝 채널A	
7:00~8:00					
8:00~9:00					뉴스투데이
9:00~10:00					뉴스광장1, 2부
10:00~11:00					
11:00~12:00					
12:00~13:00		정오현장(10분)	정오뉴스 (20분)	뉴스 (10분)	
13:00~14:00					뉴스 1
14:00~15:00					
15:00~16:00		뉴스 4 (55분)	뉴스와이드 (120분)	뉴스쇼 A타임	뉴스 M1, 2부
16:00~17:00					
17:00~18:00					뉴스
18:00~19:00				뉴스 네트워크	
19:00~20:00					
20:00~21:00			뉴스 날 (50분)		
21:00~22:00					
22:00~23:00		뉴스 10 (55분)	뉴스와 날씨	뉴스 A	뉴스 10

인 뉴스와 같은 시간대를 편성했다. JTBC는 9시 50분, MBN는 10시에 시작하는 저녁 메인뉴스 시간대를 잡았다. 하지만 일부 종편 방송사들은 낮은 시청률로 메인 뉴스의 시간 조정이 있었다. 먼저 TV조선은 9시에서 8시로 옮겨 SBS와 경쟁하고, 동아일보의 채널A는 10시대로 옮겼다.

2012년 1월,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뉴스프로그램은 중앙 종편 JTBC의 'NEWS10'으로 시청률이 0.60%였고, 뉴스 시간대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로 옮긴 동아 종편 채널A의 '뉴스A'가 0.4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조선 종편 TV조선의 '9시뉴스 날'은 0.41%, 채널A와 함께 뉴스시간대를 8시에서 10시대로 옮긴 MBN의 '뉴스10'은 0.35%에 그쳤다. 방송의 핵심 장르이자 킬러 콘텐츠인 드라마나 버라이어티가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하자 종편 뉴스도 그냥 묻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신생 방송인 종편이 지상파 방송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못하고 있다.

종편 4사의 뉴스 편성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상파방송의 메인뉴스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있다. TV조선은 8시, 나머지 3사는 10시에 몰렸다. 둘째, 따라서 종편끼리 메인 뉴스 시청률을 서로 깎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아직 종편의 메인 뉴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종편 메인 뉴스가 지상파에 비해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10시 후반 시간대에도 종편의 메인 뉴스 편성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종편의 주말 뉴스 편성 역시 지상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방송뉴스 시간을 줄였다. 아침 뉴스를 없애고, 저녁 메인 뉴스 시간을 줄인 것이다.

물론 종편이 일부 뉴스 시간대를 달리하는 편성 전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먼저 평일 오전 10시엔 조선과 MBN만이 뉴스를 편성했다. 12시엔 MBN만이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다. 오후 4시와 5시엔 조선과 동아

및 MBN만 뉴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 뉴스 한 꼭지를 길어도 1분 30초로 제한한 것에 비해 JTBC 등 일부 종편들은 한 이슈나 테마에 대해 5분씩 편성하여 뉴스 심층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입체 보도의 형식을 빌어 '강정마을'에 대해 10분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채널A의 경우 본부장급이 직접 프로를 진행하는 파격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을 벗어날 수 있는 종편뉴스의 대안은 무엇일까?

종편뉴스가 나아갈 길

종편 방송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종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비판적인 입장에서 혹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케이블 방송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미디어 오늘' 등 진보 좌파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고, 야권의 정치권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났다'며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그동안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방송들이 개국 준비에 '올인'했다. 일부 크고 작은 방송사고는 있었지만 대형사고 없이 방송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연착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편 방송을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시청자의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TV조선의 경우 '한반도' 드라마는 블록버스터로 100억 원 이상 투자했지만 시청률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해 종편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종편의 대표 상품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종편이 시청자의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현 정부가 허가한 조중동매 방송의 외면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편이 신생방송으로 출발하면서 창의적인 포맷, 장르,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비판이다. 대다수의 종편 임원진이 지상파 출신으로 지상파 방송을 답습하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새로운 컬러 콘텐츠를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이다.

셋째, 보수신문 제작의 프레임이 방송 제작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원래 신문은 정파적 매체다. 독자가 특정 정파를 선호한다. 하지만 방송은 오락 매체이자 국민 대중 매체다. 이데올로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 제작의 철칙이다. 그러나 종편은 누구 출연은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 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가 제작의 유연성을 헤치고 있다. 종편 출범 기념으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원팀'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거의 모든 종편에 출연했다. 기대만큼 시청률은 오르지 않았다. 반면에 SBS는 '힐링 캠프'에서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연시켜 시청률 대박을 터트렸다. 균형 있게 여야 인기 정치인들을 동시에 출연시키는 전략이 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셀러브리티(celebrity)'가 중요하다. 유명 인사가 출연해야 시청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편 4사의 메인 뉴스 앵커 중 한명도 셀러브리티가 없다.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방송의 특성을 모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인물을 방송 초기 메인 뉴스에 투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럼 종편뉴스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신문의 장점인 탐사보도를 포함해 취재력이 앞서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단독 보도가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미국의 CNN이 방송 초기 라이브와 브레이킹 뉴스로 명성을 얻었다. 편성과 제작의 유연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JTBC 허남진 대기자는 "뉴스의 정형화된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지상파를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나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뉴스 보도 포맷이나 장르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지상파 뉴스와 차별화된 보도 형태를 보여줘야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활용을 제기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경영의 장점을 넘어, 원 소스 멀티 유스와 인터넷, 모바일, SNS 등 멀티 디바이스를 활용해 '뉴스'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종편 뉴스제작 간부들은 "결국은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예능 프로를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의 제작 인력 스카우트와 드라마 제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뉴스 제작에는 쥐어짜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방송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종편 오너들의 경영 패러다임과 시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언론과 법

국내동향
해외동향
동향보고

PAC

●● 국내동향 ●●

술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영한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인정

술집에서 음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세창)는 2011년 3월 서울 무교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김모씨 외 2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아줌마, 아저씨’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중년의 삶의 질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총 17초 가량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의 전반부에 11초 가량, 후반부에 6초 가량 방송되었고, 클로즈업 샷 형태로 촬영된 원고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방송장면의 인물들이 원고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다큐멘터리 방송의 전체 맥락상 원고들이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표현되었거나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꼴통’, ‘안하무인’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

‘꼴통’, ‘안하무인’ 등의 표현은 욕설이 아닌 일반 용어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윤태식)는

2011년 12월 29일 모욕죄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2010년 동네의 유치원 통학버스가 소음과 매연으로 갈등을 빚자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었다. 이것을 본 유치원 원장이 모욕죄로 조모씨를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모씨는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매연, 소음 등으로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표현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정황을 고려하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꼴통, 안하무인, 후안무치’라는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 널리 쓰이고 있는 일상용어여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없다. 언론매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그 자격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할 때 비꼬아 널리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비난 댓글, 모욕죄 아니다

불법행위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쓴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012년 2월 3일,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에 대해 ‘정치깡패들’,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 조직범죄자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글을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린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댓글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김모씨는 2010년 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

글란에 이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한국의 언론자유, 작년보다 2계단 하락 44위 기록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02년 이후 해마다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각국의 언론 규제에 대해 감시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2011-2012년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가 2012년 1월 25일에 있었다.

총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2계단 하락, 44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의 가나, 보츠와나 등의 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6년 31위까지 순위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9년엔 69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발표에서는 4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2위, 미국은 47위, 중국은 174위를 기록했다. 최하위인 179위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가 기록했으며, 북한은 178위로 최하위는 면했다.

●● 일본동향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도쿄지법, “타 신문사 기자의 말을 믿고 집필한 주간지 기사는 불충분” 명예훼손 인정

일본 참의원인 A의원(민주)이 '우편부정사건'에 관한 「슈간신조」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발행사인 「신조사」를 상대로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2011년 11월 16일 “간접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은 다른 주간지 기자의 견해를 따라 기사를 집필한 것은 불충분했다”고 명예훼손을 인정,

「신조사」에 5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1년 12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슈간신조」는 2009년 6월 18일자 발간호에 「떨어진 『커리어우먼(career woman)의 별』, A민주당 부대표에게 거역하지 못한 『후로성 여성국장』의 심적인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에서 M 전 후로성국장(우편부정사건에서 무죄가 확정)이 장애인자립지원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A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의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조사」 측은 사건에 대한 A의원의 관여 가능성이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는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입증을 위한 독자적인 취재를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서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신조사」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신조사」는 11월 29일 항소했다.

삿포로고법, ‘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료 지침이 일반에 통용된다 볼 순 없어’ 배상액 증액 판결

일본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A씨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무단으로 뉴스프로에 방영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NH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18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2010년 11월의 삿포로지법 1심 판결을 수정, NHK에 104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1년 12월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정한 NHK의 방송료실무처리요령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이 일반에 통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1심 배상액보다 64만엔을 증액했다.

NHK는 2008년 4월 2일 뉴스에서 종합상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 펀드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는 A씨가 촬영한 풍차 사진을 방영했다.

NHK는 11월 30일, A씨는 12월 1일 각각 상고했다.

日 최고재판소, “북한 저작물 보호의무 없다” 북한영화 일부 방영한 방송사 승소

북한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에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북한문화성 산하 행정기관인 「조선영화수출입사」와 일본에서의 상영권을 갖고 있는 「카나리오 기획」이 니혼TV와 후지TV에 대해 방송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11년 12월 8일 「카나리오 기획」에 12만엔씩 지불하라고 두 방송사에 명한 2008년의 2심 판결을 파기, “일본은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방송사 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2012년 1월 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니혼TV는 2003년 6월, 후지TV는 2003년 12월 뉴스프로에서 북한영화의 일부를 허락 없이 방영했다.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베른조약에는 두 나라 모두가 맹되어 있다.

재판부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외무성과 문과성이 제시했다고 지적, 북한과의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1심 도쿄지법 판결은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른조약상의 저작권 보호의무가 없다”고 북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작물이라도 경제적인 이용가치 등에 의해 민법상 보호된다”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 점에 관해 최고재판소는 뉴스프로에서 방송된 것은 상영시간이 2시간을 넘는 영화 중에서 2분 8~11초였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이 “자유경쟁의 범위를 일탈하여 카나리오 기획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영국동향 ●●

EU,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 확정

EU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EU의 법무·기본권 담당 비비안 레드 집행위원은 1월 25일 EU 소속 27개국에서 적용되는 데이터보호법을 16년 만에 개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Directive) 제정 이후,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정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레드 집행위원은 인터넷의 경우 저장 공간이 무한하다 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아 있는 개인정보들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EU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비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구글 등과 같은 검색엔진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상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흔적들을 지워달라는 소송으로 골치를 썩게 될 것이고, 특히 SNS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정보를 광고업체에 넘기며 수익을 창출해 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이번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2011년 말, 이 법안의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인터랙티브광고국(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 등 관련 분야 11개 산업 협회는 EU의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유럽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인터넷 전체

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을 찾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이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EU의 개정안은 단지 EU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EU 시장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기에 우리나라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 미국동향 ●●

SNS 악성글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

미국 IT전문매체인 매셔블(Mashable)에 따르면, 2011년 12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 주 지방 법원은 SNS상에 특정인에 대한 악성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불교단체의 신도였던 윌리엄 로런스 케시디(William Lawrence Cassidy)는 같은 종교 단체의 지도자인 앨리스 제올리(Alyce Zeoli)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자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죽기를 기원한다’ 등 8천 건이 넘는 악의적인 글들을 올렸다. 이를 참다못한 제올리는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국은 케시디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해당 재판을 맡은 로저스 타투스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케시디의 무죄를 선고했다. 케시디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아무도 제올리에게 케시디가 올린 글을 강제로 읽게 하지 않았으며, 책을 편찬한 저자이자 불교단체의 지도자로서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인에 해당하기에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일반인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의견이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제올리는 두렵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악의적인 글에 대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큰 무게를 둔 이유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들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동향보고 1 ●●

송동현 통신원

Goldsmiths College(런던) Media & Communications 박사과정

폰 해킹과 레버슨 청문회 : PCC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헐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신문사들의 폰 해킹 및 비윤리적 기사 획득 행태는 2011년 6월 5일 실종된 밀리 도울러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이 뉴스오브더월드지 기자에 의해 해킹 및 삭제되는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영국 수상인 제임스 카메론은 같은 해 7월 13일 폰 해킹 스캔들과 관련하여 신문과 경찰의 역할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레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가 구성되었고, 이는 레버슨 청문회(Leveson inquiry)로 불리우며 현재 제 2부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조사법(The Inquiries Act 2005)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이번 청문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신문과 공중의 관계, 폰 해킹을 포함한 신문사의 추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2부는 신문과 공권력과의 관계, 3부는 신문과 정치계의 관계, 4부는 신문의 자율성 보호와 신문사들의 윤리의식 및 기자 전문성 기준 강화 방안을 조율할 수 있는 권고안 상정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청문회 결과는 권고안적 성격의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며, 보고서는 개정될 신문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레버슨 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신문법 개정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부 청문회는 청문회의 의제에 걸맞게 폰 해킹과 관련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사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태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16일 청문회에서는 뉴스오브더월드 편집장이던 에드몬슨이 밀리 도울러의 어머니, 케이트 맥칸의 일기장을 포르투갈 경찰에게서 18,000 유로(한화 2,600만원 정도)에 구입하여 기사화 하는데 이용한 것과 관련한 대질 신문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전직 데일리 미러지 기자인 제임스 힉웰이 증인으로 출석, 다른 동료 기자들이 그들의 책상에서 해킹한 휴대전화 음성을 어떻게 지워 경쟁사인 선(The Sun)지 기자들이 못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상의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기자의 비윤리적 행태는 편집장의 감독 하에 실행되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신문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비윤리적 기자 정신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레버슨 청문회는 2012년 2월 12일 제 2부를 시작하였고, 그 중 PCC와 관련된 사안은 청문회 중심 화두 중 하나이다.

전 PCC 위원장인 바로네스 부스콕이 2011년 7월 사임한 것과 전 PCC 디렉터 스티븐 아벨이 올해 2월 사임한 것은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한 PCC의 책임론과 그 비난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이러한 인적쇄신의 문제가 아닌 PCC 구조 개편의 문제, 즉 PCC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문 규제가 자율규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법적규제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로에 놓여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PCC와 관련한 레버슨 청문회의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폰 해킹과 관련하여 PCC가 그동안 제 역할을 수행하였느냐의 문제, 둘째가 PCC의 폐지 및 언론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모색이 합당한지이다. 이와 관련, 앞서 언급한 폰 해킹 사안으로 사직한 PCC 전직 위원장 및 관료들과 현직 위원장, 관료들이 차례로 출석한 증인 청문회에서의 중점 사안은 PCC의 역할과 책임이었으며, 특히, 규제기관으로서의 법령강화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문제는 이미 PCC와 관련한 청문회 시작 전 PCC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것이라는 기조가 있었기에 청문회 2부의 PCC와 관련된 증인 출석, 대질은 각 개인의 역할 수행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였다기보다는 폰 해킹과 관련하여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PCC는 무엇을, 어떻게, 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PCC의 디렉터를 역임한 팀 톨민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변호사 로버트 제이는 팀 톨민이 앤디 코울슨을 소환하여 그가 편집장으로 있던 뉴스오브더월드지의 의혹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추궁했다(앤디 코울슨은 2007년 폰 해킹 스캔들이 발생했던 당시 관련 신문(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장이었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임 후 제임스 카메론 수상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팀 톨민은 PCC는 규제기관이 아닌 단순한 '불만처리 기구(complaints body)'라 주장하며,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PCC가 무능할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팀 톨민의 답변에 레버슨 위원장은 PCC가 실제로 규제기관이 아닐 지라도, 공중들에게는 명목상 유일한 규제기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의 변명을 일축하고 간접적으로 PCC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PCC의 허약성은 전 PCC 위원장인 바로네

스 부스콕이 언급한 PCC와 신문사와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2년 2월 7일 청문회에 소환된 부스콕은 당시 2009년 PCC 재직 시절 가디언지가 최초로 밝힌 뉴스오브더월드지의 저널리스트들의 폰 해킹 사실 보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이에 그녀는, '나는 뉴스인터네셔널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믿었다'며 이어 '나는 맹세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처리할 힘도 기구도 없었다. 우리는 단지 희생양처럼 느껴진다'라는 답변을 했다.

위에 언급하였듯,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현재 PCC를 구심점으로 운영되는 자율규제 신문법은 실효성이 없다는데 동의했다. PCC는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벌금을 부과하고 사과문을 신문사에 게재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에 각 언론사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버슨 청문회를 통해 도출된 PCC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PCC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관의 설립 방식에 있어서는 각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계 및 폰 해킹 피해자들은 PCC같은 자율규제 기관은 또 다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대체할 법적 정부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언론사 실무진들은 위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자신들의 실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언론이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PCC보다 강한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논쟁이 1980년 PCC의 전신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사생활 침해 사건 등으로 와해되고 PCC가 설립될 당시에 대두되었던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동향보고 2 ●●

MSA 창설을 통한 새로운 언론규제 모델 제시

2월 24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각 대학기관, 언론인, 법률가 그리고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및 Media Standards Trust의 구성원은 미디어 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졌던 일련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언론규제에 대한 대체 모델인 'MSA(Media Standards Authority)' 창설을 통한 새로운 언론규제 모델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12페이지로 구성된 이 제안서는 영국 레버슨 청문회에 제출되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의 수준, 도덕성, 행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휴 톰린슨 변호사, 언론규범단체(Media Standards Trust), 로이터스 언론학협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편집자협회(Society of Editors), 영국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주요 신문사 대표들이 청문회에 참가하였다.

이 제안서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효율적인 미디어 규제 모델에 관한 것으로, 모든 비방송 언론매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SA는 언론인 및 출판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 공중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호도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해 도외시되는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일반 공중과 언론 모두에게 진실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시켜준다.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SA는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나, 관리이사회는 전직 언론인과 현직 기자들도 소수 포함될 예정이다.
- 가입은 자발적이지만, 회원사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즉, 회원사에 맞서 소송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MSA를 먼저 거쳐야 하고, 회원사는 MSA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 있다. 이러한 절차는 강제력을 갖는다.
- MSA는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회원사들을 위한 몇 가지 우대조치들은 법으로 정한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MSA는 언론사를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다. 제재는 MSA와 회원사 간의 “회원 가입 계약”에 따라 부과된다.
 - MSA는 “미디어 윤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을 통해 언론윤리 및 언론 실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언론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 MSA는 (회원사와의 계약에서 비롯된) 조사 권한을 가진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회원사에는 감독과 제재를, 규율 위반이 반복된 회원사의 경우는 가입비를 증액하거나,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 일반 국민이 MSA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MSA는 사인을 괴롭히거나 혹은 인권법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Right to respect privacy and family life)를 위반하여 위협을 가한 언론사의 대리인 및 파파라치가 속해 있는 회원사와 그 외 출판사들에게 “금지(desist) notices”를 권고할 수 있다.
 - MSA는 사생활 침해 사건의 경우 회원사와 신청인에게 모두 보도 전에 충고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신청 내용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출판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MSA는 회원사에게 공공의 이익 항변에 기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판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러한 항변에도 기초하지 않는다면, 회원사는 MSA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 MSA는 국민과 언론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Mediation)과 재결(Ajudication;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유사)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하거나 결정 내용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MSA의 중기 목적은 모든 형태의 언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 즉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엄격히 규제하려는 ‘1단계’와 모욕적인 발언, 폭력의 선동 등 형법상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내용은 Lara Fidelden의 최근의 출판물 “저널리즘의 신뢰를 위한 규제: 융합미디어 시대의 표준규제(Regulating for Trust in Journalism: Standards Regulation in the age of blended media(Reuters Institute, 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신 1 ●●

런던 폭동의 원인이 된 마크 더건의 사망과 관련한 가디언지 기사에 대해 PCC 기사 수정 권고

지난 2011년 8월, 마크 더건은 총기 범죄를 조사하던 경찰을 피해 택시를 몰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을 야기한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은 마크 더건이 먼저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고,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발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가디언지는 마크 더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경찰청 공식 입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이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기사를 2011년 11월 18일 저녁 9시에 온라인에 최초 공개하고 19일 오전에 배포 될 지면판을 준비중이었다. 이 기사 제목은 ‘폭로: 경찰에게 총격 당했을 때 마크 더건은 비무장 상태였다’ 부제는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죽음을 조사하는 독립경찰고충위원회(이하 IPCC)는 그가 토트넘에서 사살당할 때 권총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였다.

온라인에 글이 게시된지 한 시간 만인 10시 10분, IPCC와 경찰청은 위 제목과 부제와 관련하여 가디언

지에 연락해 위의 두 문장이 오독으로 인한 사실 왜곡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편집장 회의를 거친 가디언지는 부제를 고치기로 합의, 부제를 ‘조사위원회는 폭동의 도화선이 된 남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 고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가디언지가 이 기사에 헤드라인이었던 ‘폭로: 경찰에게 총격 당했을 때 마크 더건은 비무장 상태였다’에 대한 IPCC와 경찰청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신문을 배포한 것이다. 가디언지는 취재자료와 정황을 기준으로 유추한 바에 의하면 헤드라인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IPCC와 경찰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IPCC와 경찰청은 마크 더건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장 해제 상태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오류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가디언지의 기사 제목은 오독될 수 있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IPCC가 문제를 제기한 후 21시간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반, 가디언은 관련 온라인 기사 제목을 ‘더건 총기발사 관련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다’로 바꾸게 된다. 또한 가디언지는 이와 관련 11월 26일 사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IPCC와 경찰청은 이 문제를 PCC에 불만 신청을 하게 된다. 불만신청의 법적 근거는 PCC 윤리강령(Code of Practice) 1절, 정확성과 관련한 편집인의 행동규정이었다. PCC는 2012년 2월 23일 이 문제와 관련 결정문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디언지는 기사 제목 결정은 IPCC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PCC는 기사 제목은 독자로부터 더건이 총격으로 사망 할 당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잘못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목 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이는 피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디언지는 ‘부정확한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강령 1절 1항을 어겼다. 그러나 가디언지는 윤리강령 1절 2항 ‘명백히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문장이 인지 되었을 시 신속히 적절한 곳에 정정 보고를 한 후, 사과 글을 게재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신문사가 자신이 실수를 인지한 후, 윤리강령 1절 2항에 의거, 실수를 만회하려는 빠른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디언지는 정정/사과 보도를 포함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리더스 에디터(Readers' Editor)란에 ‘심각한 오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PCC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시에 신문사는 기사의 표현 수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PCC는 가디언은 정확한 정보 기재의 윤리강령 1절 1항은 어겼으나, 1절 2항과 관련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판결한 것은 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단신 2 ●●

데일리 텔레그래프지(The Daily Telegraph) 기상청 비난 기사 정정보도로 마무리

PCC는 기상청의 지난해 10월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기상청 관련 기사에 관한 불만신청 사안에 대해 이번 2월 17일 결정문을 공개하였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런던기상청(Met Office)은 2011년 잦은 기상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비난을 인식한 정부는 정보 투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상청이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공개/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개인 사업자들에게 기상예측 보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2011년 10월 27일자 신문에서, 정부의 기상청 자료공개 방침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를 위한 연구소 설립 예

정을 소개하는 기사의 도입부에서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기상청의 빈번한 기상예측 실패를 비판하며, ‘빛나가는 기상청 일기예보 및 기상청의 무능력은 이제 국가적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주관적인 비난성 표현을 기재했고 ‘올해 초, 의회는 100년 만에 온 12월 한파에 대해 기상청이 국민에게 경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라는 글을 그 기사의 중반부에 담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이 PCC에 불만 신청을 제기하였다. 불만요청의 법적 근거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주장의 정확성(accuracy of assertions)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PCC는 2012년 12월 17일 이와 관련한 결정문을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PCC는 기상청의 불만신청의 근거인 주장의 정확성에 의거하여 판단한 결과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사수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자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기사 중 ‘국가적 조롱거리’라는 도입부는 삭제하였으며, ‘의회는… 비난하였다’라는 앞서 언급한 문장은 수위가 한층 낮아진 ‘의회는 기상청의 계절별 날씨 예측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자료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국내언론관계판결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법제관련문헌

PD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당사자의 신원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 21:10)

내용 : [앵커]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박시장의 아들, 몇달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허벅지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작년 8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나흘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양손으로 입양돼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아들의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축구시합에서 부상당한 후유증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박씨는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취재”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신청인 : 박원순

피신청인 : (주)조선방송

중재부 : 서울제7중재부

접수일 : 2012.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허벅지통증을 이유로 귀가조치된 신청인들의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들이 자원입대 후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에 의한 통증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것이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이

[리포트]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이○○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밤「9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별지] 1.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2. 내용: 본 방송은 2012년 1월 5일 밤 9시 뉴스프로그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작년 8월 공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나흘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했으며,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하면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 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 군지정 병원 등에서 확인한 결과, 박씨가 작년 현역병으로 입영후 나흘만인 9월에 귀가조치된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발병한 대뇌부 신경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통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지난해 11월 25일 입영통지를 받고 군지정 병원인 해민병원에서 12월 9일 정밀재검을 한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본인의 지병에 의해 12월 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시장의 아들은 평소의 지병에 의해 적법한 절

차를 거쳐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본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병역을 회피하려는 어떤 의혹도 없으므로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보도)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반론보도
나. 내용: TV조선은 지난 5일 「9시 뉴스 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현역 입대했다 귀가한 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작년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을 회피한 적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의 「9시 뉴스 날」 프로그램(21:00~22:00)에서 별지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때 자막은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tv.chosun.com>)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주유소협회의 불법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주)제이티비씨
 중재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12. 1. 11.
 처리결과 : 기각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불법 후원금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 고발자 인 양 보도되어 피해를 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JTBC : 「뉴스 10」 프로그램 ‘JTBC 단독보도 “주유협 집단로비” 폭로’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 22:21)

내용 : [앵커]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후원금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만 4천여 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주유소협회. 2년 전, 이 협회 공금 통장에서 수천 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협회 관계자] 출금 전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기자] 협회 간부에 따르면 문제의 돈은 협회 계좌에서 전국 시도 지회 계좌로 이체된 뒤 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겁니다. 협회 간부들은 특정 상임위를 겨냥한 이같은 로비를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는요.

[기자] 협회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에 나선 것은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회 관계자] 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한테 줬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밖으로 새면 골치아플 수가 있으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로비자금으로 줬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기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고 회원들 간에 논쟁도 벌어집니다. 협회 공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후원금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 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별지] 1. 제목 : ‘협회 내부자 고발’ 관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본 방송은 지난 12월 26일 JTBC 뉴스프로 프로그램에서 “협회 내부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협회 관계자’라는 자막과 함께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요.’라는 멘트를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당사자와 확인결과 ‘내부 고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기각

〈결정내용〉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자 JTBC 「뉴스10」 프로그램 [주유소협회, 불법후원금] 제목으로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금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진술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불법 후원금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의 방송 보도에 사용된 변조 음성만으로는 그것이 신청인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변조 음성인 신청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46 손배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2012. 1. 11.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만원)

■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보도에서 자신의 초상이 동의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소속기자가 신청인에게 사과 및 유감을 표시하는 서신(이메일)을 발송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아시아경제닷컴 : 「포토」 전세구해야 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내용: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한 대학생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서울 3300가구, 경기 2000가구 등 전국 1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만원)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 소속기자 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메일로 진심어린 사과 및 유감을 표시하는 메일을 발송한다.

해외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166·167, 168·169(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안○○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2. 2. 3.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50만원)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가 진학,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용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신의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자

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1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 **조선일보** :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2012년 1월 26일자 11면)

내 용 : 경북 지역 모 대학교 3학년 김모(여·22)씨는 지난 3일 출국, 몽골에서 2개월간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몽골에서 하루 3시간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은 수도 올란바토르 시내 관광을 하거나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중이다. 2개월간 체류 비용으로 150만원 정도를 부담했고, 항공편 비용은 봉사 활동을 주관한 단체에서 지원 받았다.

김씨는 “솔직히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적으려고 봉사 활동을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 항목에 적기엔 좀 약한 것 같아 네팔 히말라야 등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 정모(23)씨는 지난해 여름 베트남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10여일간 국립공원에서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지만, 봉사 활동보다 여행이 목적이었다. 정씨는 “단순히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취업할 때 그 기간에 놀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부담 없는 봉사 여행이 있어 따라나섰다”고 말했다. 오전에 봉사 활동을 한 뒤 주로 관광을 했기 때문에 여행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스펙(어학 실력이나 해외 경험 등의 개인 경력)을 쌓기 위해 인도 캘커타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그는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오면 대학 수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가했다”며 “120여만원을 들여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오후엔

주변 관광을 하는 일정이라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단기 해외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저개발국 지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라거나, 심지어 최저가 해외여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외 봉사 활동을 나서는 대학생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31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봉사단은 2008년 2000명을 돌파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도 2009년부터 해외 봉사 활동 참가 경쟁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대 1에서 2010년 5대 1, 2012년 7대 1을 기록했다.

봉사 단체 관계자들도 실속 없이 참가자 숫자만 늘어난다는 지적을 한다. 한 국제 구호 단체 관계자는 “해외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인류애나 봉사 정신보다 개인적인 경력, 해외여행 기회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면서 “봉사단을 맞이하는 현지 사람들도 이런 점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사 활동 참가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대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건국대 사회과학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김모(여·21)씨는 “평일엔 주 2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종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댄다”면서 “방학 때 기업체 인턴도 못 하는 처지인데, 스펙을 쌓겠다고 해외 봉사 활동에 몰려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허탈해진다”고 말했다.

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봉사 활동 횟수가 아니라 봉사 정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해외 봉사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 **조선닷컴** :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2012년 1월 26일자)

내 용 : <2012서울조정166·167, 168·169(병합)

의 조정대상보도(1) 참조)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1.은 조선일보의 사회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별지1] 1. 제목 : ‘스펙 쌓기용 해외 봉사’ 보도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6일자 사회면에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이력서, 해외여행, 수시전형을 목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선다는 기사에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한 학생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학생은 이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사용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인물과 기사 내용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별지2] 1. 제목 : ‘스펙 쌓기용 해외 봉사’ 보도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2.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6일자 사회면

에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이력서, 해외여행, 수시전형을 목적으로 해외 봉사에 나선다는 기사에 해외봉사를 다녀온 한 학생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이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사용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인물과 기사 내용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신청인 안○○에게, 피신청인1.은 일금 5,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150만원)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 ‘취업 스펙 쌓기 해외 봉사’ 사진 관련 정정보도

나. 내용 : 본지 1월 26일자 A11면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목의 기사에서 해외 봉사 활동중인 학생의 보도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제1항의 정정보도문을 <조선일보> A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2012. 2. 22.자 A2면 “후진타오 주식님, 붙잡힌 친구를 살려주세요”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 (주)조선일보사와 (주)디지털조선일보

는 신청인에게 2012년 3월 7일까지 15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과거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2서울조정252 손배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tvN)
 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2012. 2. 28.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원)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낮에는 쇼핑몰과 의류 피팅모델을 직업으로 하지만, 밤에는 퍼포먼스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한 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과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허락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tvN :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얼음킬러녀 VS 이중생활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 24:00)

내용 : [남자성우]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체를 밝혀라.

[여자출연자1] 바이트걸은 간단히 말하면 섹시피포

먼스 팀점 파티플래너 팀인데요.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4장의 사진이 게재됨)

[여자피디] 커스텀 종류는 어떤 걸 하셨어요?

[여자출연자2] 바니걸 경찰 갯우먼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5장의 사진이 게재됨)

[남자성우] 다양한 커스텀을 한 화성인.

[여자출연자] 조금 아하게 했던 거는.. 코르셋.

(동시에 보도화면에는 사진 1장이 점점 확대되어 게재됨)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원)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특정 종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단으로 종교 활동중인 어린이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료로 사용한 경우, 어린이들에 대한 모욕 및 사생활·초상권·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원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사이버종교나 이단이라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이단이나 사이버종교라는 표현은 타종교에 대한 경멸의 감정 표현 내지 평가적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탁OO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탁OO의 위

와 같은 모욕행위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탁OO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활동이 담긴 동영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원고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였는바, 원고들의 음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고 합창으로서 개개인의 음성이 잘 구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의 얼굴과 함께 방송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송 전체의 내용이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원고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사 건 : 2010나1210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정OO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기독교텔레비전

제1심판결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1. 4.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판결선고 : 2011. 11. 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각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2)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CTS방송 '4인 4색'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당시 해당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탁OO으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본방송 1회, 재방송 2회를 각 방송하며, 3)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2)항 기재 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에 문제의 방송물이 게재된 날로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1) 위 가의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2) 위 가의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사과와 차후 동일한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사과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미성년자들로써 1998년경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방송사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1) 원고들은 1999년~2000년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원으로서 다른 어린이 신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및 교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무용을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영상은 2004년경부터 분당 소재 하나님의 교회 부설 셋별선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3) 피고는 2006. 12. 26.경 '4인 4색'이라는 방송에서 탁OO을 강사로 하여 이단(탁OO은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에 관한 "탁OO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였다.

4) 탁OO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고, 이단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의하면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요, 교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 노래를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이 힘들고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원고들의 얼굴이 나오는 이 사건 동영상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탁OO의 강의 화면 우측 하단에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06. 12. 27.과 같은 달 28.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의 동영

상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디오 및 DVD로도 제작,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후의 정황

1) 일부 원고들의 어머니들인 윤OO, 이OO, 김OO은 2007. 1.경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중지 및 비디오와 DVD 판매금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중지, 사과방송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1. 22.경 이들에게 '당사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문제와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2007. 1. 29.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비디오 및 DVD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탁OO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던 중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을 하고, 또 2007. 4. 17. 및 같은 달 18. 명지대학교에서 이단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이 사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07.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7고약21176).

2) 탁OO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7고정347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탁OO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635호)은 탁OO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없고, 종교비판의 한 형태로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인 탁OO이 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북한의 아이들’ 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검사 및 탁OO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8도9209호)은 2010. 10.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 상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원고들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

(1) 명예훼손 여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탁OO이 강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그들이 믿는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것 역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사이비종교나 이단이라는 취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이단이나 사이비종교라는 표현은 타종교에 대한 경멸의 감정 표현 내지 평가적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탁OO이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탁OO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탁OO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초상권 침해의 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점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

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활동이 담긴 동영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음성권 침해의 점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재생·방송·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초상권 침해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참조), 타인의 음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한 경우 이는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합창장면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였는바, 원고들의 음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고, 합창으로서 개개인의 음성이 잘 구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의 얼굴과 함께 방송됨으로써 원고들의 음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송 전체의 내용이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원고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의 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믿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원고들 소속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탁OO이 강의에서 이단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포교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얼굴이 나오는 이 시간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탁OO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이비종교’로 지칭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사회적 해악을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교회를 ‘이단’으로 지칭한 부분은 기독교에서의 이단의 통상적인 의미가 교회, 즉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나 체제임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이미 기성교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기성교단 소속원들에 대한 평가의 저하를 의미할지언정 그 자체 그릇된 것이라는 뜻이라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정통과 이단의 구별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선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이나 사이비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폐해에 대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게시한 동영상을 잠시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동영상의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적인 법익 침해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익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고의 언론의 자유와 원고들의 개인적인 법

익 침해가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이단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익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어린이 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인 종교활동 동영상을 포함시켜 원고들의 초상이나 음성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침해행위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음성을 소거하거나, 자막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가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가 없는 점(원고들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이 올려져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원고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방송에 이를 사용할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점이 2006. 12.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일로부터 3년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음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들의 위 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탁OO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가담 정도, 종교방송사로서의 피고의 영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들에게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금 각 1,000만 원(= 4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6.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 청구 및 사과편지 발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와 사과 편지 발송을 구하나, 이는 피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양철한

판사 문병찬

[별지]

정 정보도문

제목: 알려드립니다.

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06. 12. 26. '4인 4색' 프로그램에서 '탁OO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제하의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동들의 영상물을 동의 없이 가져다가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아무 장치도 없이 피해 아동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켜 방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동영상을 30초간 보여주며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 아이들이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 아동들이 마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부적절한 멘트를 여과 없이 방송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심적·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를 바로잡아 정정하며,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동들과 부모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끝.

[판례 2]

신문 사설은 풍자·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 가능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면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가.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중략)”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사 건 : 2011나3651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김상희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09가합68328 판결
판결선고 : 2012.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A35면 상단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③ 만약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취지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2008. 7. 1.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여성부장관이 2009. 4. 14.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남

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장자연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자연 사건에 피고의 사주(社主)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5. '조선일보'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여 '성폭행적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

지 1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모욕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원고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는 등으로 인신공격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또 이 사건 사실 중 원고에 대하여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전제한 다음 다른 사람이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 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실 중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고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표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실 게재 전날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지를 묻고, 피고의 사주가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실 중 원고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 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 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

건 사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원고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및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이고, 이 사건 사실은 원고의 국회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인바, 신문 사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 사건 사실은 원고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

니 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는 언론인의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고, 언론인에게도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피고 사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사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

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양철한
판사 문병찬

[별지 1, 2 생략]

[별지 3]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명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이라고 특정 직업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이 만일 “의사들이 몇명이나 성매매하다 걸렸는가” “소방관들을 성교육 시켜라” “택시기사들의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보라. 김 의원의 전화는 항의로 마비되고 김 의원의 집앞과 국회 사무실은 의사, 소방관, 택시기사들의 항의 시위로 넘쳐났을 것이다.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김 의원에게 남편이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인가 김 의원 남편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명이냐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다고 해보자.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자녀들이 그 국회의원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 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垂直)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暴言)이 나온 것이다. “기자들에게 소주 사줘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 답다. 김 의원은 무명(無名)의 자신을 출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 의원 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黑色)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외국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 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본판례]

공인의 비리를 보도하면서 언론사가 객관적인 입증 노력없이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했다면,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원고는 요코하마 전 시장으로서 국민은 원고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판단할 때 사생활까지도 포함하여 그 활동이나 발언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각 기사는 정치가인 원고의 행적이나 발언, 요코하마시장 재직 당시 원고에 의한 공금의 취급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사실인 동시에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비록 기자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취재를 통해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취재에 응하기까지의 경위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이고, 피해자를 기자에게 소개해 준 다른 취재원들 또한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반 시장파의 정치인이므로 이와 같이 입수된 정보나 소개받은 취재원에 근거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신빙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취재 등 객관적인 입증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기자가 주요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 고 : 고노타로(甲野太郎)

피 고 : 주식회사고단샤(講談社)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8(ワ) 제31252호

사 건 명 :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연월일등 : 2010. 10. 29. 민사제25부판결

재판내용 : 일부 인용 · 항소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10조 · 723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엔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죄광고를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주간현대(週刊現代)」에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사실의 개요

본건은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현대의 2007년 11월 10일호, 11월 17일호 및 12월 1일호에 게재된 각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들 각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입은 손해 5,000만엔과 변호사 비용 상당액 500만엔을 합쳐 총 5,500만엔의 지불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가. 다툼이 없는 사실 등(증거 등을 제시한 부분 이외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1) 당사자 등

(가) 원고는 2002년 4월 요코하마 시장에 당선되어 2007년 당시 시장직에 있던 자로 현재는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잡지 및 서적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주간현대」를 발행하고 있다.

(다) 하루나 아키오(春名昭男·이하 「하루나」로 한다)는 교도(共同)통신사 기자출신으로 2007년 당시 프리저널리스트로서 「주간현대」에 기고를 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주간현대 2007년 11월 10일호 표지에 「음란 미팅 고노타로 시장, 동료 시의원에게 협박」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동 제목의 기사를 게재(이하 「본건 제1기사」로 한다)하였다. 본건 제1기사는 「제물이 된 간호학교생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날날이 파헤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기사 2페이지의 상단 3분의 1에는 원고가 소파에 앉아 4명의 여성에게 좌우로 둘러싸여 V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하 「본건 게재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 전반부분에는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발언형식으로 「고노 시장은 여염집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주도록 마스크 관계자나 지원자들에게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팅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지요.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여성에게 난폭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고노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행위를 당했다는 전간 호학교 여성(이하 「피해여성A」로 한다)의 발언형식으로 당해 미팅(이하 「본건 미팅」으로 한다)은 요코하마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저녁 6시~7시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미팅 중 키스를 강요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사 후반부분에는 요코하마 K시의원의 증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렴치한 고노 시장의 난행을 듣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2007년 3월 원고가 사무실로 찾아와 무서운 표정으로 「일부러 항간에서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자세라면 선거를 응원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얼마 후에는 고노 시장의 지인인 오토야마 사다오(乙山貞夫·이하 「오토야마」로 한다)로부터 「고노 시장을 모욕한데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는 여성 관계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도록 협박을 받았다」

(3) 피고는 주간현대 2007년 11월 17일호 표지에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고노타로 파렴치 추궁 제2탄!」이란 제목을 게재하고, 「파렴치 철저 추궁 제2탄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43세의 고노. 공금횡령의혹, 검은 인맥」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본건 제2기사」로 한다)를 게재하였다. 본건 제2기사는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요코하마시장과 그의 최대의 지원자인 요코하마시의 거물실업가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본지가 포착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2페이지 중앙에는 지면의 반 이상 크기로 본건 게재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사진 왼쪽 위에는 「간호학생미팅」을 즐기는 고노시장이라는 설명을 표시했다. 기사의 전반부분에는 피해여성A의 발언내용을, 후반부분에는 “2006년도 요코하마시 포괄외부감사보고서(이하 「본건 보고서」로 한다)에서 감사인이 요코하마항의 국제여행센터미널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로 한다)에 대해 ‘부적절’이라고 판단했으며, 정도를 넘은 횡령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또한 「본건 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업무는 요코하마시 항만국으로부터 사단

법인 요코하마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로 한다)에 위탁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진흥협회가 항만국에서 수탁한 업무를 민간의 S사에 재위탁하여 약 4,700만엔이라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도하였다. 본건 제2기사에는 「관리업무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라는 도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도표는 진흥협회와 진흥협회 A 부회장이 약 4,700만엔을 횡령하고 정치자금 행사를 개최하여 원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가 진흥협회에 지불한 관리업무위탁비가 A 부회장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마치 원고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4) 피고는 표지에 「음란시장 추궁 제3탄!, 고노타로는 해외공무를 소홀히 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 ‘호스티스 접촉」이라고 게재하고 동일한 내용의 제목을 붙인 기사(이하 「본건 제3기사」로 하며,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와 합쳐 「본건 각 기사」로 한다)를 게재한 주간현대 2010년 12월 1일호를 발행하였다. 본건 제3기사는 “고노시장의 음란한 미팅, 공금횡령의혹에 이어 공무방기 사실을 적발했다. 인기보컬·댄스 그룹인 EXILE의 멤버와 함께 록본기(六本木)의 클럽(이하 「본건 클럽」으로 한다)에서 몹시 취한 그는 여성의 허벅지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다. 더구나 그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해외시찰로 미국에 가 있어야 할 처지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본건 제3기사에는 「마지막 순간의 취소로 4일간의 기념사업 망쳐」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가 2007년 10월 25일 심야에 본건 클럽에 EXILE의 멤버와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1인당 1시간에 25,000엔의 최고급 룸에서 음란한 소동을 벌인 사실, 원고는 원래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미국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 출장을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샌디에고 방문은 중요한 행사였다는 사실, 원고측은 출장 직전인 동월 24일 갑자기 해외시찰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로 ‘샌디에고는 큰 산불로 자매도시제후 50주년 기념 일정을 단념했다’고 발표한 사실 등이 게재되는데 이어,

전 자민당 요코하마 L시의원의 발언형식으로 “고노 시장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지만 시의원들을 포함한 약 80명의 교류단은 전원 샌디에고의 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화재를 이유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게재하였다.

(5) 본건 각 기사는 피고인 주간현대 편집부(이하 「피고편집부」로 한다)의 편집자 나츠메 가즈오(夏目和男·이하 「나츠메」로 한다) 및 아키토 마사오(秋本正男·이하 「아키토」로 한다)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했다.

나. 쟁점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원고는 본건 각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명예감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본건 각 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 및 의견의 기술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원고의 명예감정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감정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본건 각 기사의 게재 등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공직의 지위에 있었고 본건 각 기사는 원고의 공적·사적인 생활태도, 행실에 관한 것으로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의 전반부분의 적시사실은 공소제기에 이르기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피고편집부는 지금까지 깨끗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온 원고가 실제로는 그러한 이미지를 뒤엎는 행실을 해왔다는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전해주고 원고에게는 쇄신과 자각을 촉구할 목적으로 본건 각 기사를 집필, 편집, 게재한 것이며 그 발행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각 기사의 기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는 오로지 화제성만을 이유로 본건 각 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한데 지나지 않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진실인가, 또는 피고에게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가) 피고의 주장

본건 각 기사의 주요한 전달사항 및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피고편집부가 충실한 취재활동에 의해 알아낸 사실이며, 모두가 진실이다. 가령 진실이라는 입증에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편집부는 충실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재에도 실수가 없었고 피고에게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충분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1) 본건 제1기사 및 본건 제2기사의 전반부분에 대하여

아키모토 및 피고편집부 소속의 기자인 후유키 아키오(冬木明男·이하「후유키」로 한다)는 2007년 9월 이후 복수의 요코하마 시의원을 통한 취재에서 원고가 미팅에 몰입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년 10월 상순에는 M요코하마 시의원에게 상기 정보에 관한 취재를 했다. 동월 17일에는 M시의원, K시의원 및 N시의원을 상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때 K시의원으로부터 동인이 원고에게 미팅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를 했다가 거꾸로 원고가 협박을 하면서 뜻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본건 제1기사의 후반부분에 기재되어있는 내용과 같은 강요행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때 피고편집부는 K시의원으로부터 서약서의 사진과 협박당하는 모습을 녹음한 내용을 제출받았다. 또한 아키모토 및 후유키는 동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K시의원 및 N시의원 동석 하에 피해

여성A에 대해 5시간에 걸쳐 직접 취재를 했는데, 피해 여성A의 진술태도는 진지했고 막힘없이 합리적이었으며 직접 체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진술내용도 극히 상세했으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었다.

2) 본건 제2기사의 후반부분에 관하여

하루나는 2007년 3월 상순경 대형언론사의 간부로 부터 본건 보고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를 근거로 복수의 요코하마 시의원을 취재하여 본건 보고서를 입수했으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온 항만시설 등을 현지취재했다. 하루나는 진흥협회 A부회장이 원고의 유력한 후원자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편집부가 공동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다. 하루나는 2007년 9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M시의원, O시의원, L 전 시의원 등 외에도 현직 요코하마시 직원, 직원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하루나는 가나가와 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의 정치자금수수보고서를 입수하여 A부회장이 원고에게 거액의 기부를 하고 있는 한 정치단체의 중심인물임을 확인하고, 2007년 10월 하순에는 본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후유키는 같은 시기 A부회장에 대해 직접 취재를 했다. 더욱이 본건 보고서에는 본건 제2기사에 기재된 「재하청」, 「거액수익」, 「가로채다」 등의 기재는 없으나 동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진실을 전제로 한 공정한 논평이다.

3) 본건 제3기사

피고편집부는 2007년 11월초 원고가 동년 10월 25일 밤에 본건 클럽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건 클럽을 방문하여 원고를 접대한 여러 여성종업원을 직접 취재했다. 취재반은 예정대로 샌디에고의 기념식 전 등에 참석한 L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 더욱이 원고가 공무원인 샌디에고 시찰에 집중하지 않고 본건 클럽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음이 진실이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본건 제3기사에서 원고가 요코하마시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견을 표

명한 것은 공정한 논평이다.

(나) 원고의 주장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 아니며, 본건 각 기사의 원인인 주된 취재원은 M시의원을 위시하여 모두가 요코하마 시의회에서 원고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로 그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객관적인 입증취재나 반대취재도 하지 않은 채, 화제성만을 이유로 본건 각 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적시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1) 본건 제1기사에 관하여

본건 제1기사에 관련한 취재대상은 익명의 피해여성A 등으로 익명으로 그 실제 자체도 의심스럽고 구체적인 취재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것은 취재원이 모두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요코하마 시의원 등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의 취재결과가 신빙성에서 부족함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장에 함께 있던 자에 대한 취재나 원고에 대한 반대취재 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건 게재 사진은 차를 마시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촬영된 것이며 미팅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본건 제2기사에 관하여

본건 보고서는 항만국에 의한 발주금액 총합계과정의 미비점에 대하여 설계서의 작성·점검을 요구한 것이며 본건 제2기사에 있는 것과 같은 「재하청」, 「거액수익」, 「4,700만엔을 가로채다」 등을 지적한 기재는 없으며 이 감사보고를 받고 2007년 9월 26일까지 발주금액 총합계과정의 미비점은 개선되었으며, 4,700만엔의 재위탁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항만국의 조사에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관리업무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원고를 후원하는 정치단체는 요코하마 시내 각 계각층의 유지들로 결성된 모임이며, A부회장은 모임이 결성될 때 일을 거둔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3) 본건 제3기사에 관하여

원고가 본건 클럽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나 놀기 위한 것이 아니며, EXILE과의 만남은 샌디에고 해외시찰이 중지 결정된 이후이며 이 일로 해외시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또한 L 전 시의원은 시장선거 등에서 기본적으로 원고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어 그의 증언은 원고가 이유 없이 공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는 요코하마시 담당직원, 로스 앤젤레스 일본 총영사관, 샌디에고시의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취재를 하지 않았다.

2. 법원의 판단(다툼이 없는 사실, 증거로 제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가.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하여

(1) 본건 미팅기사에 관하여

본건 미팅기사는 제목이나 기사에서 ‘간호학생이 희생물’, ‘음란미팅 요코하마시장’, ‘파렴치’ 등의 문언과 본건 게재사진이 게재되는 등 그 소재목의 표현이나 피해여성A의 발언내용 기재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수년전에 참가했던 미팅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잡지의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당해 기사의 의미내용을 해석하여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최고재판소 1956년 7월 20일 제2소법정 판결), 당시 원고가 요코하마 시장이라는 공직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건 미팅기사의 적시사실이 원고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 본건 협박기사에 관하여

본건 협박기사에서는 ‘고노씨가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 ‘서약서를 쓰라고 협박당했다’, ‘격한 어조로 몰아세우는 모습’ 등의 문언이 사용되고 있으며 C의

원의 발언내용의 기재와 어울려서, 원고가 본건 미팅을 포함한 파렴치한 난행(亂行)에 대해 주의를 준 C의 원을 협박하여 다시는 원고의 여성관계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도록 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본건 협박기사는 원고가 그의 부적절한 행위를 충고한 자에 대해 협박 내지 강요로 평가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준 것이며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건 공금횡령기사에 관하여

본건 공금횡령기사에서는 큰 제목이나 소제목 등에 ‘공금횡령의혹’, ‘재하청’, ‘도를 넘는 횡령’ 등의 문언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표나 기사내용을 볼 때, 원고의 유력한 지원자인 A부회장이 실권을 잡고 있는 단체가 요코하마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재하청하여 요코하마시로부터 받은 업무위탁비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취득했으며 그 자금이 당해 유력지원자를 통해 원고에게 환류(還流)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요코하마시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자신의 유력한 지원자에게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는 본건 공금횡령기사에서의 ‘공금횡령의혹’, ‘재하청’ 등 표현이 피고편집부의 의견논평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독자의 통상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표현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의견논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본건 공무방기(放棄)기사에 관하여

본건 공무방기기사는 큰 제목이나 소제목에서 ‘해외시찰을 소홀히 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 호스티스 만지기’, ‘갑작스런 취소로 4일간의 기념사업 망쳐’, ‘해외공무를 방기하고’ 등의 문언을 반복해서 사용하

고 있어, 그 기사내용과 합쳐서 생각하면 동 기사는 원고가 공무원 샌디에고 방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카바레식 클럽에서의 놀이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는 원고가 공무를 방기하고 본건 클럽에서 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진실이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편집부가 원고는 요코하마시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견표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원고는 본건 각 기사에 의해 명예감정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본건 각 기사의 게재 등이 오로지 공공의 도모할 목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이른바 미팅에서의 원고의 행적 등 원고의 사생활상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사인(私人)의 사생활상의 행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이를 통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는 평가의 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81년 4월 16일 제1소법정 판결). 본건 각 기사가 게재된 주간현대가 발행된 당시 원고는 요코하마 시장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민은 그러한 원고의 자질이나 적성 등을 판단할 때 사생활상의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활동이나 발언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각 기사는 정치가인 원고의 행적이나 발언, 요코하마시장인 원고에 의한 공금의 취급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본건 각 기사의 적시사실은 모두가 공공의 이

해에 관련한 사실인 동시에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본건 각기사의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에게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1) 본건 미팅기사에 관하여

(가)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 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최고재판소 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러면 본건 미팅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의 진실성 유무 및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본건 미팅 기사를 집필, 편집, 게재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아키토모 및 후유키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19일 심야에 걸쳐 본건 미팅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본건 미팅기사 내용과 같은 음란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여성 A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취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해여성 A가 본건 미팅기사 게재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아키토모와 K시의원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N시의원의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때의 취재메모 등 객관적인 취재내용을 명확하게 밝힐 아무런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취재에서 피해여성 A가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본건 미팅기사의 내용은 통상 제3자에게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화제임이 명백하며, 증인 아키토모의 진술을 전제로 한다면 본건 미팅의 참가자는 본건 미팅에 관해 오토야마로부터 단단히 함구령이 내려져 다른 참가자도 오토야마가 두려워 입 밖에 낼 수 없는 화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 A가 K시의원의 주선으로 전국적인 주간지의 갑작스러운 취재요청을 받고 이에 즉각 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여성 A의 말을 전제로 하면, 그때까지 수년간 이러한 음란행위의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공표한 일이 없는 그녀가 K시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주간지의 취재에 응해 본건 미팅에서의 원고의 음란행위를 외부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의하기까지 이른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여성 A가 실제로 본건 미팅기사 게재와 같은 사실을 체험한 인물인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여성 A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여성 A가 본건 미팅기사 게재의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건 미팅기사의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아키토모는 피해여성 A에 대한 직접취재를 했음이 인정되는바, 아키토모는 피해여성 A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여성 A의 진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여성 A가 취재에 응하기까지의 경위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이고, 피해여성 A를 소개한 M, K, N시의원은 모두가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반 시장파의 정치인이고, 아키토모도 원고와 이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M시의원의 경우 본건 미팅기사에 관한 취재 이전부터 인터넷상의 자기 게시판에 ‘(원고)는 극단적인 2중인격자입니다’, ‘(원고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써넣기도 하는 등 그 대립상황도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로 대립하는 영역을 넘는 양태를 보여 왔음이 인정된다. 아키토모도 그때까지의 취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해 상기와 같은 M시의원의 원고에 대한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건 미팅에 관한 정보는 M시의

원이 개입하여 K시의원으로부터 아키토에게 전달되었다. 피해여성A도 K시의원의 소개로 아키토 등의 취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편집부는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K시의원 등과는 별도로 본건 미팅에서의 원고의 음란행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와 같은 M시의원 및 K시의원과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편집부는 이와 같이 입수된 정보나 소개받은 취재원에 근거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 신빙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키토의 증언을 전제로 하면, 아키토는 피해여성A로부터 본건 미팅이 이루어진 일시를 들었다고 하므로, 이 점과 관련한 입증취재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토가 행한 입증취재는 피해여성A가 본건 미팅의 장소라고 설명한 호텔방을 현지 취재하면서 방의 배치가 피해여성A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뿐이며, 원고의 당해 일정의 활동 기록이나 호텔에 원고와 관련된 인물의 예약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여성A 이외에 본건 미팅에 참가한 자에 대한 취재도 전혀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아키토는 그 밖에도 ①2007년 6월부터 동년 9월 까지의 사이에 요코하마 시의원, 시 관계자, 국정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를 취재하여 거의 전원으로부터 원고가 여성을 좋아하고, 미팅으로 낱을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고 ②간호학교생으로부터 본건 게재사진을 취득하여 동사진에 올라있는 간호학교생을 직접 취재한 결과 본건 게재사진이 촬영될 때에도 원고와 미팅을 하고 있었으며 장소도 본건 미팅과 동일한 호텔이며, 원고와 왕계임을 즐기면서 키스를 당한 여성도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기 ① 및 ②의 취재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취재가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취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①의 취재결과 취득된 정보는 아키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날짜와 참가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정

보이며 소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②에 대해서도 본건 게재사진이 미팅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본건 미팅의 참가자도 아닌 간호학교생의 진술을 가지고 원고의 피해여성A에 대한 음란행위의 존재 여부·내용을 입증할만한 정보가 취득되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본건 미팅기사에 있어서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2) 본건 협박기사에 관하여

(가) 피고는 본건 협박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협박기사에서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K시의원은 2007년 2월 25일 회합에서 원고에게 ‘시장은 간호학교에 갔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실, 동년 3월 7일에는 원고로부터 ‘나의 귀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항간에서 떠도는 너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 간호학교에 출입하느냐 어쩌냐는 것도 일일이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 ‘네가 그러한 자세로 나온다면 너의 선거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고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는 사실, 동년 3월 18일에는 오토야마로부터 혈서를 쓰라는 위압적인 전화를 2회나 받아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증거로 서약서의 사진 및 협박의 모습을 녹음한 IC녹음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K시의원의 전기 진술에 의해서도 그가 2007년 2월 25일의 파티석상에서 원고에게 파렴치한 난행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K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원고가 K시의원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 증거로 제출한 서약서의 문구를 보더라도 K시의원이 원고의 여성관계를 탐구한다는 서약을 목적으로 동 서면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IC녹음기의

녹음내용도 그 내용자체가 무엇에 대한 거래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와 K시의원 간의 전기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2기 시의원선거 직전이고 증거에 의하면 K시의원은 동 선거에서 원고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K시의원이 전기와 같은 발언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K시의원의 전기 진술내용은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으며, 본건 협박기사 게재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아키토모는 본건 협박 기사를 집필, 편집함에 있어서 K시의원을 직접 취재하여 IC녹음기와 본건 서약서의 사진을 확인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K시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K시의원은 본건 서약서가 작성된 당시에는 원고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시의원선거에서는 원고의 추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에는 원고가 소속한 정당을 탈당하여 본건 취재당시에는 원고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K시의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으나 피고는 오토야마나 원고에 대한 충분한 반대취재 등 객관적인 입증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본건 협박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본건 공금횡령기사에 관하여

(가) 본건 공금횡령기사는 주로 하루나가 취재 및 집필했는데, 피고는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에 대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본건 보고서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진흥협회에 지출된 업무위탁비와 진흥협회에서 S사에 지출한 재위탁비 사이에 약 4,700만엔의 차액이 생기고 있고 발주금액의 산출과정이 부정절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그 차액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지적은 없다. 더욱이 진흥협회에 들어온 금전이 원고의 정치후원단체를 통해 원고에게 환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어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하루나는 본건 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본건 보고서를 취득한 후의 취재과정에서, 진흥협회에 원고의 유력한 지원자인 A부회장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A부회장이 소속한 별개의 단체가 원고의 정치자금 파티를 베푼 사실이 발각된 것을 근거로 본건 횡령 기사를 집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나와 피고 편집부는 항만국이나 진흥협회에 대한 직접취재 등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적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았으며 A부회장에 대한 직접취재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본건 공금횡령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본건 공무방기기사에 관하여

(가) 피고는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집필, 편집,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공무방기기사에서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나) 진실성에 관하여

원고는 2007년 10월 25일에 샌디에고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샌디에고 주변에서 일어난 산불로 방문을 중지한 것이며 샌디에고측의 이해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주요한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상당성에 관하여

본건 공무방기 기사를 집필함에 있어서 아키토모는

본건 클럽에서 원고를 접대한 여성종업원을 상대로 취재했고, 하루나는 L시의원에 대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키토모의 취재는 원고의 샌디에고 방문이 직전에 취소된 사실 및 방문이 예정된 날에 원고가 연예인과 함께 본건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샌디에고 방문을 취소, 공무를 소홀히 하고 본건 클럽에서 호화롭게 놀았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요코하마시 측에 대한 문의 등 아무런 보강취재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는 본건 공무방기기사의 주요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이상에 의하면 본건 각 기사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집필, 편집, 게재에 관여한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주문에 올린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64조 본문, 61조를, 가집행의 선언에 대해서는 동법 259조 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판례타임즈』 1359호/P.188~202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판례]

해당 방송으로 인해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은 기각된다.

(Arenas VS Shed Media US Inc.)

〈판결 요지〉

가. 원고의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¹⁾에 기반한 공공의 이익과 원고의 사생활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같은 농구 선수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며, 원고에 대한 언급은 방송의 전체적인 즐거리를 볼 때 부수적인 부분이며 핵심은 원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와 연인관계이던 여성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전 여자친구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이 명예훼손이거나 거짓된 발언이라는 것, 이 프로그램이 원고에 관해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의 행위는 퍼블리시티 권 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고가 원고의 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또한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원고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해당 방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관한 과거 신문기사나, 트위터에 올린 글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을 때 원고의 명성은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된다

1)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실추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중앙지법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원고 : 길버트 아레나스

피고 :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 등

사건번호 : 2:11-cv-05279-DMG-PJW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2일

결론

이 사건은 원고 길버트 아레나스(Gilbert J. Arenas, Jr.)의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기각 요청에 관한 것이다. 심리는 2011년 8월 22일에 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측의 변론서와 구두 변론 등 입장을 들은 후, 법원은 판결을 선포한다.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피고의 항변은 인정한다.

이유

아레나스는 ‘Agent Zero’, 혹은 ‘Hibachi’ 라는 별명을 가진 Orlando Magic 소속의 프로농구선수이다. 그는 2001년 이래로 NBA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NBA ‘올스타상’을 세 번, 2003년에는 ‘NBA에서 가장 향상된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레나스와 고반은 이전에 연인 관계였고 네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다.

쉐드 미디어는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란 프로그램을 케이블 방송인 VH1에서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프로 농구 선수들과 연인관계였거나 현재 연인관계인 여성들이 출연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은 출연진과 농구선수의 관계, 그녀들의 인생에 대한 것이다. 그녀들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농구 선수들이 언급되긴

하나 전체 줄거리에서 선수들이 그녀들만큼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구선수의 아내들>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농구선수의 아내들 : 로스앤젤레스(BWLA)>편은 2011년 8월 29일 첫 방영이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농구선수의 아내들>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다.

고반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계획인데, 아레나스는 자신의 인적사항(identity)이나 트레이드마크(trademarks)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의 보도자료에서는 고반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팀의 농구선수인 매트 바네스(Matt Barnes)의 약혼자인 글로리아 고반의 언니라고 밝혔다.

아레나스는 쉐드 미디어와 고반에 대해 Lanham법 15조를 근거로 트레이드마크 침해, 트레이드마크 오염, 거짓 홍보와 거짓 보증 등의 이유로 4개의 소송을 신청했다. 또한 아레나스는 피고에게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UCL)은 물론이고 보통법과 법으로 정해진 유사성의 남용과 퍼블리시티권에(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344)대해 책임을 묻고자 본건 소송을 했다.

2011년 6월 23일, 아레나스는 피고 쉐드 미디어, 로타 고반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2011년 7월 25일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쉐드 미디어는 2011년 8월 1일,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반SLAPP법을 근거로 기각을 요청했다. 2011년 8월 8일, 아레나스는 반박서를 제출했고, 2011년 8월 15일에는 쉐드 미디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I.

1. 예비적 금지명령

금지명령구제를 청구하고자하는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만 한다. ① 금지명령구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가치가 타당해야 하며, ② 금지명령구제의 부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야 하고, ③ 원고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④ 구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Toyo Tire holdings of Arms, Inc. v. Cont'l Tire N. Am., Inc., 609F.3d975, 982 (9th Cir. 2010) (Winter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555 U.S. 7, 20, 129 S.Ct. 365, 172 L.Ed.2d 249(2008)참조).

구제는 또한 원고가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금지의 부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금지가 공공 이익에 부합함을 보여준다'는 것에 적합해야 한다(Alliance for the Wild Rockies v. Cottrell, 632 F.3d 1127, 1135 (9th Cir. 2011) (Lands Council v. McNair, 537 F.3d 981, 987 (9th Cir. 2008)참조).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법원의 권한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또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한 후에만 가능하다.' (Salazar V. Buono, US, 130 S.Ct. 1803, 1816, 176L.Ed.2d 634 (2010)).

2. 반SLAPP법²⁾

캘리포니아의 SLAPP를 금지하는 법인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425.16은 '비용 및 시간 소모적인 소송제도를 단순한 위촉목적으로 이용하는 소송의 조기 각하'를 허용한다(Northon v. Rule, 637 F.3d 937, 938 (9th Cir. 2011) (Gardner v. Martino, 563 F.3d 981, 986 (9th Cir. 2009) 참조). 반SLAPP법에 따르면 피고는 다음의 상황에서 특별한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피고의 행동 이유가 연방 혹은 주법에서 보호

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거한다, ② 피고의 행동은 공공의 화제와 연관이 있다, ③ 원고는 그의 승소 근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Cal. Civ. Proc. Code 425.16(b)).

승소 근거를 입증하기위해 원고는 '법적 관점에서 판결에 사용된 발의와 비교할만한' 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Price v. Stossel, 620 F.3d 992, 1000 [38 Med.L.Rptr.2153] (9th Cir. 2010) Metabolife Int'l Inc. v. Wornick, 264 F.3d 932, 940 [29 Med.L.Rptr.2505] (9th Cir.2001)참조). 따라서 원고는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신뢰할만하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하고 법적 사실이 처음 볼 때 진실되게 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Metabolife, 264 F.3d at 840 참조). 만약 원고가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의 반SLAPP법은 허용된다 (Metabolife, 264 F.3d at 840 참조).

II.

1. 아레나스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아레나스는 보통법의 의사 부정유포의 다섯 번째 조항과 상표 침해에 대한 첫 번째 소권을 바탕으로 금지명령구제를 신청했다. 그는 피고의 다음 행위를 금했다. ①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의 상표권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하여 고반이 프로그램이 출연하는 것, ②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나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용어도 프로그램의 제목, 예고편 혹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2) 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소송으로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유도하는 소송이다. 이에 반SLAPP법(Anti SLAPP)이 제정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2년 이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또는 비정부단체를 상대로 공적 토의 가치가 있는 논점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인해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소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를 청구하면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에 의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표현의 자유와 법으로서의 명예: 미 캘리포니아 주 반부패소송 법익의 한국 수용 가능성, 이우영, 신아시아연구소, 2003)

사용하는 것, ③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둘 이상의 참가자들을 출연시키는 등 농구선수들과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 아레나스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

(1) 보통법상의 인격권 침해

캘리포니아의 보통법은 ‘유명인 등 상업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의 인격권(Identity)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Hoffman v. Capital Cities/ABC, Inc., 255 F.3d 1180, 1183 [29 Med.L.Rptr. 1993] (9th Cir. 2001) (Waits v. Frito-Lay Inc., 978 F.2d 1093, 1098 [20 Med.L.Rptr. 1585] (9th Cir.1992) 참조)).

상업적 도용에 관한 보통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한다. ① 피고가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용함, ② 원고의 이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부정 유용함, ③ 사전 동의의 부재, ④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이다(Stewart v. Rolling Stone LLC, 191 Cal. App. 4th 664, 679, 105 Cal. Rptr. 342 [10 Med.L.Rptr. 1073] (1983)참조).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아레나스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박할 수 없다.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아레나스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고려한다. 따라서 아레나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수정 헌법 제1조를 들어 반박한 것과 위의 ①, ②에 집중적으로 국한하여 분석한다.

(가)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아레나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현재의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 아레나스는 BWLA 프로그램 방영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쉐

드 미디어의 진술과 예고편에 기반해 프로그램의 성격을 추측한다. 아레나스가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홍보물에서 원고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쉐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미래의 홍보물에서는 원고와 고반의 과거의 관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반이 BWLA에 출연해 아레나스와 과거의 관계에 대해 말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프로그램의 초점이 여성 출연진들이라 할지라도, BWLA가 The Real Housewives of Orange County 등의 다른 리얼리티쇼와 차별되는 점은 출연진들이 아레나스와 같은 프로 농구선수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고반이 아레나스에 대해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레나스의 유명인으로서의 명성과 관계가 되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한다.

아레나스는 ‘인격권’이라는 말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White v. Samsung Elecs. Am., Inc., 971 F.2d 1395 [20 Med.L.Rptr.1457] (9th Cir.1992);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698 F.2d 831 [9 Med.L.Rptr. 1153] (6th Cir. 1983) (applying Michigan common law); Motschenbacher v. R.J. Reynolds Tobacco Co., 498 F.2d 821 (9th Cir. 1974) 참조).

일반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옳다.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463 [15 Med.L.Rptr. 1620] (9th Cir.1988) (Motschenbacher, 498 F.2d at 824) 참조).

유명인의 인격권 침해가 중요한 이유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그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그와 관련된 서명이나 기호들을 직, 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긴 가운을 입고 금발의 가발을 썼으며 큰 장신구를 한 여성의 형태를 갖춘 로봇’이 Wheel of Fortune 게임

세트처럼 보이는 게임 판에서 목판 글자를 뒤집는 것이 여성 영화배우인 Vanna White을 떠올리게 함은 분명하다(White, 971 F.2d at 1399). 마찬가지로 Johnny Carson's의 문구인 'Here's Johnny'는 카슨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Lothar Motschenbacher의 경주용 차량에 특별하게 새겨진 표식이 운전자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만약 유명인으로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명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Carson, 698 F.2d at 837).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레나스의 이름을 <농구선수의 아내들>의 맥락 속에서 사용했다. 만약 그렇다면 고반이 BWLA에서 아레나스를 지칭하기 위해 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가 유명한 농구선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레나스는 상업적 부정 유용에서 첫 번째 두 항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BWLA의 프로그램 제목과 고반의 BWLA 출연이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권 혹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녀가 출연하여 아레나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은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녀의 출연이 아레나스의 유명인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고반은 다른 농구 선수 부인의 언니이다. 이로 인해 아레나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도 그녀의 출연 동기는 설명가능하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고반을 그녀의 여자 형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국한시켰다.

아레나스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된 같은 날, 다른 언론에서는 고반과 아레나스의 관계에 대해 밝히며 이것으로 피고가 취할 이익과 원고의 손해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이 만연하고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큰 오늘날, 유명인들의 관계에 대한

보도는 일상적인 언론의 행동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대선 준비단계에서 당시의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체니의 먼 친척이었음이 널리 보도되었는데 이는 두 당사자 모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다(Hassani Gittens, *Dissing Cousins: Obama, Cheney, Bush Related*, N.Y. Post, Oct. 17, 2007, at 12.).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BWLA에서 고반은 아레나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삼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전혀 사실로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농구선수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언급될 수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 남자친구라는 점에서 매우 어색한 일이다.") 고반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레나스에 대해 어떤 점이었던 말하고 싶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고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레나스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프로그램이 아레나스보다는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애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사실 여부이다." (White, 971 F.2d at 1398). Midler 사건에서 포드 자동차는 출판 광고물에서 Bete Midler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유명 여가수'는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의 목소리가 Midler의 목소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Midler, 849 F.2d at 461).

고반의 BWLA출연이 아레나스의 다른 상표는 차지하더라도 그의 이름을 부정 유용했다는 점은 그럴듯하다. 법원은 다음으로 부정 유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항하는 다른 항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피고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항변

캘리포니아 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다음의 두 적극적인 항변에 직면한다. '변

형적 이용' 항변과 '공공의 이익' 항변이다(Hilton v. Hallmark Cards, 599 F.3d 894, 909 [38 Med.L.Rptr. 1753] (9th Cir. 2010)).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1) 변형적 이용 항변

변용 항변에 해당하기 위해서 피고는 '중요한 변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나 그 가치가 유명인의 명성으로부터 주로 연유한 것이 아니어야 함' 을 입증해야한다(Comedy III Prods., Inc. v. Gary Saderup, Inc., 25 Cal. 4th 387, 407, 106 Cal. Rptr. 2d 126 [29 Med.L.Rptr. 1897] (2001)).

[변형적 이용 항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위는 매우 넓다. 즉, "수정헌법 제1조와 퍼블리시티권 사이의 이익형량"이다(Winter v. DC Comics, 30 Cal. 4th 881, 885, 134 Cal. Rptr. 2d 634 [31 Med.L.Rptr. 1774] (2003)).

이익형량은 "법원이 이른바 피고의 표현행위가 크고 명백하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표현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물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하도록 한다"(Kirby v. Sega of Am., Inc., 144 Cal. App. 4th 47, 61, 50 Cal. Rptr. 3d 607 [35 Med.L.Rptr. 1075] (2006)).

행위의 가치가 주로 유명인의 명성이라기보다 창조자의 창의성, 능력 등 다른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변형적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Comedy III Prods., Inc. v. Gary Saderup, Inc., 25 Cal. 4th at 407).

반면, 창조자의 기술이나 재능이 유명인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의 평소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명백히 주목적이 있다면, 창조자의 표현의 자유권보다 퍼블리시티권이 우선한다.]

현재 기록에 따르면 BWLA에서 아레나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른 부

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농구 선수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구 선수들과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변형적으로 보인다.

아레나스는 BWLA가 그의 인격권을 "오직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Vanna White v. Samsung videocassette recorders나 Bette Midler v. Ford cars 와는 달리, 아레나스와 BWLA에는 분명한 관계가 존재한다.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프로그램은 농구 선수와 사귀었거나 그와 결혼한 여성에 대한 것이다. 아레나스는 BWLA의 출연진 중 한명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아레나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슈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항변을 무효로 할 만큼 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2) 공공의 이익 항변

공공의 이익 항변에서는 "언론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공중이 알아야 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다."임을 강조한다(Hilton, 599 F.3d at 912 (Montana v. San Jose Mercury News, Inc., 34 Cal. App. 4th 790, 793, 40 Cal. Rptr. 2d 639 [23 Med.L.Rptr. 1920] (1995)참조)).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항변은 '최근의 거의 대부분의 보도'와 '개인의 성취, 삶의 방식, 전문직이나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고 적법한 주목을 끌 수 있는 사람' 에까지 확장된다." (Downing v. Abercrombie & Fitch, 265 F.3d 994, 1001 [29 Med.L.Rptr. 1073] (1983)). "성취...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명성이나 악명... 프로 운동 선수와 같은... 이들은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적법하다." (Gionfriddo v. Major League Baseball, 94 Cal.App. 4th 400, 410, 114 Cal. Rptr. 2d 307 (2001) (Carlisle v. Fawcett Publ' ns, Inc., 201

Cal. app. 2d 733, 746-47, 20 Cal. Rptr. 405 (1962) 참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는 “시사 뉴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예 오락적 목적의 기사도 사실에 기반을 둔 기사와 같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Stewart, 181 Cal. App. 4th at 681) “공공의 관심은 사람들의 성취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Hilton, 599 F.3d at 912 (Dora v. Frontline Video, Inc., 15 Cal. app. 4th 536, 542, 18 Cal. Rptr. 2d 790 [21 Med.L.Rptr. 1398] (1993) 참조).]

아레나스는 그의 가족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그의 유명세와 충분히 관련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이로 인해 BWLA가 그의 인격권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수천만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레나스가 자신의 문란한 행실에 대해 트위터 글로 말하는 것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레나스는 피고들의 행동은 실질적 악의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어떠한 항변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항변에 퍼블리시티권이 우선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명백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한다(Stewart, 181 Cal. App. 4th at 689). 다시 말하자면,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으며 이는 잘못 알고있거나 진실을 신중하지 못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N.Y.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84 S.Ct. 710, 11 L.Ed.2d 686 [1 Med.L.Rptr. 1527] (1964) 참조).

아레나스는 고반이 프로그램에서 그에 대해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악의가 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심리에서 아레나스는 피고가 BWLA의 홍보물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에 만족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아레나스의 주

장을 프로그램의 맥락상에서 첫째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인물의 이름과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정식 발간물의 부수적인 홍보물에서 진실되게 사용하는 것에까지 헌법적 보호는 확장된다(Cher v. Forum Int'l, Ltd., 692 F.2d 634, 639 [8 Med.L.Rptr. 2484] (9th Cir. 1982) (Guglielmi v. Spelling-Goldberg Prods., 25 Cal. 3d 860, 873, 160 Cal. Rptr. 352 [5 Med.L.Rptr. 2208] (1979) (Birds, J. Concurring) 참조).

따라서 BWLA의 홍보물은, 홍보물에서 공인인 아레나스가 이 프로그램을 허가했다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의 부정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아레나스의 보통법 상 상업적 부정 유포에 근거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럼 이제 원고의 상표권 침해 청구소송에 대해 검토한다.

(2) 상표권 침해

아레나스는 상표권 침해 청구에 대해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침해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의 어떠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아레나스는 ‘GILBERT J. ARENAS, JR., GILBERT ARENAS, GIL ARENAS’ 등에 그의 상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표는 그의 인격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반의 출연과 프로그램의 제목은 원고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피고가 그의 상표를 BWLA의 홍보와 예고편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가) 피고의 <농구선수의 아내들>의 사용

Lanham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주장하려면 원고는 피고가 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여기에서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한다(Fortune Dynamic, Inc. v. Victoria's Secret Stores Brand Mgmt., Inc., 618 F.3d 1025, 1030, 1050 (9th Cir. 1999)).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덟 항목을 각각 증명해야한다.

① 상표의 유사성, ② 원고 고유 상표의 힘, ③ 상품 혹은 서비스의 유사성 혹은 관계성, ④ 피고가 상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 ⑤ 실질적인 혼동의 증거, ⑥ 사용된 마케팅 수단, ⑦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⑧ 피고의 상품 구매자들이 이를 인식하는 정도 등이다(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348-49 (9th Cir. 1979)). 이는 유연하게 적용가능하고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보호에 있어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프로그램의 제목을 통해 아레나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기각된다. 아레나스의 상표권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프로그램 제목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레나스와 <농구선수의 아내들>을 혼동한 시청자는 없고 아레나스는 이러한 실질적 혼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한편 아레나스가 농구 선수들과 사귀었던 여성들에 대한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와 이름 혹은 명성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 즉, 아레나스는 <농구선수의 아내들>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기명의 공정한 사용³⁾

아레나스는 BWLA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다. 미연방 제9항소법원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조항(Sleekcraft Factors)은 피고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

는 물건을 지칭하기 위해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Toyota Motor Sales, USA., Inc. v. Tabari, 610 F.3d 1171, 1175 (9th Cir. 2010) (참조생략)). 이러한 이용에 있어서 “기명의 공정한 사용”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아니며, 기명의 공정한 사용 항변에 있어서 법원은 ① 상품이 상표 없는 상태에서 식별 가능한가, ② 피고가 필요 이상의 상표를 사용했는가, ③ 피고가 상표권의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 명시했는가 등을 고려해야한다.

피고가 실명 이외의 방법으로 아레나스를 지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가 아레나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필요 이상의 말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고반과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가 BWLA에서 아레나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레나스가 프로그램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남자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견해에 남자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레나스는 그의 상표권 침해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아레나스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의 주장 중 어떠한 것도 심각한 의문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금지 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 나머지 사항들 또한 금지 명령 청구 필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 아레나스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의 가능성

아레나스는 만약 금지 구제가 없다면 자신의 명성에 해를 입는데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그는 <농구선수의 아내들> 시리즈를 “부정한 문제들을 다루며”, “드라마적인 측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당당한”, “고양이 싸움”이라 표현했다. 아레나스는 피고가 자신과 관련하

3) 제품과 서비스, 기업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기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여 말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의 명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원고에 대한 신문기사와 그가 작성한 트위터 글을 제출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명성은 본 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된다 하더라도 크게 실추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스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주장을 빌리자면, 가령, 잠재적인 갈등에 아레나스가 공적으로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고양이 싸움”이 아레나스의 평판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아레나스는 2010년 초에 Washington Wizards 라커룸에서 도박 빚에 대해 다투던 중 팀 동료들 총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는 합법한 자격 없이 권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레나스는 트위터에서 여성과 다른 집단들에 대한 견해를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되고 상스러우며 공격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아레나스는 프로그램에 고반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함으로써 그 자신이 이미 이 프로그램에 관여했다. 이러한 트위터 글에서 아레나스는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밝혔다. “고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송출연으로 돈을 벌면 나는 그녀에게 돈을 덜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레나스는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은 다음의 사항을 알지 못한다. 전 부인이나 전 여자친구인 출연진은 농구 선수들이 프로그램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아레나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부인보다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레나스가 이와 같은 고반의 BWLA 출연 예정에 주목하게 만드는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그가 프로그램과의 관련을 통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만든다.

Brandt v. Superior Court, 67 Cal. 2d 437, 443,

62 Cal. Rptr. 429 (1967)를 참조하며 아레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가대 소년’ 이든 아니든, 혹은 ‘아주 명성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 훼손을 당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아레나스의 명성이 법원의 금지 명령 구제가 없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아레나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BWLA와의 관련성이 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다. 이익형량

법원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스웨드 미디어를 지지한다. Washington Post에 보도된 것과 같이, 아레나스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반과 결별한 사실을 밝혔고 이는 “그를 ‘파괴’ 시키기 위해 전 약혼자를 ‘파멸’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미 BWLA에 고반이 출연하는 것을 그 자신과 연관시켜 대중들에게 알렸다. 따라서 본 건 보도로 인한 그의 명성에 대한 잠재적 손해는 미약하다.

반면 스웨드 미디어 그룹은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VH1 채널은 이러한 소송 중에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그들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이는 스웨드 미디어 그룹이 광고 수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정당한 지불도 장담하기 어려우며, 업계 내 명성에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 공공의 이익

마지막으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 “법원은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조에 기반한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Sammartano v. First Judicial District Court, 303 F.3d 959, 974 (9th Cir. 2002)).

비록 대중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약화되는 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든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은 금지명령구제에 우선한다.

2.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반SLAPP청구

아레나스의 퍼블리시티권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중의 관심과 관계된 문제에서 피고의 표현의 자유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에 반SLAPP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의사를 표현하는 성격의 것이었다면 법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Hilton, 599 F.3d at 904.). 이 사건은 명백히 이에 해당한다. 행위가 대중의 관심에 관한 것이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하며 사회적이거나 혹은 저속한 주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항목 또한 충족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웨드 미디어 그룹의 기각 요청을 인정한다.

III.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아레나스의 예비적 금지 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아레나스의 주장에 대한 웨드 미디어 주식회사의 기각요청은 인정된다. 단,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아레나스의 제5행위 원인은 수정의 여지를 남기고 각하된다. 단, 아레나스는 2011년 9월 6일 이전까지 수정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는 변론을 그 이후 15일 내로 제출할 수 있다. 2011년 8월 29일 웨드 미디어의 항소 공판은 이곳에서 인도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 39/P. 2535-2543

번역 : 이슬기(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studies, 석사과정)

외국신문평의회 사례

[영국 사례 1]

실제 있지도 않았던 법정 내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실제처럼 보도한 것은 ‘정확성’ 위반이다.

신청인 : Press Complaints Commission

언론사 : Daily Mail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

불만내용

PCC는 <Daily Mail>지 2011년 10월 3일자 “유죄 : 항소 각하, 망연자실한 Amanda Knox”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이 건 신청은 인용되었다.

언론사는 Amanda Knox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살인죄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Knox는 승소했다. 해당 기사는 2분 정도 게시된 후 삭제, 정확한 판결을 보도한 기사로 대체되었다.

다수의 신청인들은 해당 기사가 판결 내용을 잘못 보도했을 뿐 아니라, 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2명의 젊은이가 감옥에서 머물렀던 것은 슬픈 일이었다” 대신에 “정의는 실현되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백하게 유죄평결을 암시한 점, 또한 “가족,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있는 동안 Knox는 의자에 주저앉아 마구 흐느꼈다”며 법정의 풍경을 가상으로 묘사한 점, “Meredith Kercher의 가족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줄곧 앞을 바라봤으며, 잔뜩 흥분해 있는 Knox의 가족을 한 번 건너다봤을 뿐” 이고, “Knox가 교도소 경비원들에 이끌려 감방 호송 밴이 있는 곳으로 호송

되었으며, 자살에 대비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묘사한 점 등을 지적했다.

언론사는 잘못된 판결 내용이 웹사이트에 90초 가량 게재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사는 이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사전에 2개의 기사를 준비하는 언론사의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먼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후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최초의 몇 개의 뉴스가 잘못된 판결을 보도하게 되었으며, 기사 중 검사의 발언은 관련 재판 전에 검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서, 항소심이 각하되기 전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탈리아 당국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자살 대비 감시를 받게 된다고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실수를 한 기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했고, 독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사과문도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정확한 판결 내용은 다음날 지면에서 보도되었으며, 언론사는 불만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미리 관행적으로 작성해놓는 기사는 단순히 판결 내용과 팩트에 근거한 상황묘사만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한 인용구나 표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에 따르면 언론은 부정

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건에서 언론사는 법정 내에서 혼선이 생김에 따라 항소심 판결 내용을 잘못 보도하였다. 따라서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독자에 대한 설명 및 사과와 함께 정확한 평결을 서둘러 기사화했음을 감안할 때, 제1조 제2항에 따른 균형적이고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건 기사의 판결에 대한 법정 안 사람들의 반응, Knox의 이후 행동에 대한 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사는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보도한 것처럼 묘사하였는데(법정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명백히 허용될 수 없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기사를 작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언론사가 때로 독자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히 재판과 같은 사건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있지도 않았던 법정 내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실제처럼 보도한 것은 강령 제1조 위반이다.

위원회는 잘못된 기사의 게재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불만신청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유사한 사안들에 관한 보도 관행을 바꾼 언론사의 신속한 반응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부정확한 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이후의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사례 2]

여러건의 성범죄 혐의가 있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는 고인을 빗대어 “변태”라고 표현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이다.

신청인 : Rod Hemley

언론사 : Herald & Post (Luton)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

불만내용

신청인(Rod Hemley)은 2011년 9월 28일자 <Herald&Post>지 “L&D(Luton & Dunstable 병원)의 변태, 시체로 발견” 제하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와 제1조(정확성)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제5조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제1조 위반 또한 인정되나, 언론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충분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된다.

언론사는 1면에 신청인의 동성 배우자인 - 스스로 목숨을 끊은 - Ameet Mohabeer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였다. 사망 당시 Mr. Mohabeer는 남성 성추행 13건, 성폭행 4건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전부가 그가 근무 중이던 Luton & Dunstable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변태(pervert)”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할 뿐더러 부정확한 묘사라고 주장하였다. Mr. Mohabeer는 사망 전 범죄를 부인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미 법정에서 Mr. Mohabeer가 무죄임을 항변하여 이에 대한 기일이 몇 달 후로 잡힌 상황이었는데도 2011년 10월 3일이 재판이라고 보도하는 등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보도가 독자들로 하여금 고인이 재판기일이 다가오자 출석을 기피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가 재판기일이라는 쟁점과 관련, 사실관계가 부정확했음을 인정하였고 1면에 정정 및 사과글을 게재하고 온라인 기사도 수정하였다. 그러나 언론사는 여전히 “L&D(Luton & Dunstable 병원)의 변태가 죽은 채 발견되다”라는 해

드라인을 사용하면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였다. Mr. Mohabeer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유일한 피의자였으며, 몇몇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되기 전에 사망했다’ 며 언론사에 연락해 오기도 했고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는 개인의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을 취재할 때는 동정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하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세세한 사실관계는 매우 신중히 보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L&D의 변태가 죽은 채 발견되다”라는 제목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언론사가 Mr. Mohabeer의 죽음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이 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동의하며, 법정 절차를 보도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반응을 보도한 것 또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강령 제5조와 관련한 다른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Mr. Mohabeer는 기사가 게재되기 얼마 전에 사망했다. “변태(pervert)”라는 단어는 매우 경멸적인 구어체 표현인데다, 해당 단어는 1면 기사의 헤드라인에 게재되었다.

사망 당시 Mr. Mohabeer는 용의자였을 뿐 일련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는 없으므로, 위원회는 해당 단어가 용인될 수 없는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재된 이 기사는 보도윤리강령 제5조에 비추어볼 때 신중하지

못한 보도였으므로 이 건 신청을 인용한다.

그리고 언론사는 Mr. Mohabeer의 재판 일자에 대해 오보한 것을 시인했다. Mr. Mohabeer가 10월 3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되어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9월 15일에 이미 법정에서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재판 일정은 2012년 2월 27일로 잡혀져 있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보도했으므로 제1조 위반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정정 및 사과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조치였다.

언론사는 2011년 10월 13일자 1면에 정정 및 사과 기사를 내보냈다. 위원회는 지면 및 크기에 대한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나, 해당 정정보도가 1면에 게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특히 PCC에 사건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정정 및 사과보도를 보도하기 이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사과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언론사가 제1조 제2항에 따라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한다.

[영국사례 3]

사고 후 응급구조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없이 게재해선 안된다.

신청인 : Mrs. Leigh Blows

언론사 : The Northern Echo

인용된 조항 : 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

불만내용

신청인(Mrs Leigh Blows)은 The Northern Echo가 게재한 2개의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5조(슬픔 및 충격에의 침해)를 위반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2011년 7월 4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상에 추락한 파일럿, 운 좋게 탈출” 제하의 기사이며, 두 번째는 2011년 7월 5일자 지면 및 온라인에 게재된 “추락한 파일럿, 한 시간 반 동안 고립”이라는 기사이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남편(파일럿)이 지역의 한 평야에 추락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조팀이 위치를 추적하는 동안 한 시간 반 이상을 비행기 잔해 속에 갇혀있었다. 추락사고 다음날인 7월 4일자 기사에는 비행기의 일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이 실렸다.

7월 5일자 기사에서는 신청인의 남편이 응급구조를 받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다.

신청인은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이 충상을 입은 남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진이 남편이 심각한 쇼크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남편의 성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의 얼굴형, 옷, 비행기 일련번호 등이 보도되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보도 이후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7월 4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에 비행기의 일련번호가 보도되었으므로 그 동안 비행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일련번호를 공개하여 연락해온 사람들이 그날 비행기 사고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사는 해당 지역의 경찰, 소방대원, 구급요원 등이 모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게재된 사진은 수색에 참여한 지역 수색구조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이 구조팀은 이미 수년 간 언론사에 본 건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제공해왔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구조절차는 BBC가 촬영하여 이후 응급서비스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사전에 경찰 측을 취재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도 이해되는 바이나,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보도윤리강령 제5조는 슬픔이나 충격이 수반되는 사건에 대해 취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문제의 사진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진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해당 사진의 내용과 취득 경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원회는 7월 4일자 기사에 게재된 사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추락사고의 당사자가 신청인의 남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남편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보도한 바는 없다.

위원회는 구조요원들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비행기 추락 사고의 통상적인 모습을 묘사한 해당 사진의 게재로 인해 언론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재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7월 4일자에 게재된 사진은 보도윤리강령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7월 5일자 기사에 실린 사진은 신청인의 남편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쇼크·혼란에 빠진 채 의료 조치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회는 강령 제5조가 심각한 사건사고로 인해 개인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그러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시점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독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언론의 기능을 감안하면 바로 여기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독자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사의 취재 의도는 매우 명백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고 바로 직후에 사전 동의도 없이 의료조치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언론사가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7월

5일자 사진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인용한다.

신청인은 또한 언론사가 보도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여 그녀의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내용은 제5조와는 별개로 판단하였는데, 사건 당시 신청인의 남편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후 동의를 거쳐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본 건 사진의 게재와 방송보도를 별개로 여기고 있다. 즉, 후자는 사건 이후 남편이 충분한 동의를 할 수 있을 때 협의 과정을 거쳐 몇 달 뒤에 방영되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당시에는 언론사가 언제 BBC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될지 그 시기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는 “신청인 스스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면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거나 향후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남편이 구조 장면을 방영해도 좋다고 동의한 바 있고, 이는 사건 현장을 담은 단순한 이미지 사진보다 훨씬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진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제3조 위반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호주사례]

‘망명신청자’의 신분인 개인의 범죄를 보도하면서 ‘망명신청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실수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1517

신청인 : Penny Campton

언론사 : Northern Territory News

개요

APC(호주언론평의회)는 2011년 8월 5일자

〈Northern Territory News〉 1면에 실린 표현에 대한 신청 사건을 심의하였다. “망명신청자들이 호주인을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법원이 전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는 얼마 전에 소년원에서 2명의 경비를 칼로 찔렀던 어느 망명신청자가 이번에는 호주인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이 단 한명의 망명신청자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많은 망명신청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사는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언론사 측의 사과와 문제가 된 제목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사는 제목에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지난 7월 22일자 기사와 같이 그 동안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들의 지지를 호소해 왔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실수가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시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신청인의 의견을 기사화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문사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다.

결정 이유

위원회는 해당 제목이 즉각적인 정정과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반론을 신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며, 위원회는 언론사가 실수를 인정한 시점에서 즉시 취했어야 할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고민수 (2012. 3. 30).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헌법적 쟁점과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권헌영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83~110.
- 김남희 (2011).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509~534.
- 김민배 (2012. 2. 24). 정치·선거와 SNS.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문.
- 김용주 (20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79~306.
- 김용희 (2012. 2. 24). SNS 선거운동의 허용과 언론의 역할.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문.
- 김은미 · 이주현 (2011). 뉴스 미디어로서의 트위터. 『한국언론학보』, 제55권 6호, 152~180.
- 김종서 (2012. 3. 16).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한국헌법학회주최 '제71회 정기학술대회: 2012년 양대 선거의 헌법적 현안과 쟁점' 발제문.
-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1~37.
- 박광선 (2011). 인터넷상 뉴스기사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Law & Technology』, 제7권 6호, 91~100.
- 박성환 (2011). '명예'의 사회적 논리와 기능. 『문화와 사회』, 제11권, 7~64.
- 서미라 (2012. 2. 7). 트위터의 시민저널리즘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주최 '제16회 전국 대학원생 컨퍼런스' 발제문.
- 설진아 (2012. 2. 13). SNS와 저널리즘의 위기: 소셜 뉴스와 소셜 저널리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송경재 (2012. 3. 30). 소셜 미디어와 10.26 서울시장 선거: '나꼼수 효과'는 존재하는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신용태 (2012. 2. 8). 인터넷 상에서 자기정보의 통제, 잊혀질 권리. (사)인터넷윤리학회주최 '제1회 토론회: 인터넷, 윤리를 만나다' 발제문.
- 심석태 (2011).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07~236.
- 양재규 (2012. 1). 법을 알고 기사쓰기 78 - '언론 소송' 법리는 비교적 단순,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 『신문과 방송』, 통권 493호, 89~93.
- 양재규 (2012. 2). 법을 알고 기사쓰기 79 - 인물평 중심 '특정인 띄우기' 기사 선거 공정성 해쳐. 『신문과 방송』, 통권 494호, 76~79.
- 양재규 (2012. 3). 법을 알고 기사쓰기 80 -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95호, 82~85.
- 오택섭 (2012. 2. 24). SNS의 Fact checking. 관훈클럽,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SNS와 선거 보도' 세미나 발제문.
- 유일상 · 유계환 (2011). 표현과 소통으로서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언론과 법』, 제10권 2호, 307~340.
- 이수범 (2012).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보학연구』, 제16권 1호, 78~111.
- 이재진 · 이정기 (2011).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2호, 237~277.
- 이제영 (2012. 2. 13). 소셜 미디어 현상에 관한 대학생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2. 3. 9). 디지털리즘 시대에 있어서 선거방송보도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디지털리즘 시대의 정책과 보도' 특별 세미나 발제문.
- 임영덕 (201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73~112.
- 장철준 (2011).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10권 2호, 181~205.
- 장하용 (2011). 매체 간 경쟁의 심화에 따른 안내적 저널리즘의 약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6호, 48~70.
- 전 영 (2012).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4호, 221~253.
- 전지나 (2012. 2. 7). 트위터 이용자들의 뉴스 생산, 유통, 소비 인식에 관한 연구 : Q방법론을 통한 인식 유형 분석. 한국언론학회주최 '제16회 전국 대학원생 컨퍼런스' 발제문.
- 정성욱 (2012. 2. 13). 한국의 법 전통과 소셜 미디어 규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 발제문.

- 정재민 · 박종구 (2012. 2. 13). 경제뉴스의 경쟁적 소분석 : 신문, 방송, 인터넷, SNS의 이용자 층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조은희 (2012). 미디어 수용자 조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설문문항 연구 : 신문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0권 1호, 47~81.
- 최규문 (2012. 2. 13). SNS 소통의 인프라로서 소셜캐피털과 신뢰에 관한 재인식: [나는 꿈수다] 신드롬에서 보이는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최은경 (2012. 4. 14).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의 책무에 관한 연구 : BBC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과 사회> 연구분과주최, '월례 세미나' 발제문.
- 하명호 (2012. 2.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한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주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발제문.
- 한상기 (2012. 2. 8). SNS에서의 개인권리 침해 현황 및 과제. (사)인터넷윤리학회주최 '제1회 토론회: 인터넷, 윤리를 만나다' 발제문.
- 허윤철 · 박한우 외 (2012. 2. 13). 선거와 소셜텔레비전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나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
- 홍원식 (2012. 3. 30). SNS와 정치참여 : 선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미디어 혁명과 정치 혁명 :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바꾼 정치 혁명' 춘계 특별 세미나발제문.
- 황성연 (2012. 1. 13). 공공채널의 시청률 제고를 위한 편성방안. 한국광고홍보학회주최 '종편시대 공공채널의 공익성 강화 방안' 세미나발제문.
- 황용석 (2012. 2. 8). 인터넷 포털의 선거정보 서비스의 자율규제 방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주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발제문.
- 황유선 (2012. 2. 13). 정보 소통 채널로서 SNS.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연구소주최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문화 그리고 이론화' 학술세미나발제문.